

『2012년도』

# 농·축협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지침

( 2011. 9. )

회원지원부

# 목 차

- I. 사업여건 .....
- II. 경영방침 .....
- III. 사업계획 수립.....
- IV. 자금계획 수립.....
- V. 고정투자계획 수립.....
- VI. 수지예산 편성지침 .....

  - 1. 기본방향.....
  - 2. 영업수익 및 비용.....
  - 3. 판매비와관리비.....
  - 4. 교육지원사업비.....
  - 5. 예비비 편성.....
  - 6. 영업외비용.....

## < 부 표 >

- I. 예산편성단가표 및 정원운용기준, 사업계획 관련 .....  
주요 질의응답 사례
- II.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 시 참고서식.....
- III. 농·축협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보고.....

---

# I . 사 업 여 건

---

# 1. 경제전망

## 가. 세계경제

- 2011년 상반기 세계경제는 일본 대지진, 유가급등 등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다소 낮아졌으나, 하반기 들어 개선 추세를 나타낼 전망
  - 미국경제는 경기 둔화 조짐에서 벗어나 수출 및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나, 민간소비는 고용 및 주택시장 부진으로 뚜렷한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중국경제는 수출과 내수 모두 호조를 나타내고 물가는 상당기간 높은 오름세가 이어질 전망
  - 일본경제는 대지진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하반기 들어서는 완만한 회복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주요 예측기관은 세계경제 성장률을 2011년 4%대 초반, 2012년에는 4%대 초·중반으로 전망

### 〈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

(단위 : %)

구 분		세계	선진국			신 흥 선진국		
			미국	일본	유로지역	중국		
2011년	IMF	4.3	2.2	2.5	△0.7	2.0	6.6	9.6
	EU	4.0	2.1	2.6	0.5	1.6	6.2	9.3
	Global Insight	4.1	-	2.7	0.1	1.8	-	9.3
2012년	IMF	4.5	2.6	2.7	2.9	1.7	6.4	9.5
	EU	4.1	2.3	2.7	1.6	1.8	6.2	9.0
	Global Insight	4.5	-	2.9	2.6	1.6	-	8.5

자료 : IMF(2011년 6월), EU(2011년 5월), Global Insight(2011년 6월)

## 나. 국내경제

- 국내경제는 2011년 하반기 중 4.7%(상반기 3.8%, 연간 4.3%), 2012년중 4.6% 성장하여 경기상승국면을 이어갈 전망
  - 금년 상반기 중의 구제역, 중동·북아프리카지역 사태에 따른 유가충격 및 일본 대지진 등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3/4분기 및 4/4분기 중 1%대 중반(전기 대비)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
  - '12년은 매분기 1% 내외(전기 대비)의 성장이 예상

### 〈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 〉

구 분	2010년	2011년(예상)	2012년(예상)
경제성장률(%)	6.2	4.3	4.6
소비자물가	2.9	4.0	3.4

자료 : 한국은행, 2011. 7월 2011년 하반기 경제전망보고서

## 2. 농업·농촌의 환경변화

□ '11년 농업생산액은 전년보다 2.9% 증가한 44조 9,880억원으로 전망되며 향후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쌀 생산액은 생산량 및 가격이 회복되어 전년 대비 5.9% 증가한 7조 5,420억원으로 전망

### < 농업 부문 생산액 추이 및 전망 >

(단위 : 조원)

2000년	2004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32.0	36.2	38.5	41.4	43.7	45.0

자료 : 농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업전망 2011년 1월)

□ 호당 경지규모 양극화, 농가인구 감소·고령화 진행 중

○ 호당 경지규모는 1.5ha로 영세하며 3ha 이상 농가와 0.5ha 이하 농가 비중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음(양극화)

농가인구 수 : ('00) 4,031천명 → ('11) 2,964 (통계청)

- 농가인구 중 65세이상 비중 : ('90) 11.5% → ('00) 21.7 → ('11) 36.2

□ 농가경제는 정체 중이며, 농축산물 무역적자는 증가 추세

○ 농가소득 : ('05) 3,050만원 → ('11) 3,420

○ 농가부채 : ('05) 2,721만원 → ('09) 2,627

○ 농축산물 수출은 '05년 34.2억달러에서 '09년 48.1억달러로 증가하고 있으나 무역적자는 늘어나고 있음

- 무역적자 : ('05) 96.7억달러 → ('09) 164.3

### < 농업 부문 총량지표 추이와 전망(1970~2030년) >

구 분	단위	1970	1990	2010	2020	2030	2010/ 1970	2030/ 2010
농가호수	천호	2,483	1,767	1,172	1,078	924	0.47	0.79
농가인구	천명	14,422	6,661	3,039	2,295	1,732	0.21	0.57
65세이상 비율	%	4.9	11.5	35.3	45.2	51.4	7.20	1.46
경지면적	천ha	2,298	2,109	1,718	1,574	1,488	0.75	0.87
벼 재배면적	천ha	1,203	1,244	910	809	802	0.76	0.88
농업부가가치	10억원	10,762	16,827	20,691	18,705	18,755	1.92	0.91
농가소득	만원	650	1,895	3,298	3,910	5,746	5.07	1.74
농의소득 비율	%	23.1	25.7	39.4	48.2	62.0	1.71	1.57

자료 : 농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업전망 2011년 1월)

### 3. 사업 및 경영여건

#### 가. 유통환경

##### □ 소비자 기호에 따른 구매패턴 변화 가속

- 전통적 식품소비패턴 변화 : 자가 → 외식, 곡물 → 기호·건강식품
- 인구구조 변화(나홀로 가구 증가 등)에 따른 소포장·소용량·신선 편의식품 선호

##### □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한 유통전략 변화

- 도심형 슈퍼마켓 확대 : 점포 효율성, 고객 편의성 및 가격 경쟁력 제고
- 대기업의 신시장 개척 확대 : 식자재 시장, 급식사업 등

##### □ 농축산물 가격변동성 확산에 따른 국가적 대책 마련 필요

- 농산물 주생산지 이동, 가축질병 확산 및 기상이변으로 인한 수급 불안
- 금융자본의 농산물시장 지배력 강화, 유전자조작 농산물 확대 등

#### 나. 금융환경

##### □ 고객 중심의 금융시장 체제 변화

- 고령화에 따른 금융시장 고객니즈 변화 : 통화·예금 → 연금, 투자상품 등
- 종합금융서비스, 자산관리 등 토탈 금융서비스 확산

##### □ 금융감독기관의 지도·관리 강화

- 가계대출 연착륙 대책, 비과세 예금한도 축소 등 금융시장 환경 변화
- 금융의 공적 역할 증대 및 건전성·유동성 규제 등 감독 강화

##### □ 금융부문의 신(新)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경쟁 치열

- 결제기능, 자본시장 규제완화 등 금융기관간 전통적 장벽 붕괴
- 통신 등 이종 업종과의 협력을 통한 금융기관간 경쟁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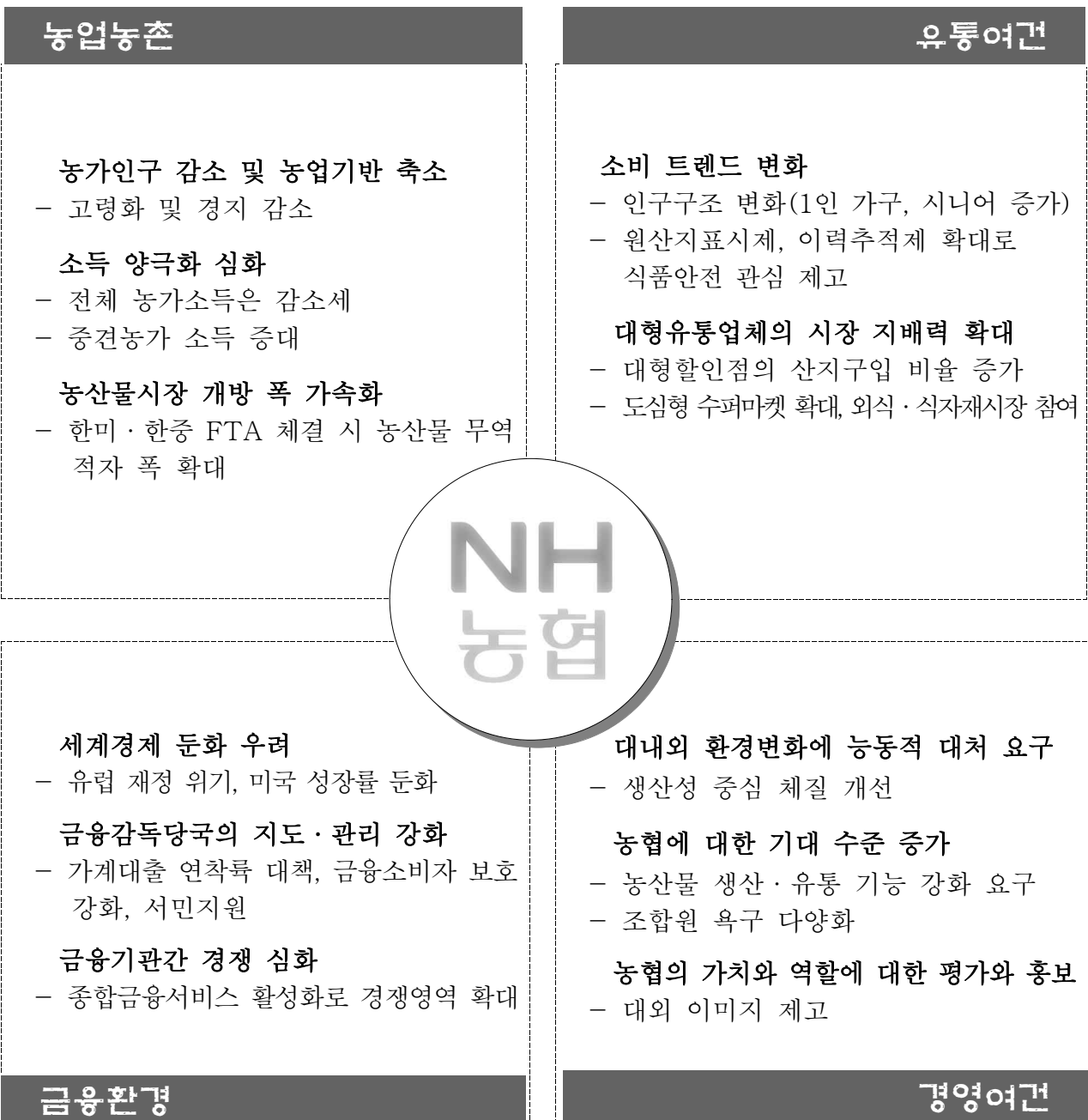
## 다. 경영여건

### □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환경에 대응한 선제적·능동적 대응 필요

- 핵심역량 결집으로 전통적 수익기반 강화 및 신규 수익사업 확대
- 금융권 변혁 등에 대응한 조직·사업 혁신방안 강구

### □ 조합원·농업인 단체의 농협 역할에 대한 기대와 개혁 요구 지속 증가

- 경제사업활성화 실적을 통한 농축산물 점유율 확대 요구
- 생산비 증가 등 농업경영 여건 악화로 농협에 대한 지원 요구 증가



---

## Ⅱ . 경 영 방 침

---



# 1. 주요 경영방침

## 가. 농·축협 증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한 경영목표 설정

### □ 농업인 및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 할 수 있는 농협다운 농협

-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운영의 영속성을 유지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여, 조합원 실익 증진에 기여하는 지역종합센터로서의 농협 구현

#### ◆ 지역종합센터

- 지역사회에서 농촌개발·복지·문화·관광·도농교류사업을 주도하여 농촌의 활력과 농외소득 창출
- 정부·지자체의 농촌개발사업 대행과 기업체의 농촌지원창구 역할을 수행하되, 투자개념에 입각한 사업추진으로 독자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한 모델로 혁신

### □ 농업인 실익증진을 위해 농·축산물 유통에 앞장서는 농협

- 시장지향적 경제사업 추진으로 농업인 생산지원 및 산지유통의 규모화 조직화를 통해 농업인 실익극대화에 앞장서는 농협

### □ 지역 종합금융센터로서 특화된 농협

- 차별화된 지역밀착형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종합생활금융기관으로서 특화된 농협
- 서민대출 적극 추진으로 지역 생활금융기관으로의 입지 강화

## 나. 실천전략으로서 역점과제 선정 및 추진

### □ 미래사회의 변화를 반영한 과제로서, 향후 경영진이 중점적으로 이끌어 갈 핵심 전략 위주로 발굴 선정

### □ 체감효과가 높은 단순·명확한 의제를 과제로 선정하되, 사업량 증대 및 기존사업 확충 등 단순과제 선정은 지양

### □ 과제 추진을 위한 적합한 조직체계 구축, 평가와 보상(급여)의 연계 등 제도개선을 통해 성과주의 조직문화 확립

### □ 각 사업부문별 농업인·고객에 대한 철저한 재인식을 통하여 무한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경영목표 및 세부운영방침 선정

### □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등 정부관련 단체의 사업과 연계한 과제 선정으로 사업수행에 따른 시너지 효과 제고

### □ 다양한 자료 수집 및 광범위한 대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부문별로 실행 가능한 핵심과제 발굴 및 선정

## < 2012년 경영목표 및 사업추진방향 >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농협



### 목 표

- ◆ 농·축산물 유통혁신을 통한 농업인 실익증대 도모
- ◆ 지역종합센터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사업기반 확충
- ◆ 수익성제고 및 리스크관리 강화로 내실경영 추구
- ◆ 윤리·투명경영체제 확립을 통한 정도경영 실현

#### 조 직

- 정도경영 확립으로 투명한 조직문화 구축
- 조합원 정예화를 통한 실질적인 농업인 중심의 조직 재편
-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 및 급여체계 운용 등 성과주의 조직문화 정착
- 제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조직체계 재구축
- 계통기관과 상생 발전을 위한 조직문화 창출

#### 사 업

- 산지유통의 조직화를 통한 경제사업 효율성 극대화
- GAP인증, 쇠고기이력추적제 정착 등 안전한 농축산물 공급기반 구축
- 적극적인 서민금융 추진으로 협동조합 금융의 입지 강화
- 지역사회 기여형 사업추진을 통한 지역 소매금융 기반확대
- 선제적 미래성장 동력사업 적극 개발로 안정적 수익기반 구축

#### 경 영

-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추진
- 전사적 경영관리를 통한 사업목표 달성
- 사업별 원가분석에 기초한 사업계획 수립 및 피드백 실시
- 안정적 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잉여금 내부적립 확대 등 자기자본 증대추진
- 책임·투명경영체제 확립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운영투명성 확보

## 2. 사업부문별 운영방침

### 가. 농업경제

사업부문	운 영 방 침
산지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농협의 대외 경쟁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별, 품목별 통합마케팅 추진</li> <li>○ 통합조직 우선 선정에 따른 산지 농협간 협력 강화</li> <li>○ 산지유통조직의 공동선별, 공동계산 정착 추진</li> </ul> </li> <li>□ 농산물 고품질 상품화를 위한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물품질관리사를 산지유통의 핵심인력으로 육성</li> <li>○ 마케팅과 연계한 수확후 관리기술 보급 지원</li> </ul> </li> <li>□ 물류표준화 지원으로 산지농산물 경쟁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물 물류효율화를 위한 물류기기 구입 지원</li> <li>○ 물류기기 공동이용을 통한 농산물 상품경쟁력 제고</li> </ul> </li> </ul>
수급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물량 확보를 통한 안정적 사업물량 확보로 수급조절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보물량 : 노지채소 생산량의 20% 수준</li> <li>※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대파, 고랭지감자, 가을당근, 가을 무·배추 등 10% 미만 위주 품목을 중심으로 중점추진</li> <li>○ 비저장성품목 손실보전 규모 축소</li> </ul> </li> <li>□ 계약재배 물량 사후관리 강화로 사업 내실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출하물량에 대한 자금지원금액 축소 내지 사업참여 배제</li> <li>○ 수매불능물량 사후관리 강화 및 평가결과 엄격적용 등</li> </ul> </li> <li>□ 시장개방에 대응한 품목별 경쟁력 강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목 대표조직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선도농협 육성</li> <li>○ 소비성향에 맞는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및 품목별 마케팅 지원</li> </ul> </li> </ul>
연합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선출하회의 정예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협과 농가간 명확한 출하계약 이행</li> <li>○ 브랜드마케팅 체계 구축으로 취급수수료 현실화</li> <li>○ 사업범위 내 매취형 공동계산 포함</li> <li>○ 농협 중심의 품질관리 및 상품화로 우수농산물 공급</li> <li>○ 공선출하회, 농협, 연합사업조직간 계열화된 공급</li> </ul> </li> </ul>

사업부문	운 영 방 침
<p style="text-align: center;"><b>연합 마케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시군 단위 농산물 연합마케팅 확대 추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물 시군 단위 마케팅을 통한 산지 경쟁력 강화</li> <li>○ 정부의 산지유통체계 개선에 따라 연합사업단을 핵심 통합마케팅조직으로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성화된 연합사업단 조공법인으로 전환 추진 및 지원</li> </ul> </li> <li>○ 연합사업단별 컨설팅 강화로 사업발전방안 공동모색</li> </ul> </li>   <li>□ <b>도 단위 광역연합사업 집중 육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연합에 의한 집중화 품목사업 내실화</li> <li>○ 시군 단위 연합사업 미비 사무소에 대한 광역연합 수행</li> </ul> </li>   <li>□ <b>품목연합 확대 추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단위 품목연합사업 확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 2개 품목(멜론, 깐마늘) → '12) 3개(토마토 추가)</li> </ul> </li> <li>○ 본부부서 내 전담조직 편제</li> <li>○ 사업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li> </ul> </li>   <li>□ <b>APC(산지유통센터)를 통한 농산물 상품화로 부가가치 제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PC 시설 현대화 및 운영 활성화 추진</li> <li>○ 수확후 관리기술 개발 보급 확대</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식품가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가공공장 경쟁력 강화 및 경영개선 도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공공장 경영컨설팅을 통한 경영개선 추진</li> <li>○ 외부업체와의 제휴사업 확대 및 신사업 발굴</li> <li>○ 가공식품 신제품 개발, 홍보 및 마케팅 지원 확대</li> </ul> </li>   <li>□ <b>중앙회 식품사업 진출을 위한 기반 구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amp;D 역량강화, 상품기획 및 마케팅 조직 구축</li> </ul> </li>   <li>□ <b>식품 관련 핵심추진사업 발굴 육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식품 판매 활성화, 쌀 가공사업 진출</li> <li>○ HMR(가정대용식) 등 식재료 사업 진출, 직영공장 건립 검토</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학교급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학교급식사업 추진기반 정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재료 공급망 및 물류시스템 구축</li> <li>○ 계통별 역할 분담에 따른 효율적 사업 추진</li> </ul> </li>   <li>□ <b>학교급식사업 종합지원체계 구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급식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li> <li>○ 학교급식지원 전산시스템 개발</li> <li>○ 식재료 안전성 관리 및 급식사업 우수모델 발굴</li> </ul> </li>   <li>□ <b>한식세계화 및 녹색식생활교육을 통한 식문화 운동 추진</b></li> </ul>

사업부문	운 영 방 침
<p>식품안전 GA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농식품 안전관리시스템 구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통사무소 식품안전관리시스템 구축</li> <li>○ 「우리농산물지킴이」 운영 활성화</li> <li>○ 식품안전 담당자 교육 강화</li> <li>○ 식품안전 위기대응체계 구축</li> </ul> </li> <li>□ <b>GAP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생산기반 확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AP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강화</li> <li>○ GAP농산물 생산기반 확대 및 농가 경쟁력 제고</li> </ul> </li> </ul>
<p>수 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농식품 해외시장 개척</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박람회 참가를 통한 신규 거래처 발굴</li> <li>○ 농산물 해외시장 순회특판·기획전 개최</li> <li>○ 농협제품취급 해외업체 초청 간담회 실시</li> <li>○ NH무역 해외현지법인과 연계한 시장 개척활동 강화</li> </ul> </li> <li>□ <b>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합사업 추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합사업 추진대상 품목 확대</li> <li>○ 품목여건에 맞는 연합수출조직 육성 지원</li> <li>○ 연합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li> </ul> </li> <li>□ <b>농·축협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및 관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수출산지 조직화(배, 단감)</li> <li>○ 지자체와의 수출공동마케팅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li> </ul> </li> <li>□ <b>수출 활성화를 위한 표창 시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 달성탑 수여 및 시상금 지급</li> </ul> </li> </ul>
<p>군 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군의 급식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협 군납사업 체계 정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생산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군납사업의 실효성 제고</li> <li>○ 군납농산물(가공식품 포함)의 단가 현실화 추진</li> <li>※ 효율적인 군납체계 정착을 위한 대외 농정활동 강화</li> </ul> </li> <li>□ <b>군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통한 사업활성화 도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호이해 및 협력증진을 위한 협의회 상설화</li> <li>○ 군납 유관기관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li> <li>○ 지역별 군납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농정활동 강화</li> </ul> </li> </ul>

사업부문	운 영 방 침
군납	<p>□ 군납농산물 식품안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품질관리 점검시스템 구축, 품질점검반 상시운영</li> <li>○ 가공품 군납농협의 전사적 품질관리 시스템 도입</li> </ul>
친환경 유통	<p>□ 친환경농산물 시장에서 시장점유비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통판매장의 친환경 판매물량 지속 확대</li> <li>○ 외부유통업체·유기가공식품 등 판로망 다변화</li> </ul> <p>□ 산지에서 농협의 친환경농산물 출하교섭력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질관리 강화를 통한 농협 친환경농산물 차별화</li> <li>○ 농협 주도의 친환경농산물 출하조직 조직화·규모화</li> </ul>
양곡	<p>□ RPC 경영 기초체질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부진 RPC에 대한 경영컨설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목표 : 연 25개소</li> <li>- RPC간 비용분석을 통해 원가절감 유도</li> <li>- 경영우수모델 정립 및 제시</li> </ul> </li> <li>○ 수탁사업 지속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량 : '11) 50천톤/조곡 → '12) 80</li> <li>- 정부의 RPC 경영평가와 연계, 자금 차등 지원</li> </ul> </li> <li>○ RPC 임직원에 대한 경영 및 고품질 기술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물 검사원 및 품질관리 전문가 육성 교육</li> <li>- 쌀 시장 사업환경 분석, 도정수율 향상기술 교육 등</li> </ul> </li> </ul> <p>□ RPC 쌀 균일화 및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PC 들녘별 계약재배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 목표 : '15년까지 들녘단위 계약면적 10만ha</li> <li>- 생산 단계부터 품종 및 재배방법을 통일하여 고품질 쌀 생산</li> </ul> </li> <li>○ 브랜드 쌀 품질표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종명, 쌀 품질등급, 단백질 함량 등</li> </ul> </li> <li>○ RPC 대표브랜드 품질 평가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RPC 출시 대표 브랜드</li> <li>- 10개 품질 항목 분석 및 품종별 평가사항 지도</li> </ul> </li> </ul> <p>□ RPC 통합 및 시설현대화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년 통합목표 : 5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계 : '04~'10) 35개소 → '11) 40 → '12) 45 추진</li> </ul> </li> <li>○ RPC 시설 현대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계 : '10) 34개소 → '11) 38 → '12) 40</li> </ul> </li> </ul> <p>※ 수매에서 가공까지 고품질 브랜드 생산 일관체계 구축</p> <p>※ 통합여건이 성숙된 지역을 위주로 광역통합 시범</p>

사업부문	운 영 방 침
양곡	<p>□ 수확기 산지쌀값 안정을 위한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벼 매입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회 : '11)1조 3천억원 → '12)예년수준</li> </ul> </li> <li>○ 수확기 산물벼 매입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확기 쌀값 및 수급전망, 매입 전 준비사항 등</li> </ul> </li> </ul> <p>□ 농협 쌀 판매를 위한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쌀 판매 마케팅 지원</li> <li>○ 농협쌀 생산 및 유통정보 수집, 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지시장 및 민간유통업체 동향조사</li> <li>- 쌀 수출 및 수입쌀 정보수집</li> </ul> </li> <li>○ 계통사무소의 전사적인 쌀 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통판매장의 쌀 판매지표 부여 및 관리 강화</li> <li>- 판매장 유형별 쌀 판매전략 수립</li> <li>- 수도권 유통센터 통합마케팅 추진</li> </ul> </li> </ul>
공판장	<p>□ 농협공판장 유형별 맞춤형 지원체제 구축 및 공판장 정예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판장별 특성·사업여건에 따라 유형 구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형 분류 : 선도형, 육성형, 경영개선형, 정비형</li> <li>- 매년도말 별도 평가기준에 의거 유형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형별 각종 지원의 차등화 및 경쟁유도로 공판장 정예화</li> </ul> </li> </ul> </li> <li>○ 경매식집하장의 공판장 전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판장 전환 경매식집하장에 자금 등 지원 우대</li> </ul> </li> </ul> <p>□ 농협공판장 사업활성화를 위한 성장 동력사업 지속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송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판장간 수급부족 품목에 대하여 다른 공판장 중도매인으로부터 공급받아 필요 중도매인에게 정가수의매매로 판매</li> </ul> </li> <li>○ 전자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거래 사이트에서 경매사가 출하자와 중도매인간의 거래를 조율하여 이를 정가·수의매매로 거래하는 새로운 사업방식</li> <li>- 상물(商物)분리 거래를 통한 물류비 절감</li> </ul> </li> <li>○ 공판장 통합출하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판장 출하 부족 품목을 권역별 공판장간 연합하여 통합출하 유치로 물류 효율화 및 출하비용 절감 ⇒ 공판장간 전송판매, 전자거래와 연계 운영</li> </ul> </li> <li>○ 견본거래 도입(신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매시장개설자(산지공판장은 공판장장)가 지정한 장소(저온창고 등)에 보관 농산물의 견본(Sample)만 공판장에서 거래(가격결정)하고, 해당 농산물 구매자(중도매인 등)가 지정한 장소로 배송하는 거래방식(商物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가·수의매매 방식과 연계한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li> </ul> </li> </ul> </li> </ul>

사업부문	운 영 방 침
공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협공판장 신유통 인프라 구축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온저장, 소포장·선별시설 등 확충</li> <li>○ 신사업(전송판매, 전자거래 등)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확대</li> <li>○ 전자경매 도입 공판장 전자경매 장비 개선</li> </ul> </li> <li>□ 농산물공판장 스마트폰 앱 활용(신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응찰기 방식의 전자경매를 스마트 폰으로 대체</li> <li>○ 공판장 유통주체간 정보교환으로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li> </ul> </li> <li>□ 개정 농안법('12. 6월 시행예정) 대비 공판장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가·수의매매 확대를 위한 공판장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견본거래, 전자거래, 전송판매, 통합출하유치 확대</li> <li>- 경매사 마케팅 능력 강화 : 상품개발 능력 등</li> <li>- 매매참가인(유통업체, 급식·가공업체 등) 신규 거래 확대</li> </ul> </li> <li>○ 선진(일본) 도매시장 선진기법 도입을 위한 벤치마킹 실시</li> </ul> </li> <li>□ 경영관리 강화를 통한 농협공판장 체질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판장 독립회계 도입으로 경영관리 강화</li> <li>○ 공판장 종사직원 성과급제 도입</li> <li>○ 사업활성화를 위한 판매장려금 지급 기준 개선</li> </ul> </li> <li>□ 공판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도매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도매인 담보 강화를 위한 신용보증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증보험료의 공판장 지원으로 담보 강화</li> </ul> </li> <li>○ 중도매인 소매점포 또는 운전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판장 명의로 점포를 임차, 중도매인에게 의무약정 후 지원</li> <li>- 소포장·저온저장 시설 지원도 가능</li> </ul> </li> </ul> </li> <li>□ 전국농협공판장 운영협의회를 통한 농정활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찬회 및 운영위원회 등 개최 지원</li> <li>○ 도매시장 제도개선 등 농정활동 강화</li> </ul> </li> </ul>
자 재 (공통)	<p style="text-align: center;"><b>《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자재사업 경쟁력 제고 》</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연합 구매사업 활성화로 구매사업 역량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지분)단위 구매물량 결집을 통한 규모화로 구매교섭력 제고, 구매가격 인하 도모</li> <li>○ 사업목표 : '11) 2,000억원 → '12) 2,200</li> </ul> </li> <li>□ 계통사업 규모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통품목 추가약정 장려금제도 활성화</li> <li>○ 농협의 구매물량에 따른 구매조건 차등화</li> <li>○ 각종 인센티브 제공 시 계통사업 우수사무소 우선 배정</li> </ul> </li> </ul>



사업부문	운 영 방 침
<b>시설원예 자 재</b>	<p style="text-align: center;"><b>《 신사업·신품목 발굴 확대로 농업인 편의 및 실익 제고 》</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자재 품목공급 확대 등을 통한 사업활성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계통품목 발굴 및 포장용 박스 등의 공급 확대</li> <li>○ 불량자재 근절을 위한 품질관리 강화</li> <li>○ 농협상표와 자체(PB)상표의 관리, 침해대응 강화</li> </ul> </li> <li>□ 농업인 실익지원 확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가세 사후환급 확대(변경) 품목에 대한 홍보 강화</li> <li>○ 부가세 사후환급 대상품목 확대 추진</li> </ul> </li> </ul>
<b>비 료</b>	<p style="text-align: center;"><b>《 저비용 시비 유도로 농업인 생산비 절감 도모 》</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맞춤형비료 공급으로 농업인 생산비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성분 화학비료 공급으로 농가 사용량 감축 유도</li> <li>○ 정부보조 지원 등으로 농가 구입비 부담 경감</li> </ul> </li> <li>□ 토양검정사업 추진으로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양정보를 활용한 과학적 시비 등 종합 토양관리</li> <li>○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적 시비기술 보급 확대</li> </ul> </li> <li>□ 친환경비료 공급 확대로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기질, 퇴비 등 고품질 친환경 비료 공급 확대</li> <li>○ 정부 지원체계 개선 추진 및 농협 시장점유비 제고</li> </ul> </li> </ul>
<b>농 약</b>	<p style="text-align: center;"><b>《 제도개선, 마케팅강화를 통한 농약사업 경쟁력 제고 》</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약사업 제도개선으로 사업활성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매장려금 축소를 통한 지속적인 농약가격 인하 추진</li> <li>○ 시도·시군 단위 경쟁입찰구매 활성화 지원</li> <li>○ 비수기 현금할인 구매 공급 확대로 가격안정 유도</li> </ul> </li> <li>□ 농약 원제사업 내실화로 가격안정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제 수입원 전문성 제고 및 안정적 위탁생산 추진</li> <li>○ 원제사업 마케팅 강화로 사업활성화 및 가격안정 도모</li> </ul> </li> <li>□ 방제처방 강화로 농업인 서비스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약업무 담당자에 대한 농약 안전사용 교육 등 관련 교육 확대 및 방제처방능력 향상 지원</li> <li>○ 방제비용 절감을 위한 공동방제 인프라 구축 지원</li> </ul> </li> </ul>

사업부문	운 영 방 침
농기계	<p style="text-align: center;"><b>《 농기계서비스센터 운영개선으로 농기계사업 확대 》</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기계서비스센터 시설·장비 현대화로 수리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형농기계 수리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li> <li>○ 농기계시장 감소에 대응한 경영손익 개선</li> </ul> </li> <li>□ 농기계 기술교육을 통한 사후봉사능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기계 생산업체 위탁교육을 통한 신제품 기술교육</li> </ul> </li> <li>□ 차별화된 판매전략으로 사업활성화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취사업 확대, 판매권유비, 해외연수, 시상 등</li> </ul> </li> </ul>
농기계 은행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농기계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종 : 트랙터(부속작업기 포함), 승용이앙기, 콤바인</li> <li>○ 금액 : 800억원(2,500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고 내용연수 경과 대체공급 포함</li> </ul> </li> </ul> </li> <li>□ 농작업대행 확대 및 보유농기계 이용효율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작업대행 목표 : 전체 논면적의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 520천ha → '12) 680</li> </ul> </li> <li>○ 보유농기계 이용효율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당 작업면적 : '11) 20ha → '12) 24</li> </ul> </li> <li>○ 직영혼합형 농협 확대 : '11) 70개소 → '12) 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영시범농협 : '11) 14개소 → '12) 25</li> </ul> </li> <li>○ 벧짚근포 및 무인헬기 방제사업 활성화</li> </ul> </li> </ul>
하나로 마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열표준화를 통한 하나로마트 경쟁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진열도(POG)에 의한 상품진열 시스템 운영강화 및 하나로마트 전 점포 진열 표준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형점 그룹과 중소형점 그룹으로 분리하여 동시 추진</li> <li>- 지역별(권역별) 거점점포를 중심으로 전 점포 확대 적용</li> </ul> </li> <li>○ 진열표준화 전 점포 확대 적용을 통한 상품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OG상품에 대한 대업체 협상력 강화를 통해 공급조건 개선</li> <li>- 하나로마트 표준진열화를 통한 다양한 구매·공급 기법 도입</li> <li>- 공급업체 중심 진열체계를 고객중심 진열체계로 개선</li> </ul> </li> <li>○ 고객중심 매장 운영 및 효율적 판매촉진 기능 강화를 위해 현행 판촉운영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나로마트 필요인력 충원을 통해 다수업체 공동판촉 활용에 따른 문제점 해소 및 하나로마트 자체 판촉기능 강화</li> </ul> </li> </ul> </li> <li>□ 하나로마트 매장 규모화 및 현대화(상품MD/진열표준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물 소비지 판매망 확충을 위해 대도시 및 소비 지역의 300평 이상 하나로마트 역점 추진</li> <li>○ 소비지 대형 유통매장 틈새시장 공략을 위한 100평이상 하나로마트 지속 확대</li> </ul> </li> </ul>

사업부문	운 영 방 침
<p>하나로 마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통공급상품 시장 경쟁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품 표준화 및 관리 강화를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li> <li>○ 통합행사 확대와 대량구매 확대, 잡화상품 및 식자재 공급시스템 개선</li> <li>○ 밀양 등 지방 물류인프라 확충 및 무검수시스템 확대와 전산지원을 통한 물류 운영 효율화</li> </ul> </li>   <li>□ 농·축산물 취급률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축산물 취급 중심의 매장구현으로 타 유통업체와의 차별화 추진</li> <li>○ 농산물 원산지, 안전성 관리 강화</li> </ul> </li>   <li>□ 하나로마트 점별 자체 손익관리 강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별 분기 1회 이상 손익분기점 및 경영손익 산출 후 내부결재 및 관리활동 제고</li> <li>○ 책임경영을 위한 독립회계 점포 확대와 하나로마트 종합컨설팅 지원 강화</li> </ul> </li>   <li>□ 식자재 전문매장 개설을 통한 성장동력 기반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자재 매장 규모화(100평 이상)를 통해 타 유통업체와 업태 차별화 도모</li> <li>○ 지역 거점매장 육성으로 식자재시장 점유율 확대</li> </ul> </li>   <li>□ 하나로마트 종사직원 핵심가치 교육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과정 핵심가치 교육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급별 유통실무 중심의 교과목 편성 및 전문성 제고</li> </ul> </li> <li>○ 순회교육 및 직무특별교육 현장지향적 교육강화</li> </ul> </li>   <li>□ 하나로마트 공정거래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반품제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거래법 위반사례 예방을 위한 무반품제도 운영( 대상 : R1, R2 전체 상품 )</li> <li>- 무반품제도 운영에 따른 적정 발주 필요</li> </ul> </li> <li>○ 판촉직원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거래법 위반 요소 사전 예방차원에서 판촉직원 운영제도 개선</li> <li>- 납품업체 판촉직원 중단시 대체인원 보강 필요(판촉직원 강요시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li> </ul> </li> </ul> </li> </ul>
<p>NH쇼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RO(기업소모성 자재) SHOP 지속적인 육성 및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카테고리별 취급 품목 확대</li> <li>○ 수요품목 및 구매행태 분석을 통한 예산절감 효과 극대화</li> </ul> </li> </ul>

사업부문	운 영 방 침
NH쇼핑	<p>□ e-하나로클럽 활성화로 On-Off line 사업협력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정 규모이상 유통사업장 e-하나로클럽 사업참여 추진</li> <li>○ 거점 점포별 배송권역 조정을 통한 배송 소요시간 단축 및 배송 횟수 확대로 고객 편의 제공</li> </ul> <p>□ TV홈쇼핑 사업 참여에 따른 사업 연계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H쇼핑의 식품 부분과 TV홈쇼핑의 비식품 부분의 역할 분담</li> <li>○ TV홈쇼핑 인터넷몰 판매상품 NH쇼핑 동시 판매 추진</li> </ul>
TV홈쇼핑	<p>□ 신규 TV홈쇼핑 대상 농식품 판매확대와 농협 특화상품 판매를 통해 농업인 실익증진 및 새로운 수익창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홈쇼핑 농식품 전담공급을 통한 판매 활성화</li> <li>○ 판매수수료 절감을 통한 농업인 실익제고</li> <li>○ 신사업과 농협특화 상품 판매로 새로운 수익원 창출</li> </ul>
유 류	<p style="text-align: center;">《 유류사업 활성화로 안정적인 자재사업 기반 구축 》</p> <p>□ 농협폴 주유소 확대를 통한 구매교섭력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협폴(NH-OIL) 전환, 신설 주유소에 대한 지원 지속</li> <li>○ 무이자자금 및 주유장비(주유기, POS 등) 무상 지원</li> </ul> <p>□ 주유소 종합컨설팅 및 운영지도 활성화 등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운영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지요건, 손익분석 등 맞춤컨설팅 지원</li> <li>○ 주유소별 경영분석 및 영업지원, 매출활대를 위한 판촉지원 등 사후지도·지원 강화</li> <li>○ 유류업무 담당직원 마케팅교육 강화로 전문가 육성</li> </ul>

## 나. 축산경제

사업부문	운 영 방 침
<p><b>축산유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축산물공판장 기능확대로 권역별 축산물유통의 거점으로 육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가공 사업활성화로 권역별 축산물 유통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년 육가공 사업활성화 추진 : 음성, 부천, 고령</li> </ul> </li> <li>○ '12년 이후 경제사업활성화 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확보 추진</li> </ul> </li> <li>□ <b>축산물 소비지 판매시설 확충을 통한 판매역량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산물프라자, 직거래장터 확대 및 이동차량 운영효율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산물프라자 : '10) 146개소 → '11) 181 → '12) 220</li> <li>- 축산물브랜드코너 : '10) 110개소 → '11) 140 → '12) 170</li> </ul> </li> <li>○ 지역축제 및 행사와 연계한 소비촉진 이벤트 전개</li> </ul> </li> <li>□ <b>축산물 브랜드 경쟁력 제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우공동브랜드사업단을 도 단위 한우유통 전문조직으로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우공동브랜드 발전전략 수립 및 지도·지원 확대</li> </ul> </li> <li>○ 농협 육우대표브랜드 육성 및 유통 판매망 확충</li> </ul> </li> <li>□ <b>쇠고기 이력제 정착 및 축산물 위생·안전시스템 구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육단계 위탁기관 역량강화 및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li> <li>○ 안심마케팅 추진, 위생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홍보강화</li> </ul> </li> <li>□ <b>국내산 축산물 군납확대 및 품질·안전시스템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생산 축산물 및 국내산 쇠고기 군납물량 확대</li> <li>○ 책임생산 감독제 정착을 통한 군납축산물 안전관리 강화</li> </ul> </li> </ul>
<p><b>축산지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축종별 축협·조합원에 대한 지도 및 지원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축산업을 선도할 축종별 핵심조합원 육성</li> <li>○ 핵심조합원 경영분석 프로그램 활용, 경영분석을 통한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지원</li> <li>○ 계통사업 이용률 확대를 통한 농·축협과 중앙회간 사업 시너지 효과 거양</li> </ul> </li> <li>□ <b>안정적 사육기반 구축 및 수급안정 역할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우 적정사육두수 유지를 통한 가격 안정화 도모</li> <li>○ 번식우 중심의 지역축협 한우 생축장 지원 강화</li> <li>○ 심포지엄 등 산학 협력을 통한 축종별 지속 성장방안 모색</li> </ul> </li> <li>□ <b>고품질·안전 축산물 생산체계 구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축협 사업 지도·지원 강화를 통한 농·축협 경제사업 활성화 도모</li> <li>○ 축산업 선진화 정착을 위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지원</li> <li>○ 초음파 육질진단 활성화를 통한 고급육 생산 확대</li> <li>○ 한우사업단을 통한 안정적인 계통출하체계 구축</li> </ul> </li> </ul>

사업부문	운 영 방 침
축산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안정적 개량사업 추진을 통한 가축개량 선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가축개량 선도</li> <li>○ 고능력 우수 정액 공급을 통한 육질개량 지원</li> <li>○ 제2종돈장 건설을 통한 종돈사업기반 강화</li> </ul> </li> <li>□ <b>정책개발 및 수급안정을 위한 생산자단체로서의 역할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종별 협의회 운영을 통한 축산정책 개발·건의</li> <li>○ 효율적인 자조금 운영 및 주도적 사업 전개</li> <li>○ 양돈·양계 수급안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사업수행</li> </ul> </li> </ul>
축산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현장밀착형 전문컨설팅으로 축산농가 소득증대 도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사육단계 HACCP 컨설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컨설턴트 역량강화 및 지도·지원 기능 강화</li> <li>- 농가의 컨설팅 비용절감으로 수익성 개선 효과</li> </ul> </li> <li>○ 여성경영인, 후계농 발굴 및 기술 지원으로 전문축산인 육성</li> <li>○ 연합컨설팅사업단 조기 정착으로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li> </ul> </li> <li>□ <b>연중 상시방역 시스템 운영으로 축산농가 생산성 증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방역활동 전개</li> <li>○ 악성가축질병 토착성 발생으로 연중 상시방역체계 추진</li> </ul> </li> <li>□ <b>지역 농·축협 중심의 자원순환농업 기반 구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축협간 자원순환협약 체결 확대 및 내실화 추진</li> <li>○ RPC농협과 연계한 액비이용 고품질쌀 생산사업 확대</li> <li>○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운영 농·축협에 대한 지도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질의 퇴액비 생산 및 유통활성화 지원</li> </ul> </li> </ul> </li> <li>□ <b>친환경축산 인증사업 활성화 추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축산물 인증사업의 철저한 사후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단체 중심으로 인증 지도 및 추진</li> <li>○ 친환경축산물인증사업 활성화를 위해 브랜드축산물 생산단체 및 양축농가 인증 확대</li> </ul> </li> <li>□ <b>조사료 생산·유통·이용 활성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료 생산거점 농·축협 집중육성을 통한 재배면적 확대</li> <li>○ TMR 사료공장과 연계한 청보리 등 국내산 조사료 이용 확대</li> <li>○ 간척지를 활용한 조사료 생산기지 조성</li> <li>○ 국내산 조사료 생산실명제 및 품질등급 표시제를 통한 품질향상 도모</li> </ul> </li> </ul>

## 다. 신용사업

사업부문	운 영 방 침
상호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호금융 사업기반 강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립식 및 저원가성 예수금 확대</li> <li>○ 수익성 제고를 위한 건전여신 확대</li> <li>○ 서민금융 적극 추진으로 지역대표금융기관 입지 강화</li> <li>○ e-금융상품 개발을 통한 젊은 고객층 확대</li> </ul> </li>   <li>□ 마케팅능력 향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RM을 활용한 전속고객 확대</li> <li>○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 제고</li> <li>○ 유형별로 차별화된 마케팅 지도</li> <li>○ TMSP 현장교육 강화</li> </ul> </li>   <li>□ 수익원 다각화 및 신상품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환취급기관 확대 및 사업량 증대 추진</li> <li>○ 녹색금융·지역사회 기여형 상품개발 촉진</li> </ul> </li>   <li>□ 자산건전성 및 경영안정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리스크관리 체제 선진화</li> <li>○ 자체 경영컨설팅 능력 제고</li> <li>○ 합리적·탄력적인 금리운용능력 제고</li> </ul> </li>   <li>□ 클린뱅크 달성을 위한 채권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제적인 채권관리로 부실예방체계 강화</li> <li>○ 연체채권 감축지표 조기 부여 및 평가 등 사후관리 강화</li> <li>○ 회수불능채권 조기상각 및 부실채권 매각 활성화</li> <li>○ 대손상각 특례 활용 등으로 부실정리 확대</li> </ul> </li>   <li>□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원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무(신용)종합과정 운영</li> <li>○ 직급별 차별화된 교육과정 편성</li> <li>○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채널 다양화</li> </ul> </li> </ul>

사업부문	운 영 방 침
카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홍보활동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마케팅커뮤니케이션(IMC) 위주의 브랜드 마케팅 진행</li> <li>○ 사업간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한 광고 및 홍보 공동모색</li> </ul> </li>   <li>□ 사업추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신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바일 기프트 상품 및 USB신용카드 개발</li> <li>○ 스마트카드관리시스템(SCMS) 확대 개발</li> </ul> </li>   <li>□ 신규회원 활성화 마케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회원 조기활성화 마케팅 강화</li> <li>○ Lock-in 를 통한 신규회원 마케팅 강화</li> <li>○ 신규 미이용회원 wake up 마케팅 강화</li> </ul> </li>   <li>□ NH카드 VIP 서비스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VVIP(신용카드 초우량고객) 대상 초청행사 실시</li> <li>○ 우수회원 전용 채널운영(전용 콜센터 등)</li> </ul> </li>   <li>□ 「NH카드」 성장 동력확보를 위한 신규회원 추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센티브 제공으로 카드추진 활성화</li> <li>○ 맞춤형 영업지원으로 신바람 나는 추진 분위기 조성</li> </ul> </li>   <li>□ 고객 니즈를 반영한 신상품 개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포츠 특화, 금융복합, 해외이용특화 상품 등 개발추진</li> <li>○ 타 브랜드 제휴 멤버십 상품</li> <li>○ VIP, 포인트 전용 등 다양한 체크카드 상품 발행</li> </ul> </li> </ul>
공제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대마진 중심의 전통적 수익창출 한계에 대응하여, 보험사업을 통한 안정적 수익원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년도 6월말 현재 농·축협 수수료는 3,332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7.4% 성장하여 주요 수익원으로서의 보험사업 역할 증대</li> </ul> </li>   <li>□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분납보험 집중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금보험, 생명보장성보험, 장기손해보험 집중추진으로 미래 수수료수익 확보 및 신용사업 우수고객 장기 유치 토대 마련</li> </ul> </li>   <li>□ 농업인 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인안전공제, 가축공제, 농기계종합공제 등 농업인 실익공제 및 농작물재해보험 확대로 농촌복지 향상</li> </ul> </li> </ul>



사업부문	운 영 방 침
공제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건전성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속보험료 수입 확대를 위한 유지율 향상, 실효·해지율 감축</li> <li>○ 공제대출 연체비율 감축, 건전대출 확대</li> </ul> </li> <li>□ <b>우수직원 육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인력 육성 및 멘토화를 통한 추진분위기 제고</li> <li>○ 각종 보험교육 이수 및 자격 취득 확대 지원</li> </ul> </li> </ul>

## 라. 교육지원사업

사업부문	운 영 방 침
조직육성 및 경영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농업인 지원역량 확충을 위한 지도·지원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인실익지원 중심 및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 확대</li> <li>○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농·축협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지도</li> <li>○ 업적평가 및 경영평가 내실화를 통한 조합원 지원 역량 확충</li> <li>○ 자기자본 증대 및 고정투자 지도 강화</li> <li>○ 조합원 정예화 및 이용고배당 중심의 배당체계 확립</li> </ul> </li> <li>□ <b>협력적 조직문화 구축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통간 하나되기」 지속 추진을 통한 상생의 조직문화 구축 지원</li> <li>○ 도시와 농촌 농·축협간 공동발전방향 모색 및 지도</li> <li>○ 상생적 노사문화 정착 지도</li> </ul> </li> <li>□ <b>규모화·전문화를 통한 농·축협 경쟁력 제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모화를 위한 농·축협의 자율적인 합병 추진</li> <li>○ 농·축협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경영진단 실시</li> <li>○ 전문성이 강화된 축협 및 품목농협 육성</li> <li>○ 지사무소 설치제도 개선을 통한 지사무소 관리강화</li> </ul> </li> <li>□ <b>경영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운영혁신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축협 경영관리 강화로 건전결산 유도</li> <l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사관련 제도 개선 및 운용 지도</li> <li>○ 성과주의 보수·급여제도의 정착 지도</li> <li>○ 공명선거 실시 지도</li> </ul> </li> <li>□ <b>내부통제 기능강화로 경영의 안정성 제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통제 모니터링 강화로 법규 위반 요인 사전차단</li> <li>○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으로 농협 재무정보 신뢰성 제고</li> </ul> </li> </ul>

사업부문	운 영 방 침
<b>조직육성 및 경영관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사고예방 및 금융거래 안정성 확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근절로 고객 신뢰확보 및 사업경쟁력 제고</li> <li>○ 고객 재산보호 및 금융거래 안정 확보</li> </ul> </li> <li>□ <b>고객중심 민원처리 및 농업인소비자 권익보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원 사전예방 및 신속한 처리로 농협이미지 제고</li> <li>○ 농업인 권익보호기관으로서 농협의 사회적 책임 완수</li> </ul> </li> </ul>
<b>영농지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지역 중심의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사업추진 확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지역농협, 농업인·농민단체 의견 반영</li> <li>○ 지역 중심의 지도사업 개발 및 지원체제 구축</li> <li>○ 지자체 등 지역협력적 사업 개발 및 추진</li> </ul> </li> <li>□ <b>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 개발 및 농촌체험 등 여가활동 공간으로 확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부응하는 사업 개발 추진</li> <li>○ 도시민 농촌관광·체험 활성화를 위한 팜스테이 마을의 운영 프로그램 등 질적 향상 및 소득원 확대 추진</li> <li>○ 기업 등의 사회공헌·자원봉사 활동을 농업·농촌지역에 연계 추진</li> </ul> </li> <li>□ <b>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복지사업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축협 단위 조합원 복지증진사업에 대한 개발 추진</li> <li>○ 다문화가정의 안정화 사업 적극 추진</li> <li>○ 정부(농림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 지원·협력 사업 발굴을 위한 농정활동 강화</li> </ul> </li> <li>□ <b>농촌 인구 감소에 대응한 농업·농촌 인적자원 확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등 도시민 농촌이주 활성화</li> <li>○ 농업 인력난 감축 및 해소를 위한 영농인력 확보 및 고용 지원</li> <li>○ 조합원 국제결혼 중개 및 이주여성농업인 영농교육 강화</li> </ul> </li> <li>□ <b>사업구조 개편 이후 지역 맞춤형 사업 선택과 집중</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 선정 및 성과 극대화</li> </ul> </li> <li>□ <b>지역농업발전의 추진 주체로서 농협의 역할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특화작목 발굴·육성을 위한 지자체협력사업 개발·추진</li> <li>○ 지역 농축산물 소비촉진 협약 및 로컬푸드센터 운영</li> <li>○ 도시민 귀농·귀촌 지원을 통한 후계 농업인력 확보</li> </ul> </li> <li>□ <b>안정적 농업경영을 위한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참여 및 농가 고용지원</li> <li>○ 해외동포 인력 농업연수를 통한 인력활용 지원</li> <li>○ 사회봉사대상자 농촌지원 지속 실시</li> <li>○ 농촌일손돕기 및 재해대책 지원</li> </ul> </li> </ul>

사업부문	운 영 방 침
영농지도	<p><b>□ 도시민 교류 활성화를 통한 농업·농촌 활력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등 사회공헌·일손돕기 등 농촌 지역 유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희망가꾸기운동, 1사1촌 자매결연 등</li> </ul> </li> <li>○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의 발굴 추진</li> <li>○ 도시와 상생하는 새로운 농업·농촌운동의 전개</li> </ul> <p><b>□ 농촌관광 활성화로 농업인 소득 증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객 지향적인 체험 프로그램 개발 지원</li> <li>○ 팜스테이마을간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강화</li> <li>○ 농촌 어메니티(쾌적함) 자원 발굴 및 소득 자원화 추진</li> <li>○ 팜스테이 브랜드 강화를 위한 육성시스템 구축</li> </ul> <p><b>□ 조합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 문화·복지사업 추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농협의 지역문화복지센터 육성 확대</li> <li>○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 지원사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여성대학 육성 및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인증</li> <li>- 이민여성농업인 농업교육 실시</li> <li>- 농촌 총각 혼인 문제 완화를 위한 국제결혼 중개</li> </ul> </li> <li>○ 상조회사 설립과 연계한 장제사업 육성으로 효과 극대화</li> <li>○ 여성농업인 농협사업 참여 확대 및 여성조직 사업활성화</li> </ul> <p><b>□食을 통하여 農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새로운 농업농촌운동인 「食사랑 農사랑 운동」 전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생활·식문화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국민의 건강과 農의 가치를 지키는 범국민운동 전개</li> <li>○ 食의 가치 재발견을 통한 소비자 식생활 개선으로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農의 중요성 인식 제고로 우리농산물 소비촉진</li> <li>○ 식생활개선캠페인 전개로 도시민의 식생활 변화를 유도하고 농촌 어메니티를 활용한 食체험, 교육마을을 육성하여 농촌의 다양한 식문화를 계승·발전</li> </ul>
조합원교육	<p><b>□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농협가치 교육 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원의 주인의식 고취를 위한 농협이념 교육확대</li> </ul> <p><b>□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실용교육 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위한 품목별 기술교육 확대</li> <li>○ 판매중심 농협 구현을 위한 경제사업 활성화 교육강화</li> <li>○ 선도농업인 육성을 위한 신교육프로그램 개발</li> </ul> <p><b>□ 농·축협 임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실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임원에 대한 리더십 교육강화</li> <li>○ 농·축협 임원과 조합원이 함께 하는 활성화과정 운영</li> </ul>

사업부문	운 영 방 침
<p>조합원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농업·농촌·농협 이해관계자 교육 실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이해증진 교육 실시</li> <li>○ 다문화가정에 대한 주변인의 이해교육과정 실시</li> <li>○ 우리 농축산물의 애호의식 고취를 위한 과정 운영</li> </ul> </li> <li>□ <b>사업구조개편에 따른 농협가치 교육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원의 주인의식 고취를 위한 농협이념 교육확대</li> </ul> </li> <li>□ <b>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실용교육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위한 품목별 기술교육 확대</li> <li>○ 판매중심 농협 구현을 위한 경제사업 활성화 교육강화</li> <li>○ 선도농업인 육성을 위한 신교육프로그램 개발</li> </ul> </li> <li>□ <b>농·축협 임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실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임원에 대한 리더십 교육강화</li> <li>○ 농·축협 임원과 조합원이 함께 하는 활성화과정 운영</li> </ul> </li> <li>□ <b>농업·농촌·농협 이해관계자 교육 실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이해증진 교육 실시</li> <li>○ 다문화가정에 대한 주변인의 이해교육과정 실시</li> <li>○ 우리 농축산물의 애호의식 고취를 위한 과정 운영</li> </ul> </li> </ul>
<p>홍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농업과 농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써 신뢰받는 농협 홍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인 및 농·축협의 실익사업 지원활동 중점 홍보</li> <li>○ 농협의 사회적 책임, 사회공헌활동 발굴 및 집중 홍보</li> <li>○ 주요 언론인사를 비롯한 오피니언 리더층에 대한 적극적인 여론조성 활동 전개</li> <li>○ 직급별 교육과정에 언론홍보 교육 필수 편입으로 전사적 홍보역량 강화</li> </ul> </li> <li>□ <b>농협 이미지 및 신뢰도 향상 및 브랜드 가치 제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H농협 및 CI규정에 맞는 광고 및 브랜드 전략 수립</li> <li>○ 소비자 중심의 품격있는 광고 개발</li> </ul> </li> <li>□ <b>농협방송 수신장비 설치 확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현안에 대한 계통간 신속한 정보공유</li> <li>○ 수준 높은 교육방송을 통한 임직원 자질 향상</li> <li>○ 홍보방송을 통한 대고객 홍보효과 극대화</li> </ul> </li> <li>□ <b>신 CI 적용 간판 교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 CI 미적용 사무소에 대한 간판 교체 추진</li> <li>○ 농협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사업경쟁력 강화</li> </ul> </li> </ul>

---

## Ⅲ. 사업계획 수립

---

# 1. 기본 방향

## □ 자체 중장기 발전방향 및 '12년 농·축협 경영목표와 연계한 사업계획 수립

- 농업인(조합원)의 의견이 반영된 상향식 사업계획 수립
  - 운영평가자문회의, 분과위원회, 작목반 회의 및 농·축산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 경제여건 및 농업·농촌환경, 정책방향, 내부환경 등 대내외 여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사업성에 대한 검토 철저
- 농·축협별 사업목표의 계량화, 구체화 및 경영방침에 부응하는 계획수립
- 전략적 자원 배분으로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사적 역량 집중

## □ 기존 사업을 재검토하여 반복적이거나 실익이 없는 사업을 제외하고, 농업인 실익 지원 중심의 (신규)사업 적극 발굴 및 추진

- 관행적이거나 실익이 없는 사업은 과감히 제외하고 지원효과가 큰 핵심사업 위주로 사업 재편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영농·양축 지원을 중점 반영하는 방향으로 수립

## □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반영된 사업물량 및 수지구모 책정

- 수지목표 책정시 안정·보수적 규모책정을 지양하고,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를 반영하여 사업물량 및 수지구모 책정

## □ 재무구조 건전화를 통한 경영 안정성 증대

- 각종 충당금 적립기준 준수, 배당금 내부적립 확대 및 한계사업장 정리 등 내실 경영 도모

## □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관련 기관 사업과 연계한 사업추진으로 시너지 효과 제고

# 2. 세부 기준

## 가. 자체 중장기 발전방향, 2012년 경영목표 및 사업부문별 운영방침에 부응한 신규사업 개발, 기존 사업의 내실화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수립

- 신규사업은 사업개시 시기, 성장가능성, 자금사정, 향후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

## 나. 모든 사업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 및 경영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

- 조합원에게 실익을 주는 사업 및 수익창출 사업 적극 반영

## 다. 사업별 계획물량은 목표손익 내에서 상향식으로 자율 책정하되, 2011. 9월말 가결산 결과, 최근 3개년 평균성장률, 관련 부서 지도기준, 지역 내 경제여건 전망, 농축산물 생산량 등을 감안하여 책정

- 주요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일정수준 성장토록 책정
  - 단순히 연간물량 책정 후 연간물량의 분기별 균등배분 지양
- 경쟁업체 성장추세, 최근 3개년 평균성장률, '11년 성장추세를 반영하여 목표이익 달성을 위한 적정물량 책정

## 라. 성과와 효율성 중심으로 사업 전환

- 최근 국내외 전반적인 경영위기를 인식하여 기존 사업을 수익창출과 조합원 및 고객에 대한 봉사 차원에서 철저히 재검토하여 '11년 사업계획서 기준 불요불급한 기존사업의 감축계획 수립

## 마. 연도중 비계획사업은 예산 추가편성 및 예비비사용 등을 동반하게 되어 전체 수지예산에 영향을 초래하는 바, 비계획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를 통한 사업계획 수립

- 특히, 고정자산의 취득 및 증·개축, 임차등은 반드시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연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전년도 이월공사는 고정투자 계획에 1순위로 반영)

## 바. 비계량사업에 대하여는 농업인 실익에 우선순위를 두고 검토하여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내실화 도모

## 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의 사업계획 및 방침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지역 농업개발에 적극 참여

## 아. 지역실정과 입지유형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중점 추진하되, 특히 도시형 농·축협은 소비 농·축협으로서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농축산물 유통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여 추진

- 산지 농·축협과 협력 농축산물 유통기능 강화 : 산지 농·축협 출하선급금 지원, 협력사업 발굴 등

## 자. 환경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감소되거나 수익성이 줄어든 사업은 과감히 폐지 또는 축소

## 차.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계획)의 사업계획서 반영 및 지역본부 사전검토

- 대상 농·축협 : 구조개선법에 의한 부실 농·축협 및 부실우려 농·축협
- 반영사항 :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조치 요구사항) 및 「조합구조개선및경영관리준칙」에서 정하는 경영관리기준
  - 재무구조 개선사항 : 한계사업장 정리(지사무소 통폐합), 인력운용개선, 불용자산 및 무수익 자산 매각, 경비절감, 고금리자금 조달에 따른 원가부담 해소 등
  - 경영체계 개편 : 사업단위별 책임경영체제 및 성과보상제 도입, 상임이사제, 사외이사제 도입 등

## 카. 사업계획 총회의결 시 수립결과에 따른 조합원의 관심 및 수혜부분을 별도 설명하여 조합원의 사업 참여도 제고

- 2012년도 중점(역점) 사업방향 및 <부표2>의 “사업별 우선순위 검토 세부 명세표”에 의거 각 사업부문별 조합원의 관심사항 및 수혜정도를 예측하여 총회나 운영의 공개, 사무소 비치 등을 통해 조합원에게 별도 설명 또는 공개

### ※ 작성시 주요내용(예시)

- 사업목적 및 필요성, 사업추진계획 및 주요 사업내용, 사업형태(자체사업, 정책사업), 사업의 추진에 따라 조합원에게 주는 직·간접 혜택(가능하다면, 금액으로 표시) 및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작성<서식(작성방법 예시임)은 붙임 참조>

〈 2012년 사업부문별 물량채정 기준 〉

**【경제사업 부문】**

□ 판매사업 : 목표손익 및 최근3개년 평균성장률, 관련부서 지도기준 등을 감안하여  
 책정하되, 전년대비 일정수준 이상 성장 책정

○ '12년 판매부문 관련 부서 지도기준(총괄)

(단위:억원,%)

구 분	2010년 실적	2011년 추정	2012년 계획	성 장 륜	
				최근3개년 평균	2012년 지도기준
농협공판장	18,047	17,500	18,500	7.1%	5.0%
경매식집하장	1,857	1,800	1,800	△1.0%	-
연합마케팅	6,520	5,300	4,080	△8.0%	△23.0%
공선출하회	7,812	9,000	11,000	29.5%	22.2%
노지채소수급	500	906	1,200	180.0%	20.0%
시설채소수급	184	155	80	△11.4%	-
과실계약출하	188	190	150	4.7%	△0.9%
수 출	2,935 (256백만불)	2,943 (270백만불)	3,270 (300백만불)	8.0%	8.0%
식품가공	4,120	4,300	4,500	11.4%	10.0%
친환경	12,453	14,000	15,000	10.0%	10.0%
학교급식	5,095	5,500	6,000	8.0%	10.0%
군 납	1,484	1,450	1,240	△0.7%	△3.0%
GAP	2,122	2,500	3,000	18.9%	20.0%

※ 시설채소 수급사업 및 과실계약출하사업은 '12년부터 산지유통활성화사업으로 통합 운영

○ 농협공판장

- '11년은 채소류 가격하락, 잦은 강우로 인한 출하량 감소로 공판사업 역조 예상

※ '10년은 채소가격 상승으로 '09년 대비 18% 성장

○ 경매식집하장

- 산지 교통발달에 따른 대도시 출하집중으로 경매식집하장 출하물량 지속 감소

□ 하나로마트

(단위:억원)

구 분	2010년 실적	2011년 추정	2012년 계획	성 장 륜	
				최근3개년 평균	2012년 지도기준
하나로마트	61,439	67,583	74,341	10.8%	10.0%

○ 2011년 하나로마트 매출실적은 국내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세에 따른 민간소비의 회복으로 유통업계의 매출성장에 따라 10% 내외의 매출액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

- 하나로마트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성장률은 10.8%를 기록하며 동일업계 실적을 상회하는 높은 성장세를 보임



○ 2011년 하나로마트 매출액성장률은 10% 내외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유통업계의 가격인하 경쟁, 새로운 소매영업방식의 등장, 유통업계의 포화로 인하여 보다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2012년 매출성장률은 2011년 수준인 10%내외를 나타낼 전망

\* 2011년 국내 GDP성장률은 4.3%로 예상되며, 2012년에는 4.6%로 금년보다 다소 상승 예상

\* 201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0%로 예상되며, 2012년에는 3.4%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예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낼 전망이어서 하나로마트 매출액 성장을 위한 여건은 비교적 호전될 전망

□ 구매사업 : 목표손익 및 최근3개년 평균성장률, 소관부서 지도기준 등을 감안하여 책정하되, 부분별로 아래 기준을 참조하여 책정

○ 영농자재

(단위 : 억원, %)

구 분	2010년 실적	2011년 추정	2012년 계획	성 장 률	
				최근3개년 평균	2012년 지도기준
영농자재	53,612	56,650	58,700	10.7%	3.6%

주) 1. 구매품매출액과 수탁사업예수금(당년대변누계-전년이월잔액)의 합계액 기준  
2. 비료, 농약, 유류, 시설원예자재, 농기계의 합계 기준

< 영농자재 부문별 물량책정 지도기준 >

사업별	물량책정 지도기준
비 료	○ 관내 농업인 사용추세 감안하여 책정하되, - 화학비료, 원예용비료는 '11년 대비 5% 감소 책정 ※ 정부의 맞춤형비료 공급확대 감안, 농가 화학비료 사용량 감소 전망 - 유기질(퇴비) 및 토양개량제, 상토는 '11년 수준 책정
농 약	○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농약사용 감축정책, 장려금 축소에 따른 가격인하 등으로 '11년 대비 5.0% 감소 책정 - 단, 원제품목(아리농약)은 '11년 대비 10% 증가 책정 - 시판 중점품목(제4종 복비 포함) 취급으로 시판상 견제 ○ 이용고배당 등 환원사업비를 투입하여 사업량 확대 및 고가 민원 해소 지속 추진
유 류	○ 관내 시설하우스 면적 및 농기계 대수, 기타 차량 통행량 등을 고려하되, -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강세수준을 감안하여 '11년 실적대비 7% 증가 수준에서 책정
시설원예 자재	○ 농업용필름, 농업용파이프, PP포대, 농산물포장상자 등 최근 3개년 평균 성장률과 관내 예상 수요량을 고려하되, - 시설하우스 재배면적 증가 둔화추세를 감안하여 '11년 공급실적 수준에서 책정
농기계	○ 농기계 및 농기계부품은 '11년 취급물량 대비 10% 증액 ○ 농기계은행 임대료는 '11년 실적대비 10% 증가 책정 ○ 농기계은행 직영운영 농협의 임작업료는 지역실정을 감안, 자율책정

**[신용사업 부문]**

□ 상호금융

- 예수금 및 대출금 : 농·축협외 최근3년간 평균성장률, 지역 자금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책정하되 '11년 추정실적 대비 일정 성장률을 반영하여 책정

<상호금융 예수금 및 대출금 실적, 성장률>

(단위:억원, %)

구 분	2010년 실적	2011년 추정	2012년 계획	성 장 률		
				최근3개년 평균	2012년 지도기준	
예금	잔액	1,956,655	2,070,000	2,200,000	10.4	6.3
	평균	1,866,614	2,000,000	2,140,000	9.2	7
대출	잔액	1,345,095	1,410,000	1,470,000	7.5	4.3
	평균	1,301,270	1,365,000	1,425,000	8.9	4.4

□ 공제(보험)

○ 보장성보험

- 보험료 및 수수료는 '11년 추정실적의 5% 성장물량을 책정 단, '12.3.2일 이후는 저축성특약을 부가할 수 없는 바 성장률 책정시 이를 반영
- 수수료는 '11년 수수료율(신규·보전 구분) 등을 참고하여 '12년 예상 수수료율(신규·보전 구분) 산출 후 이를 '12년도 계획보험료(신규보험료, 보전보험료 구분)에 곱하여 책정
- ※ 수수료 : (신규보험료 x 신규수수료율) +(보전보험료 x 보전수수료율)

○ 저축성보험

- 보험료 및 수수료는 '11년 추정실적의 10% 성장물량 책정
- 수수료는 '11년 수수료율(신규·보전 구분) 등을 참고하여 '12년 예상 수수료율(신규·보전 구분) 산출 후 이를 '12년도 계획보험료(신규보험료, 보전보험료 구분)에 곱하여 책정
- ※ 수수료 : (신규보험료 x 신규수수료율) +(보전보험료 x 보전수수료율)

○ 손해보험

- 보험료는 '11년 추정 물량의 20% 성장 물량을 책정하고 수수료는 '11년 수수료율(신규, 보전 구분)등을 참고하여 '12년 예상수수료율(신규,보전 구분) 산출 후 이를 '12년도 계획 보험료(신규보험료, 보전보험료 구분)에 곱하여 책정
- ※ 수수료 : (신규보험료 x 신규수수료율) +(보전보험료 x 보전수수료율)

< 생명보험 보험료, 수수료 실적 및 성장률 >

(단위:억원,%)

구 분	2010년 실적	2011년 추정	2012년 계획	성 장 률		
				최근3개년 평균	2012년 지도기준	
보장성	보험료	13,577	12,904	13,000	△3.3	5.0
	수수료	1,963	1,870	1,880	△5.8	5.0
저축성	보험료	51,450	55,770	58,600	13.4	10.0
	수수료	2,434	2,618	2,750	11.5	10.0
계	보험료	65,027	68,674	71,600	-	-
	수수료	4,397	4,513	4,630	-	-



< 손해보험 보험료, 수수료 실적 및 성장률 >

(단위:억원,%)

구 분	2010년 실적	2011년 추정	2012년 계획	성 장 률	
				최근3개년 평균	2012년 지도기준
보험료	5,381	6,718	8,000	35.2	20.0
수수료	1,548	1,668	1,840	28.1	10.0

□ 카드

- 전년도 카드 이용액 및 회원수 실적 및 최근 성장률 등을 감안하여 책정

< 카드사업 이용액, 회원수 실적 및 성장률 >

(단위:천명,억원,%)

구 분	2010년 실적	2011년 추정	2012년 계획	성 장 률	
				최근3개년 평균	2012년 지도기준
이용액	178,554	199,352	229,894	23.10	15.32
회원수	8,830	10,763	12,656	28.90	17.59
(신규)	567	575	294	50.60	△48.87
(유효)	2,014	2,248	2,329	20.50	3.60

주) 신규회원은 체크카드 신규회원 실적 제외

금감원 목표상한선 추정으로 인해 신규회원의 2012년 지도기준은 전년 대비 역조함

### 3. 작성 요령

가. 사업계획은 회계별(신용·일반사업회계), 지사무소별, 사업부문별, 담당자별로 작성하되 아래의 "사업계획 수립 시 주요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사업타당성을 분석하고 실익성과 효율성이 조화되도록 수립

나. 사업계획은 사업부문별로 사업명, 세부추진 사항, 분기별 계획으로 구분하되,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작성

- 사업물량 계획은 사업별, 품목별, 자원별, 사무소별로 작성하고 자금계획 및 수지예산과 상호 일치하도록 편성

다. 지사무소별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지점(소) 및 사업소별로 목표손익 달성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독립적으로 수립하고, 주사무소는 지사무소 계획을 반영하여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

- 총회의결 시 지사무소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를 참고자료로 가급적 첨부
- 지사무소 수립결과를 심사분석 및 성과보상 등과 연계하여 활용

※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는 총회의결 사항으로 정관 제49조2항에 따라 이사회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고 가급적 심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함. 다만, 이사회 심의(변경·삭제 등)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숙원사업 등으로서 반드시 사업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인 경우 이사회 심의결과를 총회부의 안전에 반드시 첨부

라. '12년 주요 신규·역점추진 사업은 '11년 대비 사업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신사업 개발 또는 역점추진 사업에 대해 「사업별 우선순위 검토 세부 명세표」 (부표2-양식1)에 작성

마. '11년 사업계획 중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은 "부표2-양식2"에 작성하되 사업효과 분석을 실시하여 조합원 실익, 농·축협 경쟁력 강화 및 수지개선을 수반하지 않는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

#### < 사업계획 수립 시 주요 검토사항 >

##### □ 계량사업

- 조합원의 소득증대 및 실익지원 정도
- 적극적이고 달성 가능한 사업물량 책정인지 여부
- 수익비용 대응원칙하에 손익분기점 이상의 사업물량 또는 목표매출이익 달성 가능 여부

##### □ 비계량사업

- 경영목표 및 운영방침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지 여부
- 원가개념에 입각하여 저비용·고효율성을 견지할 수 있는 지 여부
- 사업우선 순위와 소요예산이 적정한지 여부

##### □ 관리부문

- 조합원의 실익증진과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지 여부
- 사회통념 또는 농·축협간 형평에 어긋나지 않은 지 여부
- 예산이 낭비적이지 않은 지 여부

---

## IV. 자금계획 수립

---

# 1. 기본방향

- 각종 자금은 농·축협의 경영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과거 실적, 금후 경기동향, 중앙회 사업부문별 지침 및 정부정책 등을 감안하여 책정
  - 최소의 자금으로 계획이 달성되도록 자금회전을 제고방안 강구 후 적정규모 책정
- 수지목표에 의거 자율 책정한 사업물량에 근거하여 조달 및 운용규모를 책정하되, 자금 및 각종 물량공급 계획의 적기 시행으로 사업 및 자금운용의 효율성 제고
- 부실채권의 정화, 불용자산 및 비업무용동산·부동산 처분, 불요불급한 투자의 억제 등으로 자금의 고정화 방지 등 비수익성 자금운용 최대한 감축
- 자금계획은 회계별, 사업부문별, 용도별로 구분하여 본소에서 종합적으로 취합 조정하여 책정하고, 자금계획상의 계수는 회계별·사업부문별 계획 및 수지예산상의 관련계수와 일치
- 특히, 농협 재무기준 제4조에 의한 신용사업자금의 타사업운용한도(예수금의 20%)를 초과하여 운용하지 않도록 유의(재무기준 제4조는 연말기준 이행사항이 아니라 매월말 기준 이행사항임)
- 「조합상호지원자금」 등 중앙회에서 차입한 각종 자금 중 2012년에 상환기일이 도래되는 농·축협은 자금 수급계획에 이를 반영

# 2. 자금조달부문 편성기준

## 가. 예수금

- 상호금융 예수금은 지침상 2012년도 상호금융 물량책정 기준, 최근 3개년 평균증가율, 경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경영기반 유지에 필요한 수준의 적정 물량을 책정하되 일정 수준 성장토록 책정

## 나. 차입금

- 2012년 사업계획 물량, 고정투자 계획, 차입금 운용 및 상환계획, 차입금이자 부담 능력 등을 감안하여 책정
  - 대출금운용 조달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차입금 규모 책정 지양
- 일정규모 이상의 고정투자 관련 시설차입금은 심사 또는 심의를 거친 계획에 한해 자금계획에 반영
  - 고정투자 심사 및 심의대상은 고정투자계획 수립부문 참조

## 다. 자기자본

- 대외 경영안정성 확보, 손실발생에 대비한 흡수여력 확충 및 농축산물 유통개선과 사업확충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등을 위하여 농·축협별 의지목표를 수립하여 최대한 책정
- 각종 자기자본 관련 대외 감독 및 지도기준에 능동적 대처

### < ※ 자기자본 관련 대외 감독기준 >

- ◆ 농·축협 설립기준 : 출자금납입확약총액 5억원이상(품목 농·축협은 3억원이상)
- ◆ 감사결과 부실대출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써 단기간 내에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회수하기가 곤란하여 자기자본의 전부가 잠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영지도 대상이 됨(농협법 제166조)
- ◆ 업무용부동산 소유한도(자기자본 이내), 동일인당 대출한도(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이내), 자금차입 한도(자기자본과 중앙회 예치한 여유자금 범위 내), 동일법인에 대한 외부출자 한도(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이내) 등 각종 규제기준 충족

- 2012년도 신규고정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농·축협은 가급적 투자액 중 자부담액의 50% 이상을 조합원 출자금으로 신규 조성하여 충당
- 농·축협 실정에 맞는 출자 증대방안 수립 및 추진으로 자기자본 확대
  - 영농회장 및 부녀회장 등 내부 조직장 중심의 자율추진체제 구축
  - 조합원 가입확대 및 정예화를 통한 출자 증대
  - 「우선출자제도」를 활용한 출자증대도 적극 추진하되 업무처리절차 준수
- 자본건전성 확보를 위한 내부적립 확대
  - 법정적립금 등 제 적립금은 처분대상 잉여금의 70%이상 내부적립 하도록 계획 수립

### < 2012년 자기자본 확충계획 >

(단위:억원, 농·축협 평균-백만원)

구 분	2011년 예상	2012년 계획	전년대비	성장률
납입출자금 (농·축협 평균)	62,000 (5,313)	68,000 (5,830)	6,000 (517)	9.7%
자기자본 (농·축협 평균)	162,000 (13,882)	174,000 (14,910)	12,000 (1,028)	7.4%

## 라. 기타 자금

- 과거 및 최근 실적, 2012년도 사업계획 물량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 수준으로 책정



### 3. 자금운용부문 편성기준

#### 가. 자금의 유동성 확보와 여유자금의 고수익 운용

- 자금별 운용규모는 2011년 운용실적과 자금수요 전망, 기일도래 등을 감안 적정규모를 책정하되, 단기운용 자금은 수익성 및 유동성을 고려하여 책정
  - 자본적자 농·축협은 예금지급 등 단기 유동성 확보대책 반영
- 상호금융 여유자금의 고수익 운용을 위하여 상호금융대출금을 최대한 운용 확대
  - 2012년 상호금융대출금은 농·축협 여건을 감안하여 달성 가능한 예대비율이 유지되도록 편성  
- 단, 예대비율이 90%를 초과하는 농·축협은 적정수준의 대출금 규모를 책정하되, 예수금 증대방안 수립과 병행
- 부실채권의 정화, 유휴부동산 및 유입물건 처분, 불요불급한 고정투자의 억제 등으로 자금의 고정화 방지 및 무수익성 자금운용은 최대한 감축

#### 나. 예수금전용 억제

- 고정투자, 기타 비수익적 지출을 위한 예수금 전용은 최대한 억제하되, 경제사업 수행을 위한 예수금의 전용도 사업이 종료되는 즉시 예수금 전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 다. 다른법인에 대한 출자

##### 출자한도

- 농협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 범위 이내
- 동일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음
  - ※ 동일법인에 대한 출자한도 예외 적용
    - 중앙회에 출자하는 경우
    - 농·축협의 경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축협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시설물을 출자하는 경우. 다만,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시점이 부동산 및 시설물인 경우에만 가능 (농협법 제57조제5항)
- 투자한도 산출 시 기 투자금액은 장부상 금액이 아닌 당초 투자(취득)금액을 적용

##### 출자대상

- 계통출자금(납입출자금)
  - 중앙회 출자금은 농·축협 납입출자금 순증액, 자기자본 여건, 자금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농·축협 자율적으로 결정(당초 사업계획에 반영된 금액을 초과하여 중앙회 출자금을 납입하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절차 이행-이사회 의결)

- 계통출자금(우선출자금)
  - '12년 중앙회 우선출자금 납입을 희망하는 농·축협은 적정 금액 반영
- 품목 농·축협 중 특별시 또는 광역시 지역의 지역 농·축협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품목 농·축협은 출자금액 반영('09.12월 농협법 개정 시 품목 농·축협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 지역의 지역 농·축협 조합원으로 가입가능)

- 계통출자금(조합상호지원출자금)
  - 납입액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계상
  - \* 조합상호지원출자금 : 전년도 매출총이익의(신용, 공제, 경제 매출총이익 합계) 일정률(2.0% 이내)

구 분	출 자 기 준(예정)
○ 매출총이익 100억 이상인 7대도시 소재 농·축협	전년도 매출총이익의 2.00%
○ 매출총이익 50억 이상 농·축협	" 1.50%
○ 매출총이익 25억 이상 농·축협	" 1.00%
○ 매출총이익 25억 미만 농·축협	" 0.50%

- 주) 1. 2012년 출자기준이 확정되면 추후 별도 통보 예정  
 2. 전년말 매출총이익은 2011. 9월말 가결산결과 연말예상 매출총이익 기준으로 계상

- 계통출자금(사업이용초과출자금)
  - 전년도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의 1/3을 초과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매출총이익 합계액의 100분의 2 해당액을 중앙회에 출자(농협법 제58조 및 정관 제141조(139조))
  - 대상사업
    - ① 비조합원으로부터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
    - ② 비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 매출총이익 산출기준
    - ① 수신 : (1/3초과 수신금액) × (자금조달수익률)
    - ② 여신 : (1/3초과 여신금액) × (자금운용마진율)

※ 자금조달수익률 및 자금운용마진율은 2011년 결산 후 별도 통보 예정  
 (참고) 2011년 자금조달수익률 3.12%, 자금운용마진율 3.21%

- 공동사업투자금
  - 조합공동사업<회원조합지도·지원규정 제5장제2절> 신규참여 농·축협
- 외부출자<외부출자규정>
  - 농협법에 의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 상법의 회사 등에 대한 출자(발기 설립, 증자, 지분 인수 등)
  - 보유 부동산 및 시설물 출자시 공정가액을 감안하여 출자계획 수립
  -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후 증자 참여시 동일법인에 대한 출자한도(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초과 주의

※ 외부출자 계획 수립 시 사전에 아래표를 작성하여 한도초과 되지 않도록 유의

<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계획 >

(단위: 백만원)

구분	피투자 법인	자기자본대비 현황		지분(증권) 현황				투자계획			
		당초투자 ·취득액	투자 비율	좌수	주당 가격	금액	지분율	'11년 예상 (장부가)(A)	'12년 계획		'12년말
								취득(B)	처분(C)	(A+B-C)	
계통 출자금	농협중앙회										
	○○농협										
공동사업 투자금	○○농협										
	○○농협										
기타 외부출자	○○조합공동 사업법인										
	○○농업회사 법인										
	○○영농조합 법인										
	○○주식회사										
합계											

- 주) 1. 당초 투자·취득액 : 시가취득, 할인·할증 발행 등으로 인한 실제 취득·투자 금액  
 2. 투자비율 : 자기자본 대비 투자비율(실 투자액÷자기자본)  
 3. 지분율 : 피투자 법인의 보통주자본금(납입출자금) 중 투자 농·축협 지분율  
 4. 2011년 예상 장부가 : 지분법손익 및 감액손실·환입 등이 반영된 대차대조표상의 금액

라. 기타 사항

- 현금은 적정수준으로 보유하고 상환준비예치금은 전월말 예수금잔액의 10%로 편성
- 비료, 농약, 일반자재 등 영농 및 축산자재, 마트상품 등은 재고를 최소화하여 재고 자산 과다 보유에 따른 자금부담 경감

---

## V. 고정투자계획 수립

---

# 1. 기본방향

## 기 본 방 향

### ◆ 철저한 사업성 검증을 통한 고정투자 계획 수립

- 고정투자 계획 시 최우선 사항은 해당사업의 "사업성"임을 명심하여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는 사업은 배제

### ◆ 합리적인 고정투자를 통한 투자효율성 제고

- 재무기준에 의한 업무용부동산 투자비율 준수
- 경제사업 활성화, 신용사업 영업력 확충 등 농·축협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 IT(정보기술)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업무효율화 및 경쟁력 제고
- 농·축협간 공동투자를 통한 자금부담 경감 및 원활한 사업물량 확보

### ◆ 경영여건을 감안한 적정투자로 재무건전성 강화

- 투자와 처분을 연계하여 중복·과잉투자 방지 및 고정자산 규모 증가 억제
- 기존시설의 증·개축을 통한 시설운용의 극대화 도모
- 한계사업장 정리, 장기 불용동산 및 미처분 유휴자산 지속 처분으로 자산관리 효율화

## 가. "농업협동조합재무기준"에서 정한 한도이내 투자

### □ 업무용부동산 투자비율 준수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 업무용부동산 투자비율은 일정규모(회원조합지도지원규정 제40조 및 제41조 참조)이상의 업무용부동산 투자에 대한 심사·심의 및 시설자금 지원조건 시 적용됨에 유의
- 업무용부동산 투자비율(업무용부동산/자기자본) 지도기준 : 자기자본의 100%이내
  - ※ 업무용부동산 : 업무용부동산-감가상각누계액 -시설차입금-보조금
  - ※ 자기자본 기본한도(재무기준 제1조제2항)  
: 납입출자금+회전출자금+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가입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이월결손금은 차감)±자본조정±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불가피하게 자기자본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 순고정투자분(임차보증금 포함)에 대한 금리부담액이 최근 3개년 평균 당기순이익(고정자산 처분에 따른 당기순이익 차감) 이내일 때에만 투자

- ※ 자기자본 초과 순고정투자액 : 업무용부동산+업무용동산-감가상각누계액-보조금-시설자금차입금-자기자본
- ※ 금리부담액 : (시설자금차입금×해당자금차입금이자율)+(예수금전용액×1년만기정기예치이율)

□ 농·축협의 자금차입한도 관리 철저

○ 중앙회 자금차입을 통한 고정투자 시 웹아리오피스의 지도문서 및 "농·축협 자금차입현황"자료 등을 조회하여 자금차입한도 관리 및 승인절차 철저 이행

※ 농·축협 자금차입한도 조회 : 웹아리오피스/통합로그인시스템/통합업무시스템/M/신용실적/여신실적/지역농협/여신현황/[2523]사무소별 자금차입현황

※ 자기자본 5배 이내에는 중앙회장 승인, 5배 초과 시는 농식품부장관 승인

○ 차입금별 배정(전결) 기준

구 분		한 도		배정(전결) 기준	비 고
기본한도		자기자본+중앙회 예치여유자금 이내		자동 배정	신용·신용외 구분 없음
기본 한도 초과시	신용 사업 자금	자기 자본	3배 이내	지역본부 심사 배정	예치금담보 차입금은 지역본부장 승인
			5배 이내	상호금융자금부 심사 배정	
			5배 초과	농식품부장관 승인 배정	
	신용외 사업 자금		5배 이내	1. 농·축협 신청분 : 지역본부장 전결 2. 사업부서 지원분 : 해당부서장 전결	
			5배 초과	농식품부장관 승인 후 소관부서장 전결	

나. 고정투자 타당성 및 법적제한 사항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

□ 고정투자 계획 시 해당사업의 타당성, 자체 자금조달능력, 경영능력, 효율성, 인근 유사시설과의 중복투자여부, 과잉투자에 의한 낭비적 요소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고정투자 소요액을 최대한 감축하되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 수립

- 투자 우선순위는 투자에 따른 경제성 및 수익성을 반드시 고려하되, 충분한 사업성 검토를 통해 사업별 실소요액 반영
- 계속사업인 경우 사업진행 상황, 투자규모, 효과 등을 파악하여 실 소요액 반영
- 인근 농·축협과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경제권 및 생활권을 고려한 농·축협간 공동투자 추진

※ 고정투자 우선순위

- ① 전년도 이월공사
  - 연도중 고정투자가 마무리 되지 않을 경우 다음년도 고정투자 계획에 1순위로 반영
- ② 도시계획저축, 행정명령, 과세부담 등으로 불가피한 투자
- ③ 재해로 인하여 증·개축이 필요한 시설
- ④ 조합원 실익을 위한 유통·가공·생산지원 시설(신용점포 및 편익시설은 투자억제)
- ⑤ 사무 자동화기기 등 업무의 생력화 및 대고객 서비스향상을 위한 전산투자 등

다. 고정투자 계획에 대한 심사 및 심의절차 이행

□ 신규투자 시 사업 타당성 및 투자규모 적정성 등을 위주로 중점 검토하되, 심사 및 심의대상 시설은 제규정(회원조합지도지원규정, 회원조합자금지원및고정투자심의회 운영준칙) 및 각종 지도사항에 따라 제반 절차를 반드시 이행

< 업무용부동산 투자비율 제한기준 >

시설별	생산유통가공시설	종합회관, 편익시설 등	재해시설 복구
기본비율	100%	100%	제한없음

주) 재해시설 복구 외 우대비율 적용 없음에 유의

< 농·축협 고정투자 심의 및 심사 대상시설 >

구 분	시 설 별	심 의 및 심 사 대 상 기 준	
심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용 토지</li> <li>○ 업무용 건물</li> <li>○ 업무용 동산</li> </ul>	<p>&lt; 시군지부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li> <li>○ 시설별 투자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li> <li>○ 투자대상 자산별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li> </ul>	<p>&lt; 지역본부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액 30억원 초과</li> <li>○ 시설별 투자액 30억원 초과</li> <li>○ 투자대상 자산별 20억원 초과</li> </ul>
		<p>&lt; 지역본부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규모 50억이상 100억원 미만 신축</li> <li>○ 투자규모 50억원이상 증개축</li> </ul>	<p>&lt; 중앙본부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규모 100억원이상 신축</li> </ul>
심의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유통·가공 시설</li> <li>○ 신용점포 및 편익시설</li> <li>○ 종합시설<sup>(*)</sup></li> </ul>	<p>&lt; 지역본부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규모 50억이상 100억원 미만 신축</li> <li>○ 투자규모 50억이상 증개축</li> </ul>	<p>&lt; 중앙본부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규모 100억원이상 신축</li> </ul>
		<p>&lt; 지역본부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규모 100억이상 150억원 미만 신축</li> <li>○ 투자규모 100억원이상 증개축</li> </ul>	<p>&lt; 중앙본부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규모 150억원이상 신축</li> </ul>

주) 종합시설은 본점, 경제사업장, 편익시설 등이 복합된 시설임

## 라. ~~업무용부동산 투자비율(순업무용부동산/자기자본) 과다 농·축협은 재무구조 개선 추진~~

- 업무용부동산 투자비율에 따라 단계적 개선 추진
  - 대상 : 투자비율 100% 초과 농·축협(자본잠식 농·축협 포함)
- 지도방향
  - 100% 초과 : 자체 정상화계획에 의거 개선추진
  - 150% 초과 : 처분대상시설 등을 필히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재무구조 개선

## 마. 지사무소 통폐합 추진

- 경쟁력 취약 지사무소 중 통폐합 대상 지사무소는 '12년 사업계획에 반영 후 통폐합 추진
  - 적기시정조치에 의한 통폐합대상 지사무소
  - 중앙회 경영진단 등으로 중앙본부에서 폐쇄 요구한 지사무소
  - 경쟁력 취약 지사무소 중 경영개선계획에 의거 통폐합 대상 지사무소
  - 기타 농·축협 자체 지사무소 평가 결과, 폐쇄 대상 한계 지사무소
- 기타 경쟁력 취약 지사무소는 자체 경영개선 계획을 '12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 2. 업무용부동산

### 가. 업무용토지

- 토지 매입 시는 공인기관의 토지시가조사표를 기준으로 인근 거래상황, 토지관련세법, 향후 전망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에 반영
- 특히,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농지전용 및 대상시설 신축 가능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거 농·축협 이외의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는 각종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처벌이 수반됨에 유의
- 농·축협이 직접 경작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법"에 유의하여 취득하되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에 유의

### 나. 업무용건물

- 각종 예산단가표를 기준으로 중앙회의 농·축협에 대한 자금 지원계획, 정부예산 반영계획, 자기자본 등 고정투자 능력을 감안하여 투자계획을 수립하되, 가능한 농·축협의 자부담비율을 최대한 반영(50% 이상)
  - 대 상 : 신축공사, 개·보수, 이월공사, 특수시설물, 창고시설 등
  - 반영기준 : <부표 1>의 자본예산단가표 참조



□ 중앙회 시설자금 지원 시 다음 사항이 반영됨에 유의하여 고정투자 계획을 수립

- 농·축협간 공동투자, 증·개축은 우대 지원(지원비율·지원최고한도 우대)하되, 생산·유통·가공 사업 이외의 신축 시설투자에 대하여는 지원이 없는 점에 유의
- 고정투자 심사 및 심의절차 미 이행 시설에 대하여는 중앙회 유통저리시설자금 지원 불가

□ 참고 : 2011년도 유통시설자금 지원기준

- 공급금리 : 3.0%(공급금리 4.76% '11.9월 기준, 매분기 1.76% 이차보전),
- 지원기간 : 5년(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지원시기 : 매분기 시설 공정도에 따라 지급
- 지원액 산출범위(자부담액) : 건축비 - 국고(지방비) 보조 및 용자
- 지원비율 및 최고한도

구 분	지 원 한 도		지 원 비 율	
	일 반	우 대	일 반	우 대
재해시설 복구	한도없음	한도없음	100%	100%
생산유통가공시설	30억원	50억원	60%	80%
농업인 편의시설	-	10억원	-	50%

※ 상기내용은 향후 세부 자금지원 계획 수립 시 변경될 수 있음

- 농안법 개정·시행에 따라 공판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저온저장시설, 선별·소포장, 가공 시설 등 신사업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반영

### 3. 업무용동산

□ 업무용동산 신규취득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무자동화, 전산화 추진과 물류표준화 등 유통개선에 필요한 부분을 우선 반영하되, 업무용동산 교체취득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것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에 한하여 반영(별첨 참조)

- 수리 후 사용 가능한 업무용동산은 내용연수를 연장하여 사용

□ 기계장치는 동·하절기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불가피한 부분과 도입에 따른 비용 및 인력절감 개선 등의 기대효과가 큰 품목 위주로 반영하되, 관련법규(소방법, 환경관련 법규 등)저촉 및 지적사항 등을 우선 반영

□ 차량운반구는 영농자재 주문배달, 농산물 순회수집, 구제역 방제용 등 농업인 실익증진과 농축산물 유통을 위한 화물차량을 우선 반영하고 업무용 승용차는 농촌현실과 농업인의 정서를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차량(3000cc 이하)을 운영하되 최대한 렌트로 운용

※ 렌트 운용에 따른 장·단점은 수지예산 부문 참조

-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품, 파렛트 출하농산물의 정가수의매매 확대와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물류장비(순회차량, 지게차 등) 확충계획이 있는 경우 이를 적극 반영

- 공구기구비품은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화 등으로 경제적 수리 한계를 초과한 품목 및 인원증원, 면적확장 등에 따른 추가 소요집기 등을 우선 반영
- 적용단가는 본 지침상의 단가표 금액에 의거하여 산정하되, 단가가 없는 품목은 정부 공인 물가조사기관의 조사·공표가격 이내에서 자율 책정

#### 4. 임차점포시설물

- 대 상 : 2012년도 중 신규 사무소의 임차방침 확정, 기존 사무소의 리모델링 및 임차기간 만료 등으로 예산변경이 필요한 경우
- 반영기준 : 경쟁력 제고 및 임차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불가피한 부문에 대하여 임차기간 등을 반영하여 고려

#### 5. 무형자산

- 대 상 : 전산프로그램 개발비, 상용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 편성기준 : 사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규개발 또는 보완개발이 불가피한 경우 기존 관련자산의 보유현황, 사용실태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반영여부 결정

< 부서별 고정자산 취득 반영 요청사항 >

부문별	항	목(세목)	반영 기준	비고							
일반	업무용 건물	건물	1. 비료·농약 창고(퇴비제조장 등 포함) 신축 및 창고 개보수 ○ 농협 실정에 맞게 소요비용 계상	해당 농협							
			2. 주유소 건축비용(토지비용 별도) ○ 5억원 내외	해당 농축협							
			3. 농기계서비스(자동차A/S)센터 통폐합 : 농협자율 결정 ○ 사후봉사 강화 및 효율성 제고	해당 농협							
			4. 농기계은행사업용 직영 농기계 보관창고 ○ 대당 5평 기준 농협실정에 맞는 소요비용 계상	해당 농협							
			5. 산지유통센터(APC) 설치 ○ 소요예산 : 신규 50억, 보완 30억원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신규설치 : 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지원내용 : 집하·선별·포장·예냉·저온저장시설 등	12년 지원 사업 선정 농축협							
	업무용 건물	구축물	1. 건조·저장시설 설치('12년 지원계획)	<table border="1"> <tr> <td>지원기준</td> <td>통합 : 국고보조 50%, 지방비 10%</td> </tr> <tr> <td></td> <td>증 설 : 국고보조 30%, 지방비 10%</td> </tr> <tr> <td></td> <td>저온창고 : 국고보조 50%, 지방비 10%</td> </tr> </table>	지원기준	통합 : 국고보조 50%, 지방비 10%		증 설 : 국고보조 30%, 지방비 10%		저온창고 : 국고보조 50%, 지방비 10%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선정된 농협
			지원기준	통합 : 국고보조 50%, 지방비 10%							
		증 설 : 국고보조 30%, 지방비 10%									
		저온창고 : 국고보조 50%, 지방비 10%									
	지원단가	통합 : 6,750백만원 증 설 : 1,800백만원 저온창고 : 600백만원									
업무용 건물, 업무용동산, 임차점포 시설물 등	업무용 건물, 업무용동산, 임차점포 시설물 등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	2. 유류 저장탱크 설치 및 개보수 ○ 농·축협 실정에 맞게 소요비용 계상 - 탱크 5만 L기준 대당 3~5천만원 소요	해당 농·축협							
			1. 하나로마트 매장 대형화 및 현대화 추진 ○ 소요예산(매장규모 991㎡ 신축 기준) - 건축공사 : 3,500천원/3.3058㎡(철골조) - 인테리어 : 1,300천원/3.3058㎡ - 쇼케이스 외 기타 잡기 : 2,000천원/3.3058㎡ ※ 총 6,800천원/3.3058㎡  ○ 중앙회 지원내역 - 무상보조자금 · 대상 : 신·증축 및 리뉴얼 완료 매장 · 금액 : 3.3058㎡ 당 10만원(신·증축, 리뉴얼) ※ 최고한도 : 2억 - 조합유통활성화자금(1년, 무이자, 저리자금 1%) · 대상 : 신·증축 및 리뉴얼 완료 매장 · 금액 : 3.3058㎡당 3 ~ 7백만원(최고 50억, 리뉴얼 30억) ※ 991㎡ 이상 신·증축 : 3.3058㎡당 7백만원 - 농안기금(10년, 3%) · 대상 : 도시지역 1,000㎡이상 신·증축 및 임차 농축협 · 금액 : 신·증축(건축비의 50%), 임차(임차보증금 50%) * '11년 자금계획이며 중앙회의 자금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조정 가능 * 정부 예산조정에 따른 변경 가능	매장대형화 및 현대화추진 농·축협							

부문별	항	목(세목)	반영기준	비고
일반	업무용건물, 업무용동산 임차점포 시설물 등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	<p><b>2. 하나로마트 통합 POS 시스템 도입 및 교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스템명 : 통합 POS S/W 및 H/W</li> <li>○ 용도 : 매입, 매출, 재고 및 원장을 관리하는 사무기기</li> <li>○ 대상 : S/C(Store Controller)를 포함하여 POS시스템 운영마트</li> <li>○ 소요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도입 시 추정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형매장(단말기 3~ 5대) : 30 ~ 35백만원</li> <li>- 중형매장(단말기 6~10대) : 35 ~ 50백만원</li> <li>- 대형매장(단말기 10대이상) : 60백만원 이상</li> </ul> </li> <li>※ 산정기준 : S/C는 1대, Client-PC, O/A프린터 및 주변기기(핸드단말기, 전자저울, 바코드프린터, 동전계수기는 POS단말기 수량을 감안하여 추정)</li> <li>※ 단말기 1대(고정·핸드스캐너, 설치대 등 포함)추가 시 3백만원 소요</li> <li>■ S/C 교체시 추정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C 중형 : 11백만원</li> <li>- S/C 대형 : 16백만원 이상</li> </ul> </li> <li>※ 산정기준 : S/C, S/W 교체비용 만 반영</li> <li>- POS 단말기 및 주변기기 교체 시에는 추가비용 반영 필요</li> </ul> </li> </ul>	POS 시스템 신규 또는 추가 설치 농축협
			<p><b>3. PDA 시스템 도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AN카드가 내장된 PDA단말기를 매장의 S/C와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실시간 DATA 전송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작업자의 업무를 효율화 시키는 시스템으로 상품의 발주, 검수, 반품, 재고관리, 각종 데이터의 수집 및 조회 가능</li> </ul> </li> <li>○ 소요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DA본체 : 1,200천원(단말기 1대 기준)</li> <li>- ACCESS POINT : 무선네트워크 운용장비(50평당 1대) : 650천원</li> <li>- 영수증 프린터(외부행사 시 현장에서 영수증 발급) : 240천원</li> </ul> </li> </ul>	설치희망 농·축협
			<p><b>4. 하나로마트 Web-POS 시스템 도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스템명 : Web-POS 시스템</li> <li>○ 용도 : 매입, 매출, 재고 및 원장을 관리하는 사무기기</li> <li>○ 대상 : S/C(Store Controller) 없이 POS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하나로마트</li> <li>○ 소요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OS 단말기 1대 : 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OS단말기, 설치대, 스캐너, 핸드단말기, 영수증 프린터 각 1대 반영, H/W VPN 설치비용 반영</li> </ul> </li> <li>- POS 단말기 2대 : 8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OS단말기 및 주변기기 2대 반영, H/W VPN 설치비용 반영</li> </ul> </li> </ul> </li> <li>▶ 단말기 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OS 단말기 1대 : 2백만원</li> <li>- POS 단말기 2대 : 4백만원</li> </ul> </li> </ul> </li> </ul>	현행 하나로 POS 시스템 사용 농·축협
			<p><b>5. 전자서명 시스템 도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도 : 사용자 인증용 온라인 전자서명 시스템 도입</li> <li>○ 소요예산 : S/W 및 H/W 도입 : 단말기 1대당 270천원</li> </ul>	설치희망 농·축협

부문별	항	목(세목)	반영기준	비고												
일 반	업무용건물, 업무용동산, 임차점포 시설물 등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	<b>6. 서버관리시스템 도입</b> ○ 용도 : 통합POS서버에 대한 D/B, POS등 H/W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실시간 관리 및 장애예방 ○ 소요예산 : 서버 1대당 800천원	설치희망 농·축협												
			<b>7. 「친환경농산물 판매코너」 설치</b> ○ 대상 농축협 : 330㎡이상 점포 ○ 주요시설 : 친환경농산물판매코너, 냉장진열대, 전자저울, 인테리어 및 간판 ○ 소요예산 : 17㎡(15백만원), 10㎡(12백만원)	설치희망 농·축협												
			<b>8. 농축산물 취급매장 「HACCP시스템」 구축</b> ○ 대상 농축협 : 38.4㎡이상 축산물취급 점포 ○ 주요시설 : 작업장시설, 위생설비, 검사실 등 ○ 소요예산 : 7.5백만원 이상(축산물HACCP기준원 제시 모델로 추정, 건물 신축·시설·시공 인건비 등은 별도) ※ 중앙회 지원 : 신청 사무소수에 따라 지원액 한도 내에서 저리 지원 - 연도별로 관련 사항은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관련문서 : 축유72105-429. 2011.3.29	설치희망 농·축협												
			<b>9. 쇠고기 이력추적제 관련 장비 구입</b> ○ 대상 농·축협 : 정육코너 운영 농·축협 ○ 주요장비 : 전자저울, 키오스크 등 ○ 소요예산 : 2백만원	설치희망 농·축협												
			<b>10. 하나로마트 간판 교체</b> ○ 대상 : 하나로클럽, 파머스마켓(정부 보조사업기간 만료 마트), 간판 노후화로 인한 교체 예정 점포 등 ○ 주요시설 : 지주·전면·돌출간판 등의 판갈이 교체 ○ 간판규격당(1m×1m) 예상단가 (단위:천원)	해당 농·축협												
			<table border="1"> <thead> <tr> <th>예상단가</th> <th>전면간판</th> <th>돌출간판(양면)</th> <th>지주간판(양면)</th> </tr> </thead> <tbody> <tr> <td>신규제작</td> <td>494</td> <td>685</td> <td>1,569</td> </tr> <tr> <td>천 갈 이</td> <td>236</td> <td>450</td> <td>427</td> </tr> </tbody> </table>		예상단가	전면간판	돌출간판(양면)	지주간판(양면)	신규제작	494	685	1,569	천 갈 이	236	450	427
			예상단가		전면간판	돌출간판(양면)	지주간판(양면)									
			신규제작	494	685	1,569										
			천 갈 이	236	450	427										
			<b>11. 하나로마트 상품MD진열표준화에 따른 매장집기 및 VMD 보강</b> ○ 대 상 : 하나로마트 진열표준화 예정 점포 ○ 주요사항 : 곤도라선반 등 매장집기류, POP장비 등	해당 농·축협												
			<b>12. 식자재 전문매장 규모화 추진</b> ○ 대상 : 시 단위 인구 10만 이상 지역, 군 단위 인구 8만 이상 식자재 상권이 양호한 점포를 대상으로 권역별 거점매장으로 육성 ○ 점포 규모 및 운영 : 330㎡(100평) 이상 규모 독립매장으로 운영 ※ 창고 등 기존시설 및 유희시설 활용 ○ 소요예산(부지 구입 및 건축비 제외) - 쇼케이스 등 집기류 : 200백만원(330㎡기준, 3.3058㎡당 200만원) ※ 중앙회 지원 : 매장 대형화 지원 기준을 준용하여 지원	해당 농·축협												

부문별	항	목(세목)	반영기준	비고																						
일반	업무용건물, 업무용동산, 임차점포 시설물 등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	<b>13. GAP 위생시설 보완</b> ○ 대상 : '12년 지원사업 선정 농협 ○ 자부담 50%, 보조 50%(국고 30%, 지방비 20%) ○ GAP관리 시설기준에 따른 위생시설 등 보완	해당 농협																						
			<b>14. 농산물 상품화장비 구입</b> ○ 선별기, 포장기 등 농산물 상품화장비 구입 ※ 중앙회 50%(지원한도 30백만원), 자부담 50%	해당 농협																						
			<b>15. 물류기기 구입</b> ○ 대상 : '12년 지원사업 선정 조직 ○ 조성비율 : 국고 30%, 자부담 70% ○ 지원내용 : 파렛트, 지게차 등 물류기기 구입시 국고지원	해당 농협																						
			<b>16. 광역 친환경단지 조성사업</b> ○ 지원내용 :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광역 친환경 단지 구현을 위한 각종 고정투자 및 시설장비 등 지원	해당 농협																						
			<b>17. 가공공장 식품위생 시설장비 개보수 및 전통식품 품질 인증, HACCP 인증 등에 따른 설비 투자</b> ○ 공장별 소요액은 미정	해당 농협																						
			<b>18. 학교급식지원시설 운영에 따른 설비투자</b> ○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추진	해당 농축협																						
			<b>19. 가축병원 설치 : 45백만원</b>	해당 축협																						
일반	업무용 동산	기계장치	<b>1. 브랜드경영체(통합RPC) 시설현대화</b> ○ 사업비 : 80억원 ○ 지원조건 : 국고 24억(30%), 지방비 24억(30%), 자부담 32억(40%) ○ 지원시설 : 가공기계 설비류, 품질분석 장비류 및 부대 시설류 구입지원 < 주요 시설별 내역 > <table border="1" data-bbox="566 1384 1305 1765"> <thead> <tr> <th>구분</th> <th>구성부문</th> <th>기계종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고품질 가공 및 품질고급화 기계 설비류</td> <td>원료정선부</td> <td>원료정선기</td> </tr> <tr> <td>현미부</td> <td>현미기, 현미분리기, 입선별기 등</td> </tr> <tr> <td>정미부</td> <td>정미기, 백미색채선별기 등</td> </tr> <tr> <td>연미부</td> <td>고성능연미기</td> </tr> <tr> <td>포장부</td> <td>자동포장기, 로봇자동적재기 등</td> </tr> <tr> <td>이송기계</td> <td>유도배출형 버켓엘리베이터 등</td> </tr> <tr> <td>품질검사 장비류</td> <td>분석장비</td> <td>외관분석기, 성분분석기, 제현율 또는 도정수율판정기, 백도계 등</td> </tr> <tr> <td>부대설비류</td> <td>부대시설</td> <td>집진시설, 왕겨처리시설 등</td> </tr> </tbody> </table>	구분	구성부문	기계종류	고품질 가공 및 품질고급화 기계 설비류	원료정선부	원료정선기	현미부	현미기, 현미분리기, 입선별기 등	정미부	정미기, 백미색채선별기 등	연미부	고성능연미기	포장부	자동포장기, 로봇자동적재기 등	이송기계	유도배출형 버켓엘리베이터 등	품질검사 장비류	분석장비	외관분석기, 성분분석기, 제현율 또는 도정수율판정기, 백도계 등	부대설비류	부대시설	집진시설, 왕겨처리시설 등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선정된 농협
			구분	구성부문	기계종류																					
			고품질 가공 및 품질고급화 기계 설비류	원료정선부	원료정선기																					
				현미부	현미기, 현미분리기, 입선별기 등																					
정미부	정미기, 백미색채선별기 등																									
연미부	고성능연미기																									
포장부	자동포장기, 로봇자동적재기 등																									
이송기계	유도배출형 버켓엘리베이터 등																									
품질검사 장비류	분석장비	외관분석기, 성분분석기, 제현율 또는 도정수율판정기, 백도계 등																								
부대설비류	부대시설	집진시설, 왕겨처리시설 등																								
<b>2. 공동방제용 무인헬기 운영</b> ○ 무인헬기 구입(예상)액 : 대당 200백만원 - 중앙회 5~20%, 지자체 50%, 농·축협 자부담 30~45%	해당 농·축협																									
<b>3. 농기계서비스센터 장비 현대화 추진</b> ○ 리프트, 호이스트 등 : 20백만원	해당 농협																									

부문별	항	목(세목)	반영기준	비고												
일반	업무용 동산	기계장치	<b>4. 유류취급소 시설장비 구입</b> ○ 주유기 대당 4백만원 ○ 주요 POS시스템 대당 7백만원 ※ 농협폴(NH-OIL) 신설/전환 시 주유기 및 POS시스템은 중앙회에서 무상지원 ○ 탱크 레벨게이지 주유소당 7백만원(탱크 5대 기준)	해당 농·축협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b>1. 농기계은행사업용 신규농기계 구입</b> ○ 신규농기계 구입예정액 반영 ○ 내용연수 도래 중고농기계 대체 구입분 반영	해당 농협												
			<b>2. 직영 농기계 운반용 차량</b> ○ 5톤(크레인 장착) : 75백만원 ○ 3.5톤(셀프형) : 50백만원	직영 농협												
		공구기구 비품, 기타	<b>1. CI조명간판 교체 설치</b> ○ 점두(입체문자형) 간판 신규 : 1㎡ 당 821천원 ○ 점두(판류형) 간판 신규 : 1㎡ 당 445천원 ○ 돌출 간판(양면) 신규 : 1㎡ 당 678천원 ○ 옥상(채널)간판 신규 : 5,995천원(높이 1.5m 기준)	교체대상 농·축협 (지사무소 포함)												
			<b>2. 농작물 병충해 검사용 현미경 구입</b> : 대당 4백만원	해당농협												
			<b>3. 자재판매장, 주유소 POS시스템 장비 구입</b> : 대당 3백만원	해당농축협												
			<b>4. 농기계서비스센터 아리오피스 LAN설치</b> : 자율책정	해당농축협												
			<b>5. 가축진료장비 일체</b> : 30백만원	해당축협												
			<b>6. 농협방송 위성수신장비 설치</b> ○ 장비명 : 위성수신장비 1set(영상방송 수신용) ○ 총 소요액 : 2,600천원(1개소 기준, TV설치 별도) ○ 유지보수 : 설치 후 1년간 무상	희망 농축협 (지사무소 포함)												
			<b>7. 농협방송 노후 셋탑박스 교체</b> ○ 대상 : '05~'06년 셋탑박스 설치 사무소 중 교체필요 사무소 ○ 소요액 : 셋탑박스 1기 1,400천원													
차량 운반구	<b>1. 비료 물류개선 화물차량 구입</b> : 대당 25백만원 <b>2. 농기계순회수리 특장차 구입</b> : 대당 50백만원 <b>3. 무인헬기 운반차량 구입</b> : 대당 20백만원 <b>4. 유류취급소 유조차(홈로리) 구입</b> : 대당 50백만원 <b>5. 가축 진료차량 구입</b> : 대당 35백만원	해당 농축협														
신용	업무용 동산	기계장치	<b>1. 구형 통신장비 교체 비용</b> ○ 용도 : 영업점 온라인 사용장비(1개 영업점 당)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구분</th> <th>장비명</th> <th>단가(천원)</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①</td> <td>VPN장비</td> <td>3,000</td> <td></td> </tr> <tr> <td>②</td> <td>스위칭허브</td> <td>500</td> <td></td> </tr> </tbody> </table> ○ 구형 통신장비에 대한 교체 - 스위칭 허브 교체 : 교체장비 대수×500천원 - VPN장비 교체 : 3,000천원	구분	장비명	단가(천원)	비고	①	VPN장비	3,000		②	스위칭허브	500		희망 농·축협
			구분	장비명	단가(천원)	비고										
①	VPN장비	3,000														
②	스위칭허브	500														

부문별	항	목(세목)	반영기준	비고																																																					
신용	업무용 동산	기계장치	<b>2. 통신장비 구축비용(신규 영업점)</b> ○ 용도 : 영업점 온라인 사용장비(1개 영업점 당)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구분</th> <th>장비명</th> <th>단가(천원)</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①</td> <td>라우터</td> <td>1,500</td> <td>점내</td> </tr> <tr> <td>②</td> <td>스위칭허브</td> <td>500</td> <td>점내,점외</td> </tr> <tr> <td>③</td> <td>19" 랙</td> <td>500</td> <td>점내,점외</td> </tr> <tr> <td>④</td> <td>VPN 장비</td> <td>3,000</td> <td></td> </tr> </tbody> </table> ○ 통합단말기 및 LAN자동화기기로만 설치시 : 6,000천원 (①+②×2대+③+④) ○ 점내 365자동화코너 신규설치 - 설치 전산기기가 24대 초과 시 스위칭 허브(② 500천원) 반영 ○ 점외 365자동화코너 신규설치 - 스위칭허브(② 500천원) 및 19" 랙(③ 500천원) 반영	구분	장비명	단가(천원)	비고	①	라우터	1,500	점내	②	스위칭허브	500	점내,점외	③	19" 랙	500	점내,점외	④	VPN 장비	3,000		신설 영업점 및 희망 농·축협																																	
			구분	장비명	단가(천원)	비고																																																			
①	라우터	1,500	점내																																																						
②	스위칭허브	500	점내,점외																																																						
③	19" 랙	500	점내,점외																																																						
④	VPN 장비	3,000																																																							
<b>3. 영업점 인터넷(VPN)망 구축</b> ○ 사유 : 영업점 인터넷 환경 구축 및 VPN 방식을 이용한 전산업무 사용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구분</th> <th>장비명</th> <th>단가(천원)</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①</td> <td>VPN장비</td> <td>3,000</td> <td>사무소당</td> </tr> <tr> <td>②</td> <td>스위칭허브</td> <td>500</td> <td></td> </tr> </tbody> </table> - 신설 경제사업장 PC대수가 4대 이상인 경우 : 3,500천원 (①+②)	구분	장비명	단가(천원)	비고	①	VPN장비	3,000	사무소당	②	스위칭허브	500		희망 농·축협																																												
구분	장비명	단가(천원)	비고																																																						
①	VPN장비	3,000	사무소당																																																						
②	스위칭허브	500																																																							
신용	업무용 동산	공구기구 비품	<b>1. 단말기 및 자동화기기별 단가</b> (단위 : 천원)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 colspan="2">기기명</th> <th>단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통합단말기</td> <td>모니터(통합)</td> <td>270</td> </tr> <tr> <td>본체부(통합)</td> <td>850</td> </tr> <tr> <td>통장부(통합)</td> <td>830</td> </tr> <tr> <td>완제품(세트)</td> <td>1,950</td> </tr> <tr> <td rowspan="3">책임자단말기</td> <td>모니터(책임자)</td> <td>270</td> </tr> <tr> <td>본체부(책임자)</td> <td>850</td> </tr> <tr> <td>완제품(세트)</td> <td>1,120</td> </tr> <tr> <td rowspan="3">데스크탑PC</td> <td>모니터(PC용)</td> <td>200</td> </tr> <tr> <td>본체(PC용)</td> <td>850</td> </tr> <tr> <td>완제품(세트)</td> <td>1,050</td> </tr> <tr> <td colspan="2">노트북PC</td> <td>1,100</td> </tr> <tr> <td colspan="2">정보인식기용PC</td> <td>1,120</td> </tr> <tr> <td rowspan="3">프린터</td> <td>A4전용</td> <td>450</td> </tr> <tr> <td>A3겸용</td> <td>650</td> </tr> <tr> <td>컬러A4전용</td> <td>550</td> </tr> <tr> <td colspan="2">신형핀패드</td> <td>220</td> </tr> <tr> <td rowspan="2">정보인식기</td> <td>일반형</td> <td>6,000</td> </tr> <tr> <td>알뜰형</td> <td>1,500</td> </tr> <tr> <td colspan="2">ATM기</td> <td>16,500</td> </tr> <tr> <td colspan="2">ATM기(고액권 업그레이드용)</td> <td>5,000</td> </tr> </tbody> </table>	기기명		단가	통합단말기	모니터(통합)	270	본체부(통합)	850	통장부(통합)	830	완제품(세트)	1,950	책임자단말기	모니터(책임자)	270	본체부(책임자)	850	완제품(세트)	1,120	데스크탑PC	모니터(PC용)	200	본체(PC용)	850	완제품(세트)	1,050	노트북PC		1,100	정보인식기용PC		1,120	프린터	A4전용	450	A3겸용	650	컬러A4전용	550	신형핀패드		220	정보인식기	일반형	6,000	알뜰형	1,500	ATM기		16,500	ATM기(고액권 업그레이드용)		5,000	희망 농·축협
			기기명		단가																																																				
통합단말기	모니터(통합)	270																																																							
	본체부(통합)	850																																																							
	통장부(통합)	830																																																							
	완제품(세트)	1,950																																																							
책임자단말기	모니터(책임자)	270																																																							
	본체부(책임자)	850																																																							
	완제품(세트)	1,120																																																							
데스크탑PC	모니터(PC용)	200																																																							
	본체(PC용)	850																																																							
	완제품(세트)	1,050																																																							
노트북PC		1,100																																																							
정보인식기용PC		1,120																																																							
프린터	A4전용	450																																																							
	A3겸용	650																																																							
	컬러A4전용	550																																																							
신형핀패드		220																																																							
정보인식기	일반형	6,000																																																							
	알뜰형	1,500																																																							
ATM기		16,500																																																							
ATM기(고액권 업그레이드용)		5,000																																																							



부문별	항	목(세목)	반영기준	비고										
신용	업무용 동산	공구기구 비품	(단위 : 천원)	희망 농·축협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기기명</th> <th>단가</th> </tr> </thead> <tbody> <tr> <td>CD기</td> <td>9,500</td> </tr> <tr> <td>CD기(고액권 업그레이드용)</td> <td>800</td> </tr> <tr> <td>공과금수납기</td> <td>5,500</td> </tr> <tr> <td>카드복합발급기</td> <td>750</td> </tr> </tbody> </table>		기기명	단가	CD기	9,500	CD기(고액권 업그레이드용)	800	공과금수납기	5,500	카드복합발급기	750
기기명	단가													
CD기	9,500													
CD기(고액권 업그레이드용)	800													
공과금수납기	5,500													
카드복합발급기	750													
<b>2. 사무소 전화관련 시설(키폰주장치, 전화기)</b> ○ 대상 : 신설 신용 영업점 및 사무소의 키폰 주장치 노후화에 따른 장비 교체 예정사무소 ○ 사무소 키폰 주장치는 통신사업자 무상 구축 < 통신사업자 무상 공급 장비 >				신설 영업점 및 희망 농·축협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기능</td> <td>키폰주장치 + 계통 사무소 무료전화 + 고객인터넷전화</td> </tr> <tr> <td>국선</td> <td>국선(전화번호 수량) 8회선 이하</td> </tr> <tr> <td>내선</td> <td>내선(전화기 수량) 24개 이하</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기능	키폰주장치 + 계통 사무소 무료전화 + 고객인터넷전화	국선	국선(전화번호 수량) 8회선 이하	내선	내선(전화기 수량) 24개 이하		
구분	내용													
기능	키폰주장치 + 계통 사무소 무료전화 + 고객인터넷전화													
국선	국선(전화번호 수량) 8회선 이하													
내선	내선(전화기 수량) 24개 이하													
※ 사무소 내부 케이블 공사는 사무소 실시 ※ 보수료는 연간 200천원 ~ 400천원, 개별전화 서비스료는 연간 80천원 ~ 360천원 ※ 전화요금에 포함되어 청구됨 ○ 전화기는 [단가 (①) × 대수(인원 + 공용공간 : 회의실, 탕비실 등)]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구분</th> <th>종류</th> <th>단가(①)</th> </tr> </thead> <tbody> <tr> <td>일반전화기</td> <td>일반</td> <td>50천원</td> </tr> <tr> <td rowspan="2">다기능 IP 전화기 (키폰전화기)</td> <td>일반</td> <td>200천원</td> </tr> <tr> <td>고급</td> <td>500천원</td> </tr> </tbody> </table>				구분	종류	단가(①)	일반전화기	일반	50천원	다기능 IP 전화기 (키폰전화기)	일반	200천원	고급	500천원
구분	종류	단가(①)												
일반전화기	일반	50천원												
다기능 IP 전화기 (키폰전화기)	일반	200천원												
	고급	500천원												

□ '12년 TMSF 교육 희망 농축협은 아래 사항에 대해 필요시 고정투자 계획에 반영

- 노트북
- 빔프로젝터 : 2,000ANSI 80만원내외, 3,000ANSI 130만원 내외
- 스크린 : 삼각대형 10만원내외, 유압식 20만원내외
- 포인터 : 6~7만원
- 회의용 테이블(교육시 조별1개) : 4만원내외
- 핀마이크 및 핸드마이크
- 지휘봉(손가락모양 등), 타임벨, 타임위치, 스피커, 캠코더, 디지털카메라 등

□ 무선기기(전자경매) 보안 강화 시스템 구축

- 대 상 : 전자경매 실시 공판장
- 장비명 : 보안프로토콜 무선 AP장비(대당 530천원)
- ※ '12년도 일정 시점부터 보안 인증이 안된 무선기기(무선AP, PDA, 경매응찰기, 무선 POS 등) 사용제한

□ 농안법 개정(시행 '12.6월)으로 정가수의매매 확대에 필요한 저온저장시설, 선별 및 소포장, 가공 시설 등 신사업 기반 확충

- 산지 품목전문화 공판장의 선별 후 경매도입을 위한 선별기, 컨테이너, 파레트 등 장비 확충

□ 중도매인 사업활성화를 위한 소매점포 임차지원을 위한 건물임차비 예산반영

- 공판장 명의로 소매점포를 임차, 중도매인과 공판장 의무거래 약정 체결 후, 지원
- 필요시 소포장, 저온저장 시설도 임차지원

< 참고 : 상호금융 시설보조비 지원기준 >

< 금융장비보조금 >

- 지원금액 : 지역형태별 차등지원

소재지 구분	대도시	시지역(중소도시)	농촌지역(읍,면)
기본한도	9백만원	11백만원	13백만원

주)소재지 구분은 상호금융대상평가 기준과 동일

- 지원비율 : 지원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수익자 부담

- 지역형태에 따라 단가별 지원비율 차등 적용

구 분	도시지역(대도시, 중소도시)	읍지역	면지역
지원비율	취득가액의 50% 이내	60% 이내	70% 이내

- 지원대상품목 : 11개

- 365코너설치비, ATM기, CD기, 공과금수납기, 통합단말기, 복합영상정보기, 위조외화 감별기, ATM기 업그레이드, 정보인식기, CCTV, NBS방송기기

< 창구환경개선자금 >

- 지원기준 : 농·축협당 1회만 지원(2003년 이후 수혜 농·축협 제외)
- 지원대상 : 2012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CI 인테리어공사 완료 농·축협
- 지원한도 : 최고 30백만원 범위 내에서 공사대금의 30~50% 지원

< 신CI간판교체자금 >

- 창구환경개선자금과 별도로 2년간 한시적 지원
- 지원금액 : 최고 150만원 범위 내에서 공사대금의 50% 지원
- 지원기준 : '11년 4월말 1,164개 농·축협 본소 기준으로 1회 지원

---

## **VI. 수지예산 편성지침**

---

**1. 기본 방향**

**2. 영업수익 및 비용**

**3. 판매비와관리비**

**4. 교육지원사업비**

**5. 예비비 편성**

**6. 영업외비용**

# 1. 기본 방향

## 기 본 방 향

### ◆ 농업인 실익 중심의 교육지원사업 확대

- 영농부담 경감, 농축산물 생산지원, 농외소득 증대 등 농업인 지원 확대
-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 확대 및 수익력 제고

### ◆ 수익창출을 고려한 예산 편성으로 불확실한 경영여건 대비

- 운영비·사무비 등 일상적 경비 증가 가급적 억제
- 계획 수립 단계 타당성 검토 강화로 Zero-Base(영 기준)에서 예산 편성

### ◆ 핵심·전략사업 위주의 예산편성

- 신규 수익사업 및 고부가가치 핵심전략사업 등을 위주로 예산 편성
- 효율적 예산관리를 위한 월별(분기별), 부문별 예산 목표 설정

가. 예산은 **2012년**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편성

나. 예산항목은 회계규정에 명시된 계정과목 해설을 참조하여 회계별, 세목별로 구분·편성하고 예산편성에 적용할 단가는 본 지침상의 예산편성단가표를 참조하여 자체 실정을 감안하여 편성

- 예산집행 기준이 없는 예산확보 차원의 편성은 일체 지양
  - 관행적, 비생산적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소모성 예산은 최근 경영여건을 고려 최대한 긴축 편성
  - 행사성, 보여주기 식 사업 등은 편성 배제
- 비례성 예산은 매출총이익 증가율 범위 내에서 편성하되 집행기준 재검토

다. 중앙회와 농·축협이 계통수수료 배분율은 **10:90**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배분율이 달리 확정된 사업은 해당 사업방침에서 정한 율에 의하여 계상

라. 자체 경제사업 중 매출액을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관내 일반상 또는 농·축협간 형평성을 유지하여 책정

마. 판매비와관리비는 본 지침의 편성기준에 의하되 비목의 성격을 감안 원가성 비용은 해당 부문의 원가로 편성 및 성과에 비례한 예산편성으로 긴축경영 추진

- 경상경비 억제를 위한 관리성 예산 편성규모 최소화

바. 시장개방 가속화, 예대마진축소 등의 경영환경변화에 맞는 인력운용이 요구되므로 **2012년 정원책정은 수익성 및 사업량 등과 연계성을 강화하여 부표1 (2012년 농·축협 정원운용기준)에 의하여 편성하고 이를 참조하여 인건비 책정**

□ **정원책정시 유의사항(요약)**

- 총정원은 아래의 총정원 책정기준에 의하여 책정
  - 농축협의 총직원(비정규직 포함)에 의한 매출총이익이 그룹평균에 미달하는 경우 지도관리 부문을 포함한 총정원 동결
  - 신용부문은 농축협의 신용종사직원 (비정규직 포함) 1인당 예수금평잔과 신용매출총이익이 그룹별 평균에 모두 미달하는 경우 신용사업 정원 동결
  - 농축협의 경제종사직원(비정규직 포함) 1인당 평균 경제사업실적과 경제사업매출총이익이 그룹평균에 모두 미달하는 경우 경제사업 정원 동결
  - 다만, 지사무소 설치, 신규 수익사업 추진시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예외 인정
- 직급별 정원은 아래기준에 의하여 책정
  - 5·6급 정원은 '11년 5·6급 정원을 감안하여 책정하되 신규사업 추진, 사업량 증가, 경영수지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책정
  - 기능직 직원은 사료공장, 가공공장, RPC, APC, 농기계수리센터, 하나로마트 등 경제사업장의 전기, 기계, 냉동업무 등 담당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전문인력에 한하여 정원책정
  - 업무직 직원은 계약직 정원과 합산하여 농축협의 전체 5·6급 및 기능직 총 정원의 30%이내 운용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추진 및 대농민 실익사업지원에 필요한 경우 35%이내에서 운용가능
  - 4급이상 책임자정원은 **5급이하 통할직원 현원의 4명 이상당 1명 운용을 원칙으로 책정**
  - **4급이상 책임자의 정원은 상위직급(간부직원 포함)의 정원이 하위직급의 정원 초과책정 불가. 특히 본·지소별로 4급 책임자수를 초과한 3급 책임자 책정 금지**
  - 특히, 3급이상 정원은 농축협의 직원 1인당(비정규직 포함)매출총이익이 소속그룹 평균매출총이익(붙임3의2.가.)에 미달하거나 전년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농축협은 동결(다만, 사업량기준에 의하여 배치한 전무 및 지사무소장의 경우는 제외)

□ **2012년도 농·축협 정원운용기준 : 부표1**

사. 접대비 예산은 아래 접대비 총한도 산출기준을 감안하여 책정

- 현행 농·축협 계정과목 중 접대비성 계정과목은 업무추진비(목), 시장개척비(목) 등이며, 접대비 예산은 접대비성 계정과목의 합계 이내에서 책정해야 함
- 세법상 접대비는 계정과목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기 접대비성 계정과목 이외의 계정(예 : 광고선전비, 회의비, 기타잡비 등)에서 세법상 접대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접대비 예산은 세법상 접대비 한도(농·축협당)를 기준으로 책정하되 지사무소에 대한 배정은 사업물량, 조합원 수, 기타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정
- 특히, 최근 2~3내 합병으로 지소가 된 경우 관내 조합원수 및 사업물량 등을 고려 적정금액의 접대비 예산배정
- 또한, 사회적·경제적 분위기에 부응하여 건축 편성기조 유지

농·축협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과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을 당기순이익(법인세비용 차감전)에 더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음

**< 세법상 접대비 한도 기준 >**

구 분	한 도 계 산	비고	
일반접대비 한 도 (E=A+C+D)	기본한도(A)	12백만원 × 해당사업연도 월수( )/12	
	총수입금액 기준 (B=①+②+③)	① 100억원 이하 금액 × 0.2%	
		②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금액 × 0.1%	
		③ 500억원 초과 금액 × 0.03%	
	일반수입금액 기준 (C=④+⑤+⑥)	④ 100억원 이하 금액 × 0.2%	
		⑤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금액 × 0.1%	
⑥ 500억원 초과 금액 × 0.03%			
기타수입금액 기준 (D)	(B - C) × 20%		
문화접대비 한 도 (F)	MIN(E×10%, 문화접대비지출액-총접대비지출액×3%) ※ 총 접대비 지출액의 3%를 초과하는 문화접대비 지출액과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10% 중 적은 금액		
<b>총 한도</b>	<b>E + F</b>		

주) 1. **총수입금액** 산출방법 : 총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을 의미하므로 합산손익계산서(신용회계 + 일반회계)의 「영업수익 해당액」 임

2. **일반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기타수입금액**을 차감한 것이며, **기타수입금액**이란 특수관계자간 수입금액으로서 농·축협의 특수관계자인 임직원·지분 1%이상 출자한 법인 등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특수관계자간 수입금액에 해당됨

※ **조합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특수관계자간 수입금액으로 보지 않음**

3. 문화접대비란 국내 문화관련 지출로서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 구입, 비디오물의 구입(게임물, 컴퓨터프로그램 제외),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간행물의 구입 용도로 지출한 접대비를 말함

※ **일반접대비 한도계산 예시**

(1) 총수입금액 200억원(일반수입금액 160억원, 특수관계자 수입금액 40억원)인 경우

- 기본한도(12백만원) + 일반수입금액 기준한도(100억원×0.2% + 60억원×0.1%=26백만원) + 기타수입금액 기준한도[[총수입금액 기준한도(100억원×0.2% + 100억원×0.1% = 30백만원) - 일반수입금액 기준한도(26백만원)]×20%=800천원] = 38,800천원

(2) 총수입금액 550억원(일반수입금액 500억원, 특수관계자 수입금액 50억원)인 경우

- 기본한도(12백만원) + 일반수입금액 기준한도(100억원×0.2% + 400억원×0.1%=60백만원) + 기타수입금액 기준한도[[총수입금액 기준한도(100억원×0.2% + 400억원×0.1% + 50억원×0.03%=61,500천원) - 일반수입금액 기준한도(60백만원)]×20%=300천원] = 72,300천원

주) 구체적인 접대비한도 계산방법은 2011 농협세무실무 49 ~ 50쪽 참조

<참고> 비용지출 관련 증빙요건 비교

1회당 지출액	접대비인 경우	접대비가 아닌 경우
기준금액 이하	영수증 수취 가능	
기준금액 초과	법정증빙 수취 ※ 미수취시 손금 불산입되어 9.9% 법인세 부담	법정증빙 수취(특례 있음) ※ 미수취시 지출증빙 불비 가산세 2.2% 부담

1. 법정증빙 범위 : 신용카드 매출전표(직불카드 포함),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2. 기준금액은 접대비인 경우는 1만원(다만, 경조금은 20만원)이며, 접대비가 아닌 경우는 3만원이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지출금액임
3. 접대비가 아닌 경우의 지출증빙 특례사항은 2011 농협세무실무 96~100쪽 참조
4. 법정증빙 미수취시 법인세 등 부담액은 지방소득세(법인세분)을 포함한 금액이며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을 포기한 법인의 손금불산입 대상은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22%를 적용함

자. 기부금에 대한 예산 책정

- 기부금은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하는 비용으로 농·축협이 사업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불요불급한 기부금 예산은 책정하지 말 것
- 예산책정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법상 손금산입 한도 이내에서 책정토록 할 것

< 기부금 종류별 손금산입 한도 >

구 분	손금산입 한도
법정기부금	소득금액 <sup>(*)</sup> × 50%
지정기부금	(소득금액 <sup>(*)</sup> - 법정기부금 손금인정액) × 10%
기타기부금	한도 없음(지출액 전액 손금불산입)

1. 소득금액 : I/S상 당기순이익 + 법인세비용 +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 지출액
2. 기부금 종류별 구분은 2011 농협세무실무 53~61쪽 참조

## 2. 영업수익 및 비용(판매비와관리비성 예산 제외)

### 가. 기본원칙

- 사업부문별, 회계별 수익 대 비용률은 목표 매출이익이 달성되도록 전년도 결산실적 및 2011년도 연말 추정실적과 각종 요율을 종합하여 책정
- 사업부문별 예산책정 규모는 해당 사업부문 2012년 예상 매출이익 증가율 범위 내에서 편성
- 신용수익 위주의 수익구조에서 경제 및 공제매출이익 제고방안을 강구하고, 신용수익도 수수료수입 확대 등 수익 다변화 추구
- 사업물량에 연동하는 비례성 예산은 실 소요액을 추정하여 반영하되, 연도중 사업계획에 반영된 예산을 초과 집행 할 경우 반드시 기획계와의 협의를 거쳐 집행

### 나. 사업부문별 편성 기준

#### 1) 신용사업

##### 가) 이자수익

##### □ 예치금이자(2012년도 추정)

- 상환준비예치금 : 4.00%
- 일시예치금 : 3.75%
- 기간별 정기예치금

구 분	6개월 이내	12개월	24개월	36개월
예치금리	4.10%	4.40%	4.60%	4.70%

- 기간별 슈퍼정기예치금

구 분	12개월	24개월	36개월
예치금리	4.50%	4.70%	4.80%

- 대출금이자 2012년도 연간취급 평잔 계획에 농·축협별, 과목별, 자원별 평균금리를 적용하되, 정부의 금리정책 및 대출금리 변동추세를 감안하여 편성
  - 정책대출금리 및 여신자금 차입금리
    - : 작성일 현재 최종 대출금리 또는 차입금리를 기준으로 편성
    - ※ 자료출력 : 여신종합시스템/자금관리/여신자금/최종 월 결산내역상의 대출 및 차입금리
-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이자 수입분은 전년도 실적, 향후 운영계획 등을 감안하여 편성



## 나) 수수료수익

□ 수입수수료 : 2011년 추정실적 대비 증감추이를 고려하여 편성

○ 온라인수수료(환·타행환·추심)

(단위:원)

구 분	3만원 이하	1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온라인송금(자행환)수수료	500		1,000	1,500
타행환 수수료	500	1,000	2,000	3,000

- 주) 1. 자행환수수료는 농·축협과 중앙회간, 농·축협 상호간, 중앙회 상호간 환 거래할 경우 모두 적용됨  
 2. 고객이 요청한 환 전금(환종 : 5)의 경우 온라인 송금수수료 적용

○ 기타 수수료수익(잡수수료 등)

부문별	항	목(세목)	편 성 기 준
신용		온라인수수료(기타) (152120)	○ 예금명의변경수수료 : 건당 5,000원 - 개인의 개명에 의한 명의 변경 시 면제
신용 (여신)	수입 수수료	잡수수료 (대출관련) (152122)	○ 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발급 - 부수당 2,000원(추가 부수당 500원)
			○ 채무인수수료 : 가계(건당 30,000원), 기업(건당 100,000원)
			○ 담보변경수수료 : 건당 15,000원
			○ 신용평가수수료 : 건당 60,000원
			○ 금융거래조회서 발급 : 부수당 30,000원 - 수신거래만 있는 경우 10,000원
			○ 신용정보제공사실 통보서 : 부수당 2,000원(추가 500원)
			○ 피담보채무확인서 : 부수당 2,000천원(추가 500원)
			○ 중도상환수수료 : 자율적으로 적용기준 및 면제기준 운용
		잡수수료 (한도약정수수료) (152143)	○ 자립예탁금, 종합통장대출 등 한도거래 대출의 신규약정 또는 기한연장의 경우 징구하는 수수료 - 대출한도금액의 0.5%
		잡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152144)	○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징구하는 수수료 - 1년이내 : 0.5%, 2년이내 : 1% 3년이내 : 2%

부문별	항	목(세목)	편성기준
신용 (여신)	수입 수수료	잡수수료 (감정평가) (152123)	○ 감정평가수수료 - 시가조사 : 감정평가액의 0.02% (최저 40천원 ~ 최고 100천원, 천원미만 절사) ○ 외부감정평가서 심사수수료 : 건당 30,000원
		잡수수료(자기앞수표발행) (152124)	○ 자기앞수표 발급수수료 - 정액 : 장당 50원, 일반 : 장당 300원
신용 (수신)	수입 수수료	잡수수료(대리사무취급) (152126)	○ 업무위탁 수수료 - 산출방식 : 보증료×수수료율 - 수수료율 : 직접보증(5%), 위탁보증(10%) ○ 구상채권회수 수수료 - 회수금의 10%
		잡수수료 (지로) (152128)	○ 지로업무 대행수수료 - 일반계좌이체 : 표준장표(A양식) 400원, MICR 240원, OCR 210원, 정액OCR 230원, 표준OCR 200원 - 지로자동이체 : 4대징수기관 40원, 기타 50원 - CD/ATM수납 : 표준OCR 90원, 기타 (창구수납대비 30원할인) - 인터넷수납 : 80원(A장표 제외) - 지로대량지급 : 급여 면제, 기타 50원 - 납부자자동이체 : 300원
		잡수수료(대행업무취급) (152130)	○ 수익증권 판매대행 보수 : 판매물량의 0.7%
		잡수수료 (타지방세대리취급) (152131)	○ 국세/지방세 수납수수료 - 국세 : 별도 수수료 없이 2일 자금예치 - 지방세 : 별도 수수료 없이 7일 이내에서 자금예치 * 타지방세인 경우 등기 발송료
		잡수수료(보관어음수탁) (152132)	○ 보관어음 수탁수수료 : 건당 1,000원
		잡수수료(금융정보제공) (152134)	○ 금융정보제공수수료 : 건당 2,000원
		잡수수료(증권계좌 대행) (152137)	○ 증권거래계좌 개설수수료 : 건당 5,000원 ○ 증권거래자금 이체수수료 : 건당 600원
		잡수수료(기타) (152140)	○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 건당 2,000원(수기 3,000원) - 거래실적증명서는 10장 초과 시 장당 50원 추가 - 2부 이상 발급시 추가 부수당 500원
			○ 통장·증서 재발급수수료 : 건당 2,000원
			○ 자기앞수표 사본발급 : 건당 2,000원
○ 자기앞수표 사고신고 : 장당 1,000원			
		○ 부도처리수수료 : 장당 5,000원	

부문별	항	목(세목)	편성기준
신용 (수신)	수입 수수료	잡수수료(기타) (1521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예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봉예수 : 100만원까지 1,000원, 10만원 추가시마다 100원 추가, 최고 40,000원</li> <li>- 봉함예수 : 건당 5,000원</li> </ul> </li> <li>○ 주식(사채)납입보관증명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당 : 10,000원(추가부수당 3,000원)</li> </ul> </li> <li>○ 자기앞수표 자금화 : 건당 1,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만원 초과시 100만원당 100원 추가 (건당 최고한도 5,000원)</li> </ul> </li> </ul>
	전자금융 수수료	CMS취급수수료(창구)	○ CMS창구이체수수료 : 건당 1,200원
신용 (외환)	외환수입 수수료	외환수입수수료(기타) (1521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화현수송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달러 1불당 매매기준율 × 0.13%</li> <li>- 대상 : 외국환 취급기관</li> </ul> </li> </ul>
	기타 잡수익	환율변동이익(매매) (1539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전수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달러 기준 1불당 매매기준율*1.75%</li> <li>- 대상 : 외환취급기관, 환전영업자</li> </ul> </li> </ul>

○ 전자금융수수료(e-금융관련 수수료)

구 분	징수기준				비 고	
	면제대상					
<b>&lt; 자동화기기 &gt;</b>						
CD/ATM이용 자행환수수료 (152202~ 152203)	(단위:원)					징수기준
	구 분		현금인출	자행이체	타행이체	
	농협 기기 이용시	3만원 이하	면제	면제	500	
		10만원 이하			800	
		10만원 초과			1,300	
		영업시간 외	500	400	400추가	
	타행 기기 이용시	10만원 이하	800	800	800	
		10만원 초과		1,300	1,300	
		영업시간 외	1,000	400추가	400추가	
	- 하나로 가족고객이 농·축협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는 경우					

구 분	징 수 기 준			비 고																				
	면 제 대 상																							
<b>&lt; 전자금융 &gt;</b>																								
e뱅킹수수료 (152211~ 152220)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구 분</th> <th>자행환</th> <th>타행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텔레뱅킹</td> <td>직접</td> <td>면제</td> <td>500원</td> </tr> <tr> <td>상담원</td> <td>500원</td> <td>1,000원</td> </tr> <tr> <td colspan="2">인터넷, PC뱅킹</td> <td>면제</td> <td>500원</td> </tr> </tbody> </table>			구 분		자행환	타행환	텔레뱅킹	직접	면제	500원	상담원	500원	1,000원	인터넷, PC뱅킹		면제	500원	징수기준					
	구 분		자행환	타행환																				
텔레뱅킹	직접	면제	500원																					
	상담원	500원	1,000원																					
인터넷, PC뱅킹		면제	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나로 가족고객</li> <li>- 국가기관(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가 83번)</li> <li>- 개인 및 법인고객에 대한 면제 승인 시 면제 가능 → 영업점 자체 및 지역본부 승인 후 면제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li> </ul>			면제대상																					
VM모바일뱅킹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VM모바일뱅킹 정보이용 수수료</li> <li>- VM모바일뱅킹 유효고객수 × 약 80원(월)</li> </ul>			징수기준																				
편뱅킹 및 CMS수수료 (152250~ 152251)	<table border="1"> <tbody> <tr> <td rowspan="3">대량 출금</td> <td colspan="2">스쿨뱅킹</td> <td>○ 3일 이상 자금예치 ○ 별도 수수료 없음</td> </tr> <tr> <td colspan="2">아파트뱅킹</td> <td>○ 5일 이상 자금예치 ○ 건당 100원</td> </tr> <tr> <td rowspan="2">하나로 OK뱅킹</td> <td>유선방송 이용료</td> <td>○ 10일 이상 자금예치 ○ 건당 50원</td> </tr> <tr> <td>기타자동 이체</td> <td>○ 2일 이상 자금예치 ○ 건당 100원</td> </tr> <tr> <td>대량 입금</td> <td colspan="2">하나로OK뱅킹, 하나로 편뱅킹, PLUS</td> <td>○ 농협이체 : 건당 100원 ○ 타행이체 : 건당 300원</td> </tr> <tr> <td colspan="3">CMS공동이용업무</td> <td>○ 출금이체 - 일반업체 : 20원/의뢰건+250원/처리건 - 학교 60원/처리건, ○ 입금이체 - 일반업체 : 200원/처리건 - 학교 100원/처리건,</td> </tr> </tbody> </table>			대량 출금	스쿨뱅킹		○ 3일 이상 자금예치 ○ 별도 수수료 없음	아파트뱅킹		○ 5일 이상 자금예치 ○ 건당 100원	하나로 OK뱅킹	유선방송 이용료	○ 10일 이상 자금예치 ○ 건당 50원	기타자동 이체	○ 2일 이상 자금예치 ○ 건당 100원	대량 입금	하나로OK뱅킹, 하나로 편뱅킹, PLUS		○ 농협이체 : 건당 100원 ○ 타행이체 : 건당 300원	CMS공동이용업무			○ 출금이체 - 일반업체 : 20원/의뢰건+250원/처리건 - 학교 60원/처리건, ○ 입금이체 - 일반업체 : 200원/처리건 - 학교 100원/처리건,	징수기준
	대량 출금	스쿨뱅킹			○ 3일 이상 자금예치 ○ 별도 수수료 없음																			
아파트뱅킹		○ 5일 이상 자금예치 ○ 건당 100원																						
하나로 OK뱅킹		유선방송 이용료	○ 10일 이상 자금예치 ○ 건당 50원																					
	기타자동 이체	○ 2일 이상 자금예치 ○ 건당 100원																						
대량 입금	하나로OK뱅킹, 하나로 편뱅킹, PLUS		○ 농협이체 : 건당 100원 ○ 타행이체 : 건당 300원																					
CMS공동이용업무			○ 출금이체 - 일반업체 : 20원/의뢰건+250원/처리건 - 학교 60원/처리건, ○ 입금이체 - 일반업체 : 200원/처리건 - 학교 100원/처리건,																					
면제대상 없음																								
CD/ATM 대행수수료 (외부기관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객수수료</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고객수수료</th> <th>은행전산이용수수료</th> </tr> </thead> <tbody> <tr> <td>영업 시간내</td> <td>1,100원(청호, 게이트뱅크), 900원(기타)</td> <td>170원(효성,한네트), 140원(NICE), 200원(청호,게이트뱅크)</td> </tr> <tr> <td>영업 시간외</td> <td>1,100원(NICE,한네트,효성), 1,300원(기타)</td> <td>200원(효성,한네트), 170원(NICE), 220원(청호), 240원(게이트뱅크)</td> </tr> </tbody> </table>			구분	고객수수료	은행전산이용수수료	영업 시간내	1,100원(청호, 게이트뱅크), 900원(기타)	170원(효성,한네트), 140원(NICE), 200원(청호,게이트뱅크)	영업 시간외	1,100원(NICE,한네트,효성), 1,300원(기타)	200원(효성,한네트), 170원(NICE), 220원(청호), 240원(게이트뱅크)	징수기준											
	구분	고객수수료	은행전산이용수수료																					
영업 시간내	1,100원(청호, 게이트뱅크), 900원(기타)	170원(효성,한네트), 140원(NICE), 200원(청호,게이트뱅크)																						
영업 시간외	1,100원(NICE,한네트,효성), 1,300원(기타)	200원(효성,한네트), 170원(NICE), 220원(청호), 240원(게이트뱅크)																						
한국마사회(NICE, 청호)			면제대상																					

구 분	징 수 기 준		비 고	
	면 제 대 상			
무선단말기 이용수수료 (152242)	○ 주류, 양곡, 유류구매 전용카드 취급수수료		징수기준	
	구분	카드발급점`		가맹점관리점
	주류	거래금액의 0.018%		거래금액의 0.042%
	양곡	거래금액의 0.035%		거래금액의 0.015%
	유류	거래금액의 0.0189% (회원거래지점)	거래금액의 0.0081% (가맹점거래지점)	
	면제대상 없음		면제대상	

○ 신용카드수탁취급수수료

부 문	항	목(세목)	편 성 기 준
신용카드	기타영업수익	신용카드수탁 취급수수료	· 카드사업 수익 - 2012년 연간이용액(추정)×2.26% ※ 2.26% : '11.6말 기준 이용액 대비 수수료수입 비율

## 다) 이자비용

□ 예수금이자: 2012년도 예금종별 평잔계획에 2011년도 예수금 평균금리를 적용하여 계상

□ 차입금이자: 2012년도 차입금과목별 연간 평잔 계획에 과목별 차입금리를 적용하여 계상

○ 상호금융특별회계 차입금 신규이자율

구 분	운전차입금	일시차입금	예치금담보차입금	축산자금차입금
차입금리	5.30%	○ 31일 미만 : 5.10% ○ 31일 초과 : 5.60%	예치금리+1.00%	차입금 종류별 기존 금리

□ 기타이자비용(신용카드수탁자금이자)

○ 신용카드 자금부담이자 : 2012년 연간이용액(추정) × 0.23%

※ 0.23% : '11. 6말 기준 이용액 대비 자금이자 비율

## 라) 수수료비용

○ 지급수수료(상호금융 관련)

부문별	항	목(세목)	편성기준
신용 (여신)	지급 수수료	대출모집수수료 (172114 172115)	○ 대출모집인에 대한 모집수수료 지급 - 대출모집인 대출금액의 0.4%이내 - 부동산중개업소 대출금액의 0.2%이내
		기타지급수수료 (172111)	○ 여신우대포인트 포상금 지급
		임대차조사 비용 (172112)	○ 외부전문기관에 임대차조사업무 위임 시
		MCI보험료 (172121)	○ MCI대출 시 서울보증보험(주)에 납입 보험료 - MCI보험 가입금액의 연 0.4%(투기지역 아파트), 연 0.6%(단독, 다세대, 연립), 연 0.8%(투기지역 제외 아파트)
		여신관련수수료 (외부감정평가 수수료 172132)	○ 여신관련 담보물의 외부감정평가수수료를 처리
		여신관련수수료 (근저당권설정비 172133)	○ 근저당권설정비용 중 법무사 등 보수 해당액을 처리
		여신관련수수료 (근저당권설정 공과금 172134)	○ 근저당권설정비용 중 관련 제세공과금 해당액을 처리 - 등록세 : 설정금액의 2/1,000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
		여신관련수수료 (지상권설정비 172135)	○ 지상권설정비용 중 법무사 등 보수 해당액을 처리
여신관련수수료 (지상권설정공과금 172136)	○ 지상권설정비용 중 관련 제세공과금 해당액을 처리 - 등록세 : 설정금액의 2/1,000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		
신용 (외환)	외환지급 수수료	외환지급수수료 <외화현송> (172124)	○ 외화현수송 수수료 - 미달러 기준 1불당 매매기준율*0.13%

## 마) 기타영업비용

○ 예금보험료기금 출연금

부문별	항	목(세목)	편성기준
신용	기금출연금	예금보험료	○ 부보대상 예적금 평잔 × 0.18% - 신용사업 실시 농·축협

○ 신용보증보험료 출연금

부 문	항	목(세목)	편 성 기 준
신 용	기금출연금	지역신보 중앙회 출연금	○ 서민대출(햇살론) 출연금 - 농·축협 출연대상 대출금 평잔 × 0.037% ※ 출연대상대출 : 일반대출금, 자립(종합)통장대출금, 상호 금융중기대출금
		기타출연금	○ 지역신용보증보험료 출연금 - 출연기준 : 지역신용보증서 담보대출 취급 농·축협의 경우 기중평잔 0.4%(일반), 0.1%(특례보증) 책정

○ 농신보기금 출연금

부 문	항	목(세목)	편 성 기 준
신 용	기금출연금	농신보기금 출연금	○ 대상금융기관 : 신용사업을 실시하는 농·축협 - 출연기준대출금 : 일반대출금과 자립예탁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 출연금산출 : 월중 평균잔액×0.027%×(대상월일수/365) - 출연시기 : 매월분의 출연금을 다음달 말일까지 출연

○ 대손보전기금 출연금

부 문	항	목(세목)	편 성 기 준
신 용	기금출연금	대손보전 기금출연금	○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농축산경영자금의 손실보전료에 연계한 손실보전료(금융기관분) - ('07년~'11년까지 5년동안 한시적으로 출연함. '11년도 4 분기 2회차 출연금을 '12년 2월에 출연하므로 '12년 2 월분('11년 4분기 2회차분)만 예산에 편성 - 농·축협 총출연금 : '11년12월~'12년1월말 농축산경영자금 총지원액 × 출연율 0.5% × 농·축협 분담비율 70% - 농·축협별 출연기준 : 농·축협 총출연금×농·축협별 대손 보전대상대출금 잔액비율(농·축협별 대손보전대상대출금 잔액÷총 대손보전대상대출금잔액) ※ '12년 2월 농·축협 총출연금 추정 [1,200억원(미확정)×0. 5%× 70%=420백만원]

부 문	항	목(세목)	편 성 기 준
신 용	기금출연금	대손보전 기금출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차보전 특별출연금(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 개정에 따른 이차보전 증액분의 25%해당액 출연)</li> <li>- 농·축협별 출연기준 : 이차보전 요보전평잔(연체평잔 제외)</li> <li>× 신규 기준금리차(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의 담보대출금 가중평균금리-전체대출금 가중평균금리. 다만, 신용대출 평균금리 이상의 금리로 대출된 대출금 제외) × 25%</li> <li>※ '12년 농·축협별 출연액 추정</li> <li>[12년말 농·축협별 이차보전 요보전평잔×(신기준 금리-구기준금리)×25%]</li> <li>* '11년 총출연금은 3,256,백만원임</li> </ul>

- 산출 예시(잔액기준임)

- ◇ A농협 대손보전대상대출금 잔액 : 10,224,046,112원
- ◇ 연도말 농·축협 총대손보전대상대출금 : 5,428,962,574,459
- ◇ 점유율 : 0.18832%[(10,224,046,112원 ÷ 5,428,962,574,459원)×100]
  - 점유율은 소수점 여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 납입금액 : 1,977,360원 = 1,050,000,000원(분기별 농·축협 총 분담액) × 0.18832%(점유율)
  - 납입금액은 원 미만에서 반올림함

○ 신용카드수탁취급비용

부 문	항	목(세목)	편 성 기 준
신용카드	기타 영업비용	신용카드수탁 취급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씨카드사 업무대행 및 NH카드지급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2년 연간이용액(추정) × 0.69%(통합)</li> <li>※ 0.69% : '11.6말 기준 이용액 대비 대행 및 지급수수료 지급 비율</li> </ul> </li> <li>○ 회원모집권유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2년 신용판매이용액(추정) × 0.043%</li> <li>※ 0.043% : '11.6말 기준 신용판매 이용액대비 권유비 지급률(자체 기준 적용 시 해당 기준 적용)</li> </ul> </li> <li>○ 카드 원가정산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2년 연간이용액(추정) × 0.08%</li> <li>※ 0.08% : '11.6말 기준 이용액 대비 추정원가 정산 비율</li> </ul> </li> <li>○ 기타취급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2년 연간이용액(추정) × 0.008%</li> <li>※ 0.008% : '11.6말 기준 이용액 대비 기타취급비용 비율</li> </ul> </li> </ul>



## 바) 기타

### □ 신용대손충당금

- 당해 회계연도 결산 또는 가결산 기준일 현재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에 의한 요적립액의 100% 상당한 금액 적립
- 요 적립액 산식 :  $(\text{신용대손충당금잔액} / \text{신용대손충당금 요적립잔액}) \times 100\%$
- 신용대손충당금 요 적립잔액  
: 당해 회계연도 결산 또는 가결산 기준일 현재 대손충당금설정대상 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정상 분류채권의 0.5~0.99%, 요주의채권의 1~19.99%, 고정채권의 20~74.99%, 회수의문채권의 75~99.99%, 추정손실분류채권의 100%를 합계한 금액
- 신용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 대출채권(정부 또는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으로부터 대손보전이 보장되는 대출금은 제외), 여신성 가지급금, (신용)가지급금, 신용카드채권 및 미수금
- 건전성 분류자료 및 충당금 기표 등은 상호금융여신부의 지도기준 참조

### □ 신용카드포인트 충당금전입(기타충당금전입액)

- 신용카드포인트회원적립금의 전입  
- [11년말 포인트 잔액(추정) × 86.88%(추정)] - '10년말 포인트 충당금 적립액(추정)  
※ 86.88% : '11년 6월말 기준 포인트 경험 사용률

## 2) 경 제 사 업

### 가) 매출액

#### □ 2012년 사업부문별, 품목별 취급계획에 의거 과거 매입가, 최근 매출액 증감 추이 등을 감안하여 책정

- 비 료  
- 매출이익 : 2011년 비종별 매출이익 수준. 단, 유기질(퇴비)는 매출원가의 6% 이내
- 농 약  
- 매출이익 : 매출원가 × 마진율(농협 자율책정)
- 농기계  
- 매출이익 : 매출원가 × 마진율(농협 자율책정)
- 유 류  
- 매출이익 : 매출원가 × 마진율(농협 자율책정)  
- 매입가격, 장려금, 경쟁 주유소 판매가격 등 참고

- 시설원예 자재
  - 매출이익 : 매출원가 × 마진율(농협 자율책정)
- 마트상품매출액
  - 2012년 마트 매출 물량지도기준인 10.0% 성장률과 국내경기 및 소매유통 전망 등을 감안하여 사무소별 여건에 맞게 자체편성
  - 국내 GDP 성장률 : '09(0.2%), '10(6.2), '11(4.3 예상), '12(4.6 예상)
  - 소비자물가상승률 : '09(2.8%), '10(2.9), '11(4.0 예상), '12(3.4 예상)
  - ※ 매출원가 : 2011년 상반기 하나로마트 평균 매출원가율을 감안하여 사무소별 여건에 맞게 자율 편성('11년 상반기 매출원가율 평균 : 생활물자 87.1%, 농산물 85.4%)
- 생장물매출액 : 취급수수료와 생축처분수익, 부산물 처분수익 등을 계상
- 창고매출액
  - 입출고료(양곡) : 수매입고물량(자체매입곡 제외), 공매출고물량을 대상으로 산출
    - 산출공식 : 입출고물량(톤)×입출고율
    - ※ 입출고 요율표

항 목	요율(원)	비 고
입고료	3,344	수매장소 입고료는 수매장소의 보관 창고로 입고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수매장소와 수매양곡을 보관한 창고가 200M 이상의 거리에 위치할 경우는 일반 하역료 적용
출고료	3,344	
수매장소 입고료	11,795	

- 보관료(양곡) : 정부곡 대상 [(항) 창고매출액 (목)보관료<양곡>]
  - 산출공식 : 보관물량(톤)× 품목별·등급별 보관료 × 보관일수
- < 양곡 보관료 및 보관보험료 (부가세 미포함) >**

(단위:원/1일톤당)

구분	특 지					갑 지					을 지					야적	보관보험료
	특 급	1 급	2 급	3 급	등의	특 급	1 급	2 급	3 급	등의	특 급	1 급	2 급	3 급	등의		
쌀, 현미	195.6	183.5	154.6	137.2	120.4	173.1	162.7	139.2	121.2	106.2	157.5	147.8	126.3	110.2	96.1	77.1	0.34
벼	151.5	142.0	122.1	106.0	92.7	133.9	125.8	107.9	93.4	81.8	121.8	114.3	98.1	85.1	74.7	59.4	0.26
보리쌀 눌린 보리쌀 콩 옥수수 밀가루	156.1	147.1	125.8	109.2	96.3	138.1	129.9	111.1	96.9	84.7	125.8	117.8	100.9	88.0	77.0	61.5	0.26
겉보리 쌀보리 밀	113.5	106.6	91.1	79.5	69.6	100.5	94.1	80.7	69.9	61.3	91.4	85.3	73.1	63.7	55.6	44.3	0.18

- 주 1. 특지 : 특별시 및 광역시  
 2. 갑지 : 시지역, 주요 항구도시(장항)  
 3. 을지 : 상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 사업부문별 금리
  - 벼 매입자금 지원 : 정부자금(0~2%, 차등금리), 중앙회자금(무이자)

○ 이용매출액

- 농기구, 종축, 회관 등 이용시설에 대한 이용료 수입과 인삼검사이용료, 수삼센터 이용료 등의 수입액 계상
- 장례식장 및 장례지원단 운영에 따른 사용료, 서비스료, 용품매출액, 식대 등과 산소관리 사업 수입 등 계상

○ 기타 매출액

- 농지중개사업, 가축시장 운영, 가축개량사업, 위축사업 등에 따른 매매수수료, 인공수정시술료, 중개수수료 등 수익을 계상하되 과거 실적, 관내 사육동향 및 여건 등을 감안하여 책정
- 공공비축미곡매입 및 약정대행수수료 [(항) 기타매출액, (목)양곡수매수익<기타>]
  - 비 : 수매대금 × 0.3% × 90%
- 전작류수매수수료 [(항) 기타매출액, (목)양곡수매수익<해당세목>]
  - 수매대금(수매예상량×수매단가)×품목별 요율×배분율(90%)

품 목 별	요 율	품 목 별	요 율
보 리	2.7%	고 구 마	4.0%
맥 주 맥	3.6%	밀	2.7%
옥 수 수	3.0%	두 류	3.0%

- 정부보급종자 대행수수료 [(항) 기타매출액, (목) 양곡수매수익<기타>]
  - 공급대행 수수료 : 취급액×3%×배분율(90%)
  - 수매대행 수수료 : 취급액×1%×배분율(90%)
- 맥주보리종자 대행수수료 [(항) 기타매출액, (목) 양곡수매수익<기타>]
  - 공급대행 수수료 : 취급액×3%×배분율(90%)
  - 수매대행 수수료 : 취급액×3%×배분율(90%)
- 농기계은행수익 [(항) 기타매출액, (목) 농기계은행수익<임대료, 임작업료>]
  - 임대료 : 중고 [(취득금액×80%)/임대기간], 신규 [(취득금액×90%)/연차별 회수율]
  - 임작업료 : 농작업대행실적×작업종류별 임작업료

**나) 매출액 및 매출원가 차감**

○ 판매장려금(농약)

- 편성기준 : 매입액 평균의 5%수준(품 적자 또는 상품매출원가 차감계정 처리)
  - ※ 추가약정장려금 별도 반영

○ 공판장 판매장려금(기타 매출장려금)

- 편성기준 및 대상 : 공판장별 정한 판매장려금 지급률(공판장 운영 농·축협)
  - ※ 10년 판매장려금 평균 : 총 거래액의 1.09%

## 다) 수수료수익 (수탁사업수수료 포함)

- 비료수익(취급수수료)
  - 화학비료 예약구매 장려금 : 예약신청수량 80%이상 검수 농협 인수금액의 1~2%
  - 직접취급장려금 : 직접취급물량 × 포당 250원
  - 토양개량제(무상분) : 취급액의 4%
- 농기계수익(취급수수료, 수리비)
  - 취급수수료 : 중앙결제수수료(농기계 대리점 판매보고분)는 취급액의 0.6%
  - 수리비 : 농업인으로부터 받은 수리비,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사후봉사수수료 등
- 공판장 상장수수료 [(항) 수탁사업수수료, (목) 유통 <상장수수료> ]
  - 대상 농·축협 : 공판장 운영 농·축협
  - 편성기준 : 공판장별로 정한 상장수수료율('10년 공판장 평균 6.2%)  
※ 경매, 전자거래, 정가수의매매 등 거래방법에 따른 수수료 차등 적용
- 수탁사업수수료(자동차) : 차량출고금액×2.3%

## 라) 일반대손충당금

- 적립기준 비율 : 요 적립액(대손추산액)의 100분의 100
  - 산식 : 일반대손충당금잔액 ÷ 대손충당금요적립액 × 100
  - 대손충당금요적립액  
: 자산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정상분류채권의 0.5%, 요주의분류채권의 1%, 고정분류채권의 20%, 회수의문분류채권의 75%, 추정손실분류채권의 100%해당액의 합계액
- 적립대상 : 외상매출금, 수탁사업미수금, 선급금, 미수금, 가지급금, 단기대여금, 장기대여금, 장기미수금, 협동카드계정
  - 공제대출금 : 신용회계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적립기준에 준하여 요 적립액을 산출하여 일반대손충당금으로 계상

## 3) 보 험 사 업

### 가) 공제수익 및 비용

- 공제취급수수료 : 공제수익 및 공제비용 편성기준 참고
- 공제비용 : 집행기준은 공제업무방법서 제8편 참조
- 공제대출금 운용평잔 및 공제대출금리
  - 향후 시행되는 지도문서 참조

## 나) 기 타

- 공제비용 중 기타공제비용은 공제수입수수료 실적에 따라 증감하는 비례성 예산이므로 공제수입수수료 실적이 사업계획 물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공제비용 집행금액도 수립예산을 초과할 수 있음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에 명시
  - 2012년에는 농업인안전공제 요율 인상 예정
    -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므로 조합원 환원사업으로 지원하는 농·축협은 수지예산 수립 시 감안
- ※ 요율 인상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확정시 별도 문서 시행

### < 공제수익 및 공제비용 편성기준 >

부문별	항	목	편성기준																					
공 제 수 익	대출금이자	약관대출 일반대출	○ 공제대출은 향후 시행되는 지도문서 참조 ※ 소관부서 : 보험자산운용부(보험여신금융팀)																					
	공제수수료 수익	생명공제 손해공제	○ 보험료 계획 물량×수수료율 < 수수료율 예시 >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auto;"> <thead> <tr> <th colspan="2">구 분</th> <th colspan="2">수수료율 예시</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생명</td> <td rowspan="2">보장성</td> <td>신 규</td> <td>27.90%</td> </tr> <tr> <td>보 전</td> <td>10.93%</td> </tr> <tr> <td rowspan="2"></td> <td rowspan="2">저축성</td> <td>신 규</td> <td>6.13%</td> </tr> <tr> <td>보 전</td> <td>1.38%</td> </tr> <tr> <td colspan="2" rowspan="2">손해</td> <td>신 규</td> <td>39.27%</td> </tr> <tr> <td>보 전</td> <td>7.95%</td> </tr> </tbody> </table> 주) 상기 예시는 '11. 6월기준 전체 농·축협 평균수수료율인 바 참고자료로만 활용 각 농·축협별 적용 수수료율은 신공제시스템([8101] 공제사업추진실적표) 화면에서 조회한 후 기타사항을 반영하여 자체 책정	구 분		수수료율 예시		생명	보장성	신 규	27.90%	보 전	10.93%		저축성	신 규	6.13%	보 전	1.38%	손해		신 규	39.27%	보 전
구 분		수수료율 예시																						
생명	보장성	신 규	27.90%																					
		보 전	10.93%																					
	저축성	신 규	6.13%																					
		보 전	1.38%																					
손해		신 규	39.27%																					
		보 전	7.95%																					
공 제 비 용	공제 차입금이자	일반대출 약관대출	○ 공제대출은 향후 시행되는 지도문서 참조 ※ 소관부서 : 보험자산운용부(보험여신금융팀)																					
	기타 공제비용	공제제비 (공제권유비) (기타제비)	※ 공제비용 집행기준은 공제업무방법 참조																					
	업무추진비																							

- 공제장표 단가
  - 웹 아리오피스 초기화면/농민신문/장표/공제류 참조

### 3. 판매비와관리비

#### 가. 기본원칙

- 해당 농·축협의 관련 규약 및 규정에 근거하여 2011년말의 예상 집행실적, 경영여건과 손익현황, 2012년도 예상 매출총이익 증가율 및 예상손익, 인력수급 현황, 경영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여 실정에 맞게 적정수준으로 책정
- 최근 경영여건을 고려하고 성과에 비례한 예산편성으로 긴축 운용기조를 유지
  - Zero-Base 예산 편성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한 감축의지 반영
  - 해당 비목의 성격을 감안하여 원가성이 있는 비용인 경우 해당 부문의 원가로 편성하고 순수 판매비와관리비 성격의 비용만 편성
    - 고정투자성 예산은 반드시 자본예산으로 반영
  - 비례성예산은 매출총이익 증가율 범위내에서 편성하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비례성예산은 축소 또는 폐지
  - 수익과 비례한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비용 효율성 제고
    - 각종 예산의 합리적 배분으로 사업추진 동기 부여
  - 관리성예산은 경상경비의 억제차원에서 단가, 요율 등 제반관련 요소를 세밀히 분석하여 적정금액만을 반영
- 경비(판매경비 포함)는 업무량 증가, 공공요금 및 물가인상 등을 감안하여 편성하되 최대한 절약
  - 고정비성 예산(인건비성 경비, 임차료, 공제료, 감가상각비, 당직비, 용역비 등)은 실소요액 편성
  - 소모성 예산은 2011년 수준으로 편성
- 예산편성 시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기준, 직원급여기준, 농·축협 운영에 소요되는 활동경비 등의 지출예산에 대하여는 명확한 산출근거에 의거하여 편성
  -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는 농·축협의 경영상태 및 지급능력과 책임경영에 상응하는 적정 수준이 지급될 수 있도록 책정
    - 특히, 복리후생비(피복비, 체력단련비 등)는 관내 농·축협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에서 반영(비정상적 과다 책정 자제)
  - 성과급여(상여금)는 '성과급여업무방법'에 의한 지급률과 종합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상여금 지급률 등을 감안하여 책정
- 「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조합(부실조합 또는 부실 우려조합)은 경영개선 및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조합구조개선및경영관리규정'에서 정한 임원의 보수 및 상여금 집행기준 등을 감안하여 책정

## 나. 세부기준

### 1) 인건비

#### □ 보수

- 임원(조합장,이사,감사)의 보수와 실비는 농·축협이 '임원보수및실비변상규약'에 의거 편성
  - 비상임이·감사가 이사회 개최 및 감사업무이외의 대의원회 및 각종 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참석할 경우 '임원보수및실비변상규약'에 의한 실비기준을 적용하지 말고, 임원 이외의 참석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여비, 식비 등 실 소요액만을 별도 편성
  - 비상임이·감사 실비는 전년도 이사회개최 및 감사실시 횟수, 감사실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으로 편성하되, 불필요한 감사실시 등에 따른 과도한 실비지급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산관리 실시
- 상임임원의 성과연봉 등 성과보수는 농축협의 지급능력 및 책임경영차원에서 '성과급여업무방법' 및 '종합경영평가' 결과 등을 감안하여 농축협의 지급능력 및 책임경영 차원에서 편성
- 비상임조합장의 퇴임공로금
  - 비상임조합장의 퇴임공로금도 일반 직원의 퇴직급여금과 같이 소요액을 매년 적립하여야 함. 따라서, 임기만료 여부에 관계없이 2012년말에 퇴임하는 것으로 예상하여 농·축협의 '임원보수및실비변상규약'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 퇴임공로금 해당액을 예산으로 책정
  - 특히, 2012년도에 조합장 임기가 만료되는 농·축협은 조합장 퇴임공로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 책정
- 비상임 이·감사 교육 실비
  - 비상임 이·감사 교육(이·감사 기본교육과정에 한함) 실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농·축협은 해당교육이 직무능력 향상인 측면을 고려하여 이사회 실비의 1/2수준에서 책정
  - ※ 단,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 규약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해당 농·축협 총회(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규약을 개정하여야함에 유의

#### □ 급여

- 2011년도 사업계획 상 T/O와 2011년 9월말 기준 현원, 2012년도 정원조정 등 인력수급 계획 및 호봉승급 등을 감안하여 직원급여 관련 규정과 2011년도 집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편성
- 정기성과급여, 변동성과급여 등 성과성 급여는 '성과급여업무방법' 및 '종합경영평가' 결과 등을 감안하여 농·축협의 지급능력 및 책임경영 차원에서 편성
- 특별성과급의 경우에는 경영성과 또는 업무실적이 우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 의결을 얻어 지급(100% 이내)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예산 편성

## □ 제수당(성과급여 포함)

- 직원의 급여 예산편성 기준에 준하여 책정
- 시간외근무수당은 2011년도 예산 편성금액 및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편성하되, 경영여건과 지급능력에 상응한 수준으로 편성
  - 3급 이상 책임자에 대하여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반영하지 않되, 하나로마트, 공판장, 판매장, 농기구SC, 가공공장 등 경제사업장 등에서 농·축협 운영상 불가피하게 본인이 직접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용
- 병충해 상담역 운영 농협은 중앙회 지원액(2백만원)을 감안하여 자부담액을 반영하고, 농약 공동살포조직단 운영 농협은 인원수×1백만원×4개월 해당액 반영
- 위험수당 등 특수업무 수행에 따른 별도 수당을 직책급에 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이 증가하게 되므로 연간 지급액을 사전 예상하여 적절한 수준의 금액으로 책정
  - 농약위해수당 : 위해작업에 따른 업무수당 반영(자율 책정)
  - 농기계은행 운영지도사 활동수당(중앙회 지원): 80천원×12월
  - 농기계서비스센터 위험수당 : 자율 책정
  - 축산인증컨설팅트 수당(제수당<기타>) : 자율 책정(보유 축협에 한함)
- 복리후생비 책정 시 임금성 복리후생비 감축
- 상여금, 보건단련비, 성과급 등 성과급여는 농·축협의 지급능력 및 책임경영차원에서 편성
  - 인센티브상여금은 사무소별, 직원별 업적과 능력 등을 차체실정에 맞게 평가하여 차등지급 가능. 다만, 인센티브상여금을 차등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전체적으로는 기준 지급률 준수
  - 경제사업 관련 성과급, 시간외 수당, 판매장려금 등은 사업목표 달성,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 성수기 판매촉진 및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소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  
<예시> 농약관련 보직공모자 성과급(3개년 평균판매액의 0.5%+3개년 평균판매액 초과 해당액의 1%), 공판장장 보직공모자 성과급, 하나로마트 종사직원 성과급 등

## □ 임 금

- 비정규직원(계약직, 시간제업무보조원) 등에게 지급하는 임금 해당액을 편성
  - 단, 가공공장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은 해당 직접사업비에 반영
- 시간외근무(휴일근무 포함)등을 예상하여 적절한 임금책정
  - 특히 경제사업종사 직원의 경우 시간외근무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통상임금을 책정하여 사후 분쟁소지 사전 예방



- 시간제업무보조원 운용
  - 하나로마트 필요 인력 충원을 통해 다수업체 공동관측 활용에 따른 문제점 해소 및 하나로마트 자체 관측기능 강화
  - 하나로마트 점포유형이 **SSM, SM, SMS**인 경우

·SSM : 영업지원직(경제) 3명 이내  
 ·SM : 영업지원직(경제) 2명 이내  
 ·SMS : 영업지원직(경제) 2명 이내  
 ☞ "시간제업무보조원운용준칙"에 의한 인력 운용

- 하나로마트 점포유형이 **DS2, DS** 인 경우 : 필요인원 이내
- 소요예산 : 월**1,700**천원/명이내에서 기존 운영사례 등을 참고하여 결정  
 ※ 수령금액 기준이 아님을 유의

< 영업지원직 분장업무(예시) >

·본부 POG에 의한 하나로마트 취급상품 IN-OUT  
 ·하나로마트 POG상품 재고관리 및 인스토어 머천다이징  
 ·하나로마트 POG상품 적정 발주 및 (보충)진열  
 ·하나로마트 매출 확대를 위해 필요한 기타업무

## 2) 퇴직급여

- 퇴직급여충당금 적립기준 비율 : 총 소요액의 100분의 100
- 산식 : 퇴직급여충당금잔액 ÷ 전 직원 일시퇴직시 소요퇴직금 ×100
- 2012년도 말 기준 전 임직원(비정규직 직원도 포함)이 일시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필요한 퇴직급여충당금 소요액에서 2011년도 말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및 2012년도 중 퇴직자의 예상 퇴직금 차감 후 부족한 금액을 퇴직급여금 예산으로 책정

<전 임직원 일시 퇴직 시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소요액 산출>

▶ 2012년 요적립액 = 2012년말 전임직원 일시퇴직 시 예상 소요 퇴직금 - (2011년말 충당금 잔액 - 2012년도중 지급이 예상되는 퇴직금)

- 퇴직연금을 가입한 경우에도 확정급여형인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한 경우 가입직원에 대하여 가입기간에는 퇴직급여 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함
- 특별퇴직급여의 경우 판매비와관리비(항 : 특별퇴직급여)로 반드시 소요액을 사전에 예상하여 예산 책정
  - 당해년도 소요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예산조정절차 이행  
 ※ 특별퇴직급여(명예퇴직금)은 기획규정 제 26조에 따른 법정의무비용인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산조정 절차 없이 초과집행 할 수 없음

### 3) 세금과공과

부문별	항	목(세목)	편성기준																											
신용	세금과공과	분담금 (금융결제원) (1754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결제원 지로회비 분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산기준 : 매분기별 지로 처리분과 정보화 처리분의 사무소별 건수, 금액에 비례한 분담금</li> <li>- 예상 비용 추정 : 직전 4차례 정산금액을 고려하여 추정 편성</li> </ul> </li> <li>○ 금융결제원 금융공동망 회비 분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산기준 : 매분기별 CD공동망, 타행환 공동망, 전자금융 공동망 이용 실적에 비례한 사무소별 분담금</li> <li>- 직전 4차례 정산금액을 고려하여 추정 편성</li> </ul> </li> <li>○ 공인인증업무 회비분담금(분기별 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담액 : 금융결제원의 분담액 ÷ 농축협 고객별 사용량</li> <li>- 최근 4차례 정산 자료를 참조하여 예상 비용 추정</li> </ul>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 colspan="2">관련 문서</th> <th>시행일</th> </tr> </thead> <tbody> <tr> <td>상수</td> <td>51102-812</td> <td>'10. 8. 9</td> </tr> <tr> <td>상수</td> <td>51102-1158</td> <td>'10.11. 9</td> </tr> <tr> <td>상수</td> <td>51102-151</td> <td>'11. 2. 18</td> </tr> <tr> <td>상호(수신)</td> <td>51102-571</td> <td>'11. 5. 17</td> </tr> </tbody> </table> </li> <li>○ OTP 통합인증센터 분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담액 : 금융보안연구원 분담액/농·축협 OTP 가입고객수 &lt; 참고 : 연도별 분담액 &gt;</li> </ul>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구분</th> <th>'07년</th> <th>'08년</th> <th>'09년</th> <th>'10년</th> <th>'11년</th> </tr> </thead> <tbody> <tr> <td>금액(백만원)</td> <td>108</td> <td>16</td> <td>174</td> <td>111</td> <td>125</td> </tr> </tbody> </table> </li> <li>○ 지급결제중계업무(PG) 분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도 중 전자상거래 수수료 수입예상액의 20%</li> </ul> </li> <li>○ 신용회복지원위원회 분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담기준 : 1년간 신용회복지원위원회로부터 채무이행 변제금을 수령한 이행실적(건수, 금액)에 비례하여 산정</li> <li>- 전년도 분담금을 기준으로 해당 농·축협 건수, 금액을 추정하여 증가비율 만큼 반영</li> </ul> </li> <li>○ 신용정보 이용료 분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년 분담액의 약 10% 증가 예상</li> <li>- 분담 기준 : 전년도 대출잔액 점유비</li> </ul> </li> </ul>	관련 문서		시행일	상수	51102-812	'10. 8. 9	상수	51102-1158	'10.11. 9	상수	51102-151	'11. 2. 18	상호(수신)	51102-571	'11. 5. 17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금액(백만원)	108	16	174	111	125
		관련 문서		시행일																										
상수	51102-812	'10. 8. 9																												
상수	51102-1158	'10.11. 9																												
상수	51102-151	'11. 2. 18																												
상호(수신)	51102-571	'11. 5. 17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금액(백만원)	108	16	174	111	125																									
		분담금 <기타> (1754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금우대 예탁금 공동망운용 분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0백만원×좌수점유비+ 한도점유비/2</li> <li>※ 좌수·한도 점유비는 2011년말 상호금융 세금우대저축전체 좌수·한도 대비 해당 농·축협 좌수·한도 비율을 추정하여 산출</li> <li>※ 세금우대저축 : 세금우대예탁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근로자우대저축, 비과세가계저축, 생계형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li> </ul> </li> </ul>																											

#### 4) 전산비용(전산사용료)

부문별	항	목(세목)	편 성 기 준	비고																																	
신 용	전산비용	전산 사용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산기기별 유지보수 비용 (단위 : 원)</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월 단가</th> <th>연간 보수료</th> </tr> </thead> <tbody> <tr> <td>통합단말기</td> <td>14,280</td> <td>171,360</td> </tr> <tr> <td>책임자단말기</td> <td>4,880</td> <td>58,560</td> </tr> <tr> <td>ATM(환류식)</td> <td>94,680</td> <td>1,136,160</td> </tr> <tr> <td>겸용CD기</td> <td>35,600</td> <td>427,200</td> </tr> <tr> <td>정보인식기(흑백)</td> <td>30,000</td> <td>360,000</td> </tr> <tr> <td>정보인식기(컬러)</td> <td>39,380</td> <td>472,560</td> </tr> <tr> <td>공과금수납기</td> <td>33,000</td> <td>396,000</td> </tr> <tr> <td>카드발급기</td> <td>2,090</td> <td>25,080</td> </tr> <tr> <td>카드복합발급기</td> <td>4,170</td> <td>50,040</td> </tr> <tr> <td>핀패드</td> <td>1,650</td> <td>19,800</td> </tr> </tbody> </table> <p>주) 전산기기별 1대당 유지보수 비용임</p>	구 분	월 단가	연간 보수료	통합단말기	14,280	171,360	책임자단말기	4,880	58,560	ATM(환류식)	94,680	1,136,160	겸용CD기	35,600	427,200	정보인식기(흑백)	30,000	360,000	정보인식기(컬러)	39,380	472,560	공과금수납기	33,000	396,000	카드발급기	2,090	25,080	카드복합발급기	4,170	50,040	핀패드	1,650	19,800	전체
			구 분	월 단가	연간 보수료																																
			통합단말기	14,280	171,360																																
			책임자단말기	4,880	58,560																																
ATM(환류식)	94,680	1,136,160																																			
겸용CD기	35,600	427,200																																			
정보인식기(흑백)	30,000	360,000																																			
정보인식기(컬러)	39,380	472,560																																			
공과금수납기	33,000	396,000																																			
카드발급기	2,090	25,080																																			
카드복합발급기	4,170	50,040																																			
핀패드	1,650	19,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신회선 사용료</li> <li>- 용도 : 영업점 온라인 운영 회선(연간 기준)</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금액(천원)</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영업점회선</td> <td>15,000</td> <td rowspan="2">1개소당 발생 비용</td> </tr> <tr> <td>점외 회선</td> <td>5,000</td> </tr> </tbody> </table> <p>※ 통신회선 유지보수료 포함 금액</p>	구 분	금액(천원)	비 고	영업점회선	15,000	1개소당 발생 비용	점외 회선	5,000	전체																									
구 분	금액(천원)	비 고																																			
영업점회선	15,000	1개소당 발생 비용																																			
점외 회선	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신장비 유지보수료</li> <li>- 용도 : 영업점 온라인 운영 장비(연간 기준)</li> <li>- 예상 금액 : 400천원(1개 사무소당)</li> </ul>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VPN망) 유지보수료</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유지보수료 (천원)</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본소</td> <td>125</td> <td rowspan="2">VPN장비 당 발생비용</td> </tr> <tr> <td>지소 및 경제사업장</td> <td>75</td> </tr> </tbody> </table>	구 분	유지보수료 (천원)	비고	본소	125	VPN장비 당 발생비용	지소 및 경제사업장	75	인터넷 (VPN망) 설치 농·축협																									
구 분	유지보수료 (천원)	비고																																			
본소	125	VPN장비 당 발생비용																																			
지소 및 경제사업장	75																																				

부문별	항	목(세목)	편성기준	비고												
신용	전산비용	전산 사용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터넷(VPN망) 회선비 (단위:천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회선비 (/월)</th> <th>회선비 (/년)</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신용 사무소</td> <td>132</td> <td>1,584</td> <td rowspan="2">VPN장비 당 발생비용</td> </tr> <tr> <td>경제 사업장</td> <td>66</td> <td>792</td> </tr> </tbody> </table> </li> </ul> <p>※ 신규설치시 110천원 설치비 발생</p>	구분	회선비 (/월)	회선비 (/년)	비고	신용 사무소	132	1,584	VPN장비 당 발생비용	경제 사업장	66	792	인터넷 (VPN망) 설치 농·축협	
	구분	회선비 (/월)	회선비 (/년)	비고												
	신용 사무소	132	1,584	VPN장비 당 발생비용												
경제 사업장	66	792														
사업관리비	경비 (수선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점외 365코너, 점외자동화기기 설치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신회선 설비 : 200천원</li> </ul> </li> </ul>	희망 농·축협													
	경비	통신운반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용전화(인터넷전화) 유지보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통간 무료전화 및 인터넷전화 장비 보수료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년(年)간 비용</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보수료</td> <td>200천원 ~ 400천원</td> <td>절감금액 10%</td> </tr> </tbody> </table> </li> </ul> </li> </ul> <p>※ 전화 요금에 포함되어 청구되며, 통화 사용량에 따라 차등 부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선 사무소의 개별 전화번호 서비스 요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번호(대표 전화번호 + 내선번호) 체계에서 개인별 전화번호(직통 전화번호) 사용 사무소</li> <li>- 기본 요금은 월(月) 2천원 × 사용 번호 수량</li> <li>- 서비스요금[통화연결음(비즈링), 발신자 번호 표시 서비스 포함]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년(年)간 비용</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서비스</td> <td>80천원 ~ 360천원</td> <td>전화요금 통합청구</td> </tr> </tbody> </table> </li> <li>- 기존 노후화된 키폰주장치 사용시에는 최초 1회 키폰 제거 및 케이블 공사비용(300천원 ~ 400천원) 발생</li> </ul> </li> </ul>	구분	년(年)간 비용	비고	보수료	200천원 ~ 400천원	절감금액 10%	구분	년(年)간 비용	비고	서비스	80천원 ~ 360천원	전화요금 통합청구	전용전화 사용하는 전 사무소
구분	년(年)간 비용	비고														
보수료	200천원 ~ 400천원	절감금액 10%														
구분	년(年)간 비용	비고														
서비스	80천원 ~ 360천원	전화요금 통합청구														
				신설 신용 영업점 및 신청 영업점												

## 5) 판매경비

### □ 판매사업 경비

- 유통활성화사업 비용 [ (항) 판매사업경비 (목) 유통활성화사업 ]
  - 산지유통전문조직은 유통활성화사업자금(정부자금) 일시 운용수익 예상액을 감안하여 판매사업 경비 편성  
(예) 유통활성화사업자금×상호금융 3개월만기 예치금리(4.5%)- 유통활성화자금 차입금리 (1~3% 차등)×미운용일수/365
- 연합마케팅 사업비용[ (항) 판매사업경비 (목) 유통<광고선전비, 시장개척비 등> ]
  - 연합마케팅 홍보, 판매촉진, 기타 비용 반영 : '11년 연합마케팅 출하금액 × 0.7% 내외
- 수출촉진비용[ (항) 판매사업경비 (목) 유통<수출촉진비> ]
  - 품질향상 및 안전성관리 : 수출농가, 선별직원 등 교육, 지역여건을 감안, 자율편성
  - 시장개척(마케팅) : 신상품개발, 브랜드개발 및 해외박람회, 현지관측행사 등 지역여건을 감안, 자율편성
- 각종 회비 및 분담금(참여시)
  - 도 수출협의회, 수출연합 등(참여조직 기준에 따라 편성)
- 중앙회 군납수수료[ (항) 판매사업경비 (목) 군납 ] : 군납참여 농축협
  - 농산물 : 군납금액 × 0.3%, 김치 : 군납금액 × 2%, 고춧가루 : 군납금액 × 1.5%
- 공판장 출하·판매장려금[(항) 판매사업경비, (목) 유통<이용장려금>, (목) 기타매출장려금]
  - 편성기준 : 공판장별 정한 출하장려금 및 판매장려금 지급률(공판장 운영 농협)  
※ '10년 출하장려금 지급률 : 총 거래액의 0.35%, 판매장려금 지급률 : 총 거래금액의 1.09%  
※ 공판장 판매장려금은 기타매출장려금 계정에 반영
- 통합출하유치, 전송판매, 전자거래, 견본거래 관련 상하차비 [(항) 판매사업경비, (목) 유통 <조작비> ]
  - 대상 : 해당사업 시행 공판장
- 통합출하유치, 전송판매, 전자거래, 견본거래 관련 운송비 [(항) 판매사업경비, (목) 유통 <차량비> <용역비> ]
  - 대상 : 해당사업 시행 공판장
- 공판장 표준하역비 [(항) 판매사업경비, (목) 유통 <조작비> ]
  - ※ 출하자가 아닌 공판장이 부담할 하역비
- 농산물가격보전비[(항) 판매사업경비, (목) 유통 <기타경비> ]
  - 대상 : 공판장 운영 농협
  - 편성기준 : 공판장별 정한 농산물 가격보전금액
- 중도매인 복지지원[ (항) 판매사업경비, (목) 유통 <시장개척비> ]
  - 대상 : 공판장운영 농협
  - 편성기준 : 자율 편성(중도매인 건강진단, 공제가입 등)  
※ 담보강화를 위한 중도매인 신용보증 보험료지원은 "유통(공제료)"로 기표

## □ 구매사업 경비

### ○ 비료

- 보관료 : 화학비료 대농민판매 톤당 1,520원
- 화재공제료(풍수해특약 가입) : 연중 재고 최고액(추정)으로 계약금액 결정
- 토양개량제 살포비용 : 취급액의 2%
- 출고료, 배달료 : 농협 자율책정
- 기타 주문배달, 전수배 조작비 계상

### ○ 농약

- 화재공제료(풍수해특약 가입) : 연중 재고 최고액(추정)으로 계약금액 결정
- 시장개척비(판매촉진비) : 시판상과 동등한 경쟁력(서비스) 확보 (판촉홍보물 등)
- 기타경비(농약) : 농약(약해)사고 피해보상비(매출액의 1% 정도)

### ○ 농기계

- 농기계 판매권유비(포상비) : 농기계판매 담당직원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농기계 판매 마진의 10%이내에서 자율 결정
- 시장개척비(판매촉진비) : 대리점과 동등한 경쟁력(서비스) 확보를 감안하여 책정
- 사무소화재 및 풍수해 공제료 : 농협별 해당 공제료

### ○ 자동차

- 성과급(기타경비<기타>) : 차량 출고금액의 0.5%이내
- 이용장려금(기타경비<기타>) : 수탁사업수수료 이내 자율책정
- ※ 단, 성과급 및 이용장려금은 조합원용 차량에 한함

### ○ 유류

- 판매촉진비(판촉물 및 기타 서비스 제공, 기타경비<유류>)
- 유류 품질검사 용역비(품질검사에 따른 검사비 및 시료유류, 기타경비<유류>)
- ※ 품질검사 건당 200천원(1개 유종 기준)
- 화재공제 및 혼유사고 대비 등을 위한 손해배상책임공제(영업배상책임공제) 가입

## □ 마트사업 경비

### ○ 경제통합시스템 구축 제비용(용역비)

- 대상 : POS시스템 구축예정 농축협
- 반영금액(해당 점포기준임)
- \* 통합 POS 본점(POS 3대 이상) : 7~9백만원(지점 1개당 1백만원 추가 소요-소형점 기준)
- \* Web-POS 매장(소형점 기준) : 1백만원(중형점이상 투입일별 360천원 추가 소요)

### ○ POS시스템 유지보수료(용역비, 부가세 별도, 월 단위)

- 대상 : POS유지보수체결 마트 및 재고조사 희망마트
- 통합POS : 기본형 182천원, 중소형 300천원, 대형 450천원, 초대형 850천원(단말기 추가시 30천원 추가)
- ※ 서버 및 PDA장비는 별도 산정

- 웹POS : 콜(Call)형 250천원, 기본형 182천원, 확장형 212천원  
 ※ 물가상승률 및 거래처 단가상승으로 변동될 수 있음
- 수량 및 금액실사, 원장등록, 교육 실시(용역비)
  - 재고실사 및 등록 재고조사 용역비
  - 대상 : POS유지보수체결 마트 및 재고조사 희망 마트
  - 내용 : 단품별 재고용역비 (기본금액 : 232천원/일)
- 하나로마트 영업방송시스템 설치 및 유지보수료(용역비)
  - 영업방송 시스템 설치비 : 200천원
  - 유지보수료 : 480천원(월 40천원)
- 하나로마트 근무직원 근무복
  - 농축협별 경영여건에 맞게 자율적 편성
  - 근무복 공급금액 관련문서 참조 : 마트(점포) 28105-215, 2011.3.23 28105-598, 2011.6.29
- 판촉행사비용(광고선전비)
  - 행사비용 : 경영여건 및 마트 규모를 감안하여 자율 편성  
 (금액 산정시 개점기념행사에 대한 비용 편성)  
 ※ 행사비용 : 경품 및 사은품 구입비, 전단 및 현수막 제작, 배포비 등
  - POP 등 광고물
    - POP 용지 : 무색(90원/매) 칼라(160원/매) 포장지 : 120원/매, 쇼핑백 : 250원/매
- 기타 사업 추진관련 비용
  - 이용장려금 및 혼수품 판매권유비 : 실적 및 손익 감안하여 편성
  - 혼수센터 견학비 : 농축협별 사업계획에 의거 자율 편성
  - 하나로마트 직원 실무교육비 : 170천원/명(3박4일 과정), 120천원/명(2박3일 과정)
  - 기타비용 : 2011년 집행실적과 2012년 사업계획 물량을 감안하여 자율편성  
 (대외활동비, 차량비, 시장개척비, 용역비, 카드가맹점수수료 등)
- 무반품제도 운영에 따른 반품발생 처리 비용(공정거래위 관련)
  - 목적 : 공정거래법 준수( 벌칙조항 개정 강화 예정)
  - 반영금액 : 해당 점포별 2011년 반품 실적 금액을 기준으로 감축량을 감안하여 책정
- 선진 유통업체 해외연수 견학(사정상 국내 연수로 대체될 수 있음)
  - 목적 : 해외선진 유통업체 경영기법 습득 및 벤치마킹으로 하나로마트 사업 활성화 도모
  - 연수대상국 : 일본, 미국, 유럽 등
  - 기간 : 6~8일
  - 대상 : 하나로마트 선도조합협의회 조합장
  - 소요비용 : 일본(2,000천원), 미국(4,000천원), 유럽(4,000천원)

## □ 가공사업 경비

- 재료비, 노무비(인건비 및 퇴직급여금 포함), 제조경비 등 제품원가에 배분될 각종 비용은 반드시 일반관리성 비용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편성
  - 인건비, 퇴직급여금은 사업관리비 편성기준에 준하여 책정
- HACCP 지정 추진(용역비) : 컨설팅비 10~20백만원(대상 : HACCP 인증 추진공장)
- 전문기관 식품안전 점검(용역비) : 1~2백만원(대상 : 전체 가공공장)
- 정부 농업경영컨설팅 신청(용역비) : 2~3백만원(대상 : 컨설팅 신청농협)
- 제품개발, 시장조사 등 용역비용(용역비) : 건당 5~10백만원(대상 : 신제품 계획 공장)
- 농협식품 판촉 및 홍보(광고선전비) : TV, 신문, 전문지 등 광고, 판촉행사 추진 등

## □ 이용사업 경비

- 장례식장 및 장례지원단 운영 경비, 산소관리사업 경비 등 계상
  - 서비스, 용품, 음식 등 원가성 비용 포함

## □ 생장물사업 경비

- 원가에 처리되는 것을 제외하고 생축과 종축에 대한 사업관리, 제조작비 등 생장물제비, 용역비, 시장개척비 등으로 구분 계상

## □ 기타사업 경비

- 농기계은행사업(용역비, 수선비, 유류대, 보관료, 공제료, 보험료, 기타경비)
  - 운영자금 이자수익 범위 내에서 농·축협의 지원방침에 따라 결정

## 6) 경 비

### □ 여 비

- 2011년도 집행실적 및 2012년도 사무소 여건을 감안하여 현행 여비규정에 의거 편성하되, 중앙회 연수원 및 과정별 교육여비는 2011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실 소요액 기준으로 편성
- ※ 대의원의 대의원회 참석 및 분과위원의 분과위원회 참석 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여비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대의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개최와 관련되는 회의비 등으로 예산을 책정



- 해외연수 등에 따른 국외여비는 관련부서의 실시방침 및 일정 등을 참고하여 편성하고, 농·축협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해외연수는 건별 사업성을 신중히 검토한 후 편성하되 미 집행사업 및 단순 포상성 외유성격 사업은 폐지

## □ 급식비, 복리후생비, 당직비 등

- 아래의 7)부서별 편성기준 상의 내용을 참조

## □ 광고선전비

- 고객사은품, 종합안내장, 창구서비스용품, 가계부 등은 2011년 집행비용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편성
- 광고선전비 등 명절에 우수고객 관리를 위하여 주요거래처 등에게 상품권을 접대용도로 지출하는 행위 지양(자제)
  - 특정인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상품권 등을 증여하는 것은 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고, 그 지출관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대표자 등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개인 및 법인에게 과세될 수 있으며, 또한 횡령 등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지출관계가 불명확한 다량의 상품권 접대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업무추진비

- 각종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비, 교제비, 사례금 등은 자체 수지를 감안하여 접대비성 예산 한도 범위 내에서 일반과 대외업무추진비로 구분하여 책정(제수당 성격이 아니라 사업추진비용임)
  - 일반업무추진비 :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특정한 고객 등에게 지출하는 추진비용
  - 대외업무추진비 :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한 외부기관(외부인)과의 협의 등 대외활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 회의비

- 회의장소는 농·축협(자체) 시설 이용을 원칙으로 편성
- 운영평가자문회의제도 운영 및 그에 따른 예산책정
  - 대상 : 운영평가자문회의 기 구성 및 운영 농·축협, 2012년 신규 운영계획 농·축협
  - 책정규모 : 회의에 필요한 경비 및 출석위원에 대한 수당(교통비 포함) 등을 감안하여 편성
- 대의원의 대의원회 참석 및 분과위원의 분과위원회 참석 시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대의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등 회의 개최에 관련되는 예산을 책정
  - 회의 참석에 따른 여비는 실 소요액 기준으로 자율 책정

□ 교육훈련비

- 교육훈련비는 고용보험 지정금액인 과정별 교육비 단가와 예상 교육인원을 적용하여 편성
  - 외부교육은 자체수지를 감안하여 자율 책정
- 경영관리 위탁교육비 편성 : 자율 반영
  - 금융환경 변화와 사업 규모 및 영역이 다양하여 자체 경영컨설팅 전문인력 양성
- ※ 생산성본부(www.kpc.or.kr)의 위탁교육 기간 및 비용 등을 참조하여 편성하되 교육과정 상 현지(서울)에서 받아야 하는 과정이 있으므로 출퇴근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

□ 용역비

- 외부회계감사 수감 관련 예산편성 : 농·축협 자율 반영
  - 대상 : 2012회계연도 외부회계감사 수감 대상 농·축협
  - ※ '09. 1. 1~'09.12.31중 조합장의 임기가 개시된 농·축협으로 임기개시일 직전 회계년도('08년)말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농·축협
  - 편성대상 : 감사수수료 및 부대비용(출장비, 인쇄비 등)등 일괄 편성
- \* 총보수 중 계약금(계약연도에 중도금 지급 약정시 중도금 포함)은 계약 시 지급(2011년)하고 잔금은 감사보고서 제출기일에 지급(2012년)
- \* 2012년 수감 농·축협의 경우 계약잔금 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
  - 편성방법 : '11년 수감 농·축협, 유사업무기관 사례 등을 감안하여 자율책정
- ※ 감사보수는 일반적으로 자산규모, 사업형태, 영업장 수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보수 수준은 회계법인의 보수산정체계, 농·축협별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음

< 감사보수 추정 >

자 산 규 모	감사보수(백만원)	자 산 규 모	감사보수(백만원)
500억~1,000억	8 - 15	5,000억~8,000억	20 - 40
1,000억~3,000억	10 - 20	8,000억~1조	-
3,000억~5,000억	15 - 30		

- 유형자산 재평가 관련 예산 편성 : 자율 반영
  - 대상 : 2012년 유형자산 재평가 실시 예정 농·축협
  - 편성대상 : 유형자산 재평가 시 공정가액 산출을 위해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할 경우 감정평가수수료를 용역비에 반영
- ※ 감정평가수수료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액을 기준하여 산정한 평가수수료와 실비(물건조사비, 교부발급비, 기타 실비 등)의 합계액이므로 평가가액 수수료율체계 등을 참조하여 반영

○ 경영혁신 및 경영개선을 위한 경영컨설팅 예산편성

- 대상 : 2012년 경영컨설팅 희망 농·축협

- 편성대상 : 경영문자서비스(멤버십) 수수료 및 경영컨설팅 비용

\* 경영문자서비스(멤버십) 비용(연회비) : 도시형 5백만원(연간), 농촌형 4백만원(연간)

\* 경영컨설팅 비용 : 컨설팅 주제, 내용, 기간 및 연구인력에 따라 차등 적용

용역기간	비 용	비 고
2개월	30~40백만원	○ 용역건당 5~6명 연구인력 투입 ○ 부가가치세 포함
3개월	50~80백만원	
4개월	70~100백만원	

주) 농협경제연구소 컨설팅 비용 추정임

□ 차량비

- 업무용차량에 대한 유류대, 잡유대, 수리비, 부속품대, 차량 소모품대, 검사료, 세차료, 주차료 및 유료도로 통행료 등의 실소요액 편성
- 조합장 등 상임임원의 개인차량을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유류대, 수리비, 보험료, 세금 등을 고려한 금액을 자가운전보조비 명목으로 편성
  - 조합장(상임임원) 개인차량의 업무용 사용에 따른 빈도, 이용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금액을 산출하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에 산출근거를 반드시 명기
  - 또한, 자가운전보조비를 지급하는 경우 매월 기타소득으로 급여시스템에 등록
  - ※ 자가운전보조비는 월 200천원까지 비과세

□ 임차료

- 토지·건물 임차료, 임차건물 관리비, 차량 렌트비 등의 실소요액 편성
- 업무용 승용차는 렌트로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 경우 렌트비 실소요액 계상
- ※ 업무용 승용차 렌트운용에 따른 장점 : 붙임

□ 기 타

- 통신운반비,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수선비, 수도광열비 등 기타 경비는 <부표1>의 수지에 산단가표를 참조하여 편성

※ 2012년 조합장 선거 등 임원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의비, 도서인쇄비, 광고선전비 등에 실 소요액을 추정하여 편성

○ TMSF 현장교육 관련 비용 편성(농축협 자율결정)

교육대상 직원	○ 회의비 : 참석직원 기준 1인당 3만원 ○ 야식비 : 참석직원 기준 1인당 1일1식 5천원
교육수료 직원	○ 수료직원 포상비 지급(소속 영업점별) 60만원(시간당 1만원)

- SM직원에 대한 강사료 책정 : 시간당 2만원

※ 기타 TMSF 교육관련비용은 교육훈련비로 책정

(붙임)

## 업무용차량 렌트 운용에 따른 장점

### 1. 비용절감 효과

초기비용 최소화	차량직접 구매 보다 초기비용 부담이 적으며, 이를 통해 확보된 유보자금을 생산성이 높은 곳으로 투자 가능
세금감면효과	소득세 및 법인세 절세효과
인건비 절감	차량유지, 관리 및 정비(사고)업무 등과 관련된 일체의 차량관리 대행으로 관리비, 인건비 및 시간 절감
유류비 절감	LPG전용차량 이용 가능하여 유류비 절감

### 2. 재무구조 개선 및 간편한 회계처리

부채비율 감소	차량취득(할부)의 경우는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분류되지만, 장기대여는 차량구입에 따른 차입금 발생효과 없고, 매월 월대여료로 비용처리 되므로 부채비율 감소
간편회계 처리	월대여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하나로 회계처리가 간단
투명비용 운영	고정된 월대여료 납부로 예산계획수립 용이하며, 비용 운용내역 또한 투명함

### 3. 차량유지 및 관리의 편의성

차량유지 및 사고 처리	차량구입부터 등록, 보험가입, 자동차검사, 차량관리 및 사고처리까지 일체의 차량업무 농협렌터카가 대행하며, 수리기간동안 대체차량 제공
최적상태 차량운행	전담 정비팀 매월 정기점검순회서비스를 통한 차량의 최적상태 유지

### 4. 기타

각종 규제 제외	차고지 증명제, 10부제, 2부제 등 정부시책에 따른 각종규제 적용대상 제외
차종 변경 용이	회사상황에 따른 대여기간의 자유선택, 대여기간 종료 후 차종변경 용이

## 법인세 절감 효과

(단위 : 원, %)

구 분	법인세율 (주민세 포함)	월임대료	대수	손비처리액 (3년간)	법인세 감면금액 (3년간)
모닝 VAN 고급형	29.7	336,363	1	12,109,068	3,596,393
아반떼M16 Deluxe	29.7	470,000	1	16,920,000	5,025,240
쏘나타 Y20 Grand	29.7	650,000	1	23,400,000	6,949,800
그랜저HG240 Luxury	29.7	850,000	1	30,600,000	9,088,200
스포티지R 2WD LX	29.7	630,000	1	22,680,000	6,735,960
카니발R GX	29.7	663,636	1	23,890,896	7,095,596
스타렉스 12인승 CGV Deluxe	29.7	545,454	1	19,636,344	5,831,994

- 모닝, 카니발, 스타렉스 :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60-1)

※ 차량취득 시에도 감가상각 기간동안 손비인정 가능하나, 회계처리가 매우 복잡함

※ 차량취득대비 장기렌트 이용 시 계약기간동안의 임대료 전액을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절세효과가 있으며, 회계처리가 매우 간편함

※ 차량취득 시 손비로 인정받기 어려우나, 장기렌트 이용 시 계약기간동안의 임대료 전액을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

(참고)

## 취득대비 렌트운용 시 차종별 비용절감 세부내역

### 1) 모닝 VAN 고급형(1,000cc)

(단위 : 원, 부가세포함)

구 분	취 득 시	렌터카이용시	비 고
차량가격	8,954,545		
탁 송 료	103,636		
차량구매비용(A)	9,058,181	12,109,068	월대여료 336,363 *36개월
등 록 세			면제
취 득 세			면제
인 지 세	2,000		
공채할인			면제
부대비용	330,000		번호판,팅팅비 등
등록제비용(B)	332,000		
취득제비용 (C)=(A)+(B)	9,390,181		
보 험 료	2,481,600		1년 827,200 차차(법인용) 가입
자동차세	240,000		1년 80,000
사고수리비			
대차비용			
검 사 비	300,000		
정비(부품)비	3,476,500		
유지제비용(D)	6,498,100		
중고차매각수입(E)	3,756,072		잔존가
기회비용 (차량구매)(F)	1,076,114		3년 3.82% 3년만기 국공채금리 (11.08.03 기준)
총순비용(G) = (C)+(D)-(E)+(F)	13,208,323	12,109,068	렌트운용 1,099 천원 이득

####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60-1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유지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

## 2) 아반떼M16 Deluxe (1,600cc)

(단위 : 원, 부가세포함)

구 분	취 득 시	렌터카이용시	비 고
차량가격	14,900,000		
탁 송 료	192,727		
차량구매비용(A)	15,092,727	16,920,000	월대여료 470,000 *36개월
등 록 세	677,272		차량공급가 * 5%
취 득 세	270,909		차량공급가 * 2%
인 지 세	2,000		
공채할인	113,781		차량공급가 * 3%*28%
부대비용	330,000		네비게이션, 번호판, 토틀링비 등
등록제비용(B)	1,393,962		
취득제비용 (C)=(A)+(B)	16,486,689		
보 험 료	3,258,810		1년 1,086,270 차차(법인용) 가입
자동차세	672,000		1년 224,000
사고수리비			
대차비용			
검 사 비	300,000		
정비(부품)비	5,000,000		
유지제비용(D)	9,230,810		
중고차매각수입(E)	6,594,675		잔존가
기회비용 (차량구매)(F)	1,889,374		3년 3.82% 3년만기 국공채금리 (11.08.03 기준)
총순비용(G) = (C)+(D)-(E)+(F)	21,012,198	16,920,000	렌트운용 4,092 천원 이득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아님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60-1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유지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

### 3) 쏘나타 Y20 Grand (2,000cc)

(단위 : 원, 부가세포함)

구 분	취 득 시	렌터카이용시	비 고
차량가격	21,900,000		
탁 송 료	100,000		
차량구매비용(A)	22,000,000	23,400,000	월대여료 650,000 *36개월
등 록 세	995,454		차량공급가 * 5%
취 득 세	398,181		차량공급가 * 2%
인 지 세	2,000		
공채할인	167,236		차량공급가 * 3%*28%
부대비용	330,000		네비게이션, 번호판, 토틀링비 등
등록제비용(B)	1,892,871		
취득제비용 (C)=(A)+(B)	23,892,871		
보 험 료	4,686,090		1년 1,562,030 자차(법인용) 가입
자동차세	840,000		1년 280,000
사고수리비			
대차비용			
검 사 비	300,000		
정비(부품)비	5,203,800		
유지제비용(D)	11,029,890		
중고차매각수입(E)	9,557,148		잔존가
기회비용 (차량구매)(F)	2,738,123		3년 3.82% 3년만기 국공채금리 (11.08.03 기준)
총순비용(G) = (C)+(D)-(E)+(F)	28,103,736	23,400,000	렌트운용 4,704 천원 이득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아님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60-1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유지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



#### 4) 그랜저HG240 Luxury (2,400cc)

(단위 : 원, 부가세포함)

구 분	취 득 시	렌터카이용시	비 고
차량가격	32,940,000		
탁 송 료	100,000		
차량구매비용(A)	33,040,000	30,600,000	월대여료 850,000 *36개월
등 록 세	1,497,272		차량공급가 * 5%
취 득 세	598,909		차량공급가 * 2%
인 지 세	2,000		
공채할인	251,541		차량공급가 * 3%*28%
부대비용	60,000		네비게이션, 번호판, 툴링비 등
등록제비용(B)	2,409,722		
취득제비용 (C)=(A)+(B)	35,449,722		
보 험 료	5,786,700		1년 1,928,900 차차(법인용) 가입
자동차세	1,440,000		1년 480,000
사고수리비			
대차비용			
검 사 비	300,000		
정비(부품)비	4,969,000		
유지제비용(D)	12,495,700		
중고차매각수입(E)	14,179,888		잔존가
기회비용 (차량구매)(F)	4,062,538		3년 3.82% 3년만기 국공채금리 (11.08.03 기준)
총순비용(G) = (C)+(D)-(E)+(F)	37,828,072	30,600,000	렌트운용 7,228 천원 이득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아님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60-1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유지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

5) 투싼ix X20 (2,000cc)

(단위 : 원, 부가세포함)

구 분	취 득 시	렌터카이용시	비 고
차량가격	22,520,000		
탁 송 료	189,090		
차량구매비용(A)	22,709,090	22,680,000	월대여료 630,000 *36개월
등 록 세	1,023,636		차량공급가 * 5%
취 득 세	409,454		차량공급가 * 2%
인 지 세	2,000		
공채할인	171,970		차량공급가 * 3%*28%
부대비용	330,000		네비게이션, 번호판, 토티링비 등
등록제비용(B)	1,937,060		
취득제비용 (C)=(A)+(B)	24,646,150		
보 험 료	3,341,940		1년 1,113,980 차차(법인용) 가입
자동차세	840,000		1년 280,000
사고수리비			
대차비용			
검 사 비	300,000		
정비(부품)비	7,996,300		
유지제비용(D)	12,478,240		
중고차매각수입(E)	9,858,460		잔존가
기회비용 (차량구매)(F)	2,824,448		3년 3.82% 3년만기 국공채금리 (11.08.03 기준)
총순비용(G) = (C)+(D)-(E)+(F)	30,090,378	22,680,000	렌트운용 7,410 천원 이득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아님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60-1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유지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

6) 스포티지R2.0 2WD LX (2,000cc)

(단위 : 원, 부가세포함)

구 분	취 득 시	렌터카이용시	비 고
차량가격	22,050,000		
탁 송 료	91,818		
차량구매비용(A)	22,141,818	22,680,000	월대여료 630,000 *36개월
등 록 세	1,002,272		차량공급가 * 5%
취 득 세	400,909		차량공급가 * 2%
인 지 세	2,000		
공채할인	168,381		차량공급가 * 3%*28%
부대비용	330,000		네비게이션, 번호판, 토틀링비 등
등록제비용(B)	1,903,562		
취득제비용 (C)=(A)+(B)	24,045,380		
보 험 료	3,341,940		1년 1,113,980 차차(법인용) 가입
자동차세	840,000		1년 280,000
사고수리비			
대차비용			
검 사 비	300,000		
정비(부품)비	7,996,300		
유지제비용(D)	12,478,240		
중고차매각수입(E)	9,618,152		잔존가
기회비용 (차량구매)(F)	2,755,600		3년 3.82% 3년만기 국공채금리 (11.08.03 기준)
총순비용(G) = (C)+(D)-(E)+(F)	29,661,068	22,680,000	렌트운용 6,981 천원 이득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아님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60-1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유지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

## 7) 그랜드카니발R GX (2,200cc)

(단위 : 원, 부가세포함)

구 분	취 득 시	렌터카이용시	비 고
차량가격	23,636,363		
탁 송 료	64,545		
차량구매비용(A)	23,700,908	23,890,896	월대여료 663,636 *36개월
등 록 세	1,074,380		차량공급가 * 5%
취 득 세	429,752		차량공급가 * 2%
인 지 세	2,000		
공채할인	180,495		차량공급가 * 3%*28%
부대비용	330,000		네비게이션, 번호판, 토틀링비 등
등록제비용(B)	2,016,627		
취득제비용 (C)=(A)+(B)	25,717,535		
보 험 료	6,218,550		1년 2,072,850 자차(법인용) 가입
자동차세	1,320,000		1년 440,000
사고수리비			
대차비용			
검 사 비	300,000		
정비(부품)비	5,965,500		
유지제비용(D)	13,804,050		
중고차매각수입(E)	10,287,014		잔존가
기회비용 (차량구매)(F)	2,947,229		3년 3.82% 3년만기 국공채금리 (11.08.03 기준)
총순비용(G) = (C)+(D)-(E)+(F)	32,181,800	23,890,896	렌트운용 8,291 천원 이득

###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아님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60-1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유지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

**8) 그랜드 스타렉스 12인승 CVX Deluxe (2,500cc)**

(단위 : 원, 부가세포함)

구 분	취 득 시	렌터카이용시	비 고
차량가격	19,681,818		
탁 송 료	189,090		
차량구매비용(A)	19,870,908	19,636,344	월대여료 545,454 *36개월
등 록 세	894,628		차량공급가 * 5%
취 득 세	357,851		차량공급가 * 2%
인 지 세	2,000		
공채할인	150,297		차량공급가 * 3%*28%
부대비용	330,000		네비게이션, 번호판, 토탈비 등
등록제비용(B)	1,734,776		
취득제비용 (C)=(A)+(B)	21,605,684		
보 험 료	6,033,270		1년 2,011,090 자차(법인용) 가입
자동차세	1,500,000		1년 500,000
사고수리비			
대차비용			
검 사 비	300,000		
정비(부품)비	5,355,500		
유지제비용(D)	13,188,770		
중고차매각수입(E)	8,642,273		잔존가
기회비용 (차량구매)(F)	2,476,011		3년 3.82% 3년만기 국공채금리 (11.08.03 기준)
총순비용(G) = (C)+(D)-(E)+(F)	28,628,192	19,636,344	렌트운용 8,992 천원 이득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아님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60-1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유지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

## 7) 부문별 편성기준

항	목	세 목	편 성 기 준
인 건 비	보 수		< 인건비 세부기준 참조 >
	급 여		
	제 수 당		
	임 금		
	성 과 급		
퇴직급여			
세금과공과	제 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원가와 고정자산, 재고자산 등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세금 및 법인세 등을 제외하고 영업에 관계되는 각종 조세 등을 계상 (예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인지세 등)의 실소요액을 계상</li> </ul>
	각종공과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공공적 지출비 등 각종 공과금을 처리함</li> </ul>
	분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십자회비, 방위협의회비, 상공회의소회비 등 관계기관에 대한 분담금 등을 계상</li> <li>○ 법인 품목별협의회 연회비, 가입비(협의회별 정관 참조) 및 자조금(협의회별 자조금 조성기준)</li> <li>○ 공관장 운영협의회비 : 연회비 1,000천원</li> <li>○ 공동퇴비제조장 협의회비 : 개소당 1,000천원</li> <li>○ 하나로마트선도농협 협의회비 : 가입비 500천원, 연회비 1,000천원 입원 1,500천원</li> <li>○ 하나로마트 점장협의회비 : 가입비 300천원, 연회비 200천원</li> <li>○ 친환경농산물자조금 분담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년도 분담액 5백만원 미만 : 5백만원 이상</li> <li>- '11년도 분담액 5백만원 이상 : 현 수준 이상</li> </ul> </li> <li>○ GAP생산자협의회 연회비, 가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회비, 가입비 : 정관참조</li> <li>- 자조금('12년 계획사항)</li> </ul> </li> <li>○ 농민신문사 회원회비</li> <li>※ 기타 금융결제원 분담금(지로회비, 금융공동망회비 등) 신용사업관련 분담금은 위 세금과공과 중 분담금 처리기준 참조</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략</li> </ul>
전산비용	전산사용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회 등에서 전산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을 정산하는 경우 분담비용 처리</li> </ul>
	전산물자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산관련 각종 물자대금 처리 : '11년 사용량을 감안 책정</li> </ul>
대손상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손충당금관련 참조</li> </ul>
기타충당금 전입액	지역사랑기금 전입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랑예금' 기금 출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연기준 : '지역사랑예금' 통장 연평잔의 0.10%</li> <li>- 출연시기 : 4회(각 분기 익월)</li> </ul> </li> </ul>
감가상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형자산에 대한 감각상각비 처리</li> <li>- 농기계은행사업용 농기계구입에 따른 감가상각비 등 계상</li> </ul>
무형자산 상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형자산에 대한 감각상각비 처리</li> </ul>
판매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사업의 각 사업의 직접(전속)사업비를 처리</li> </ul>

항	목	세 목	편 성 기 준									
경 비	여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년 집행추정실적 및 2012년도 사무소 여건을 감안하여 현행 여비규정에 의거 편성하되, 중앙회 교육원 및 과정보별 교육 여비는 2011년 집행추정실적을 감안하여 실소요액 기준으로 편성</li> <li>- 교육훈련비 편성기준상의 임직원 교육과정(예산편성단가표) 참조</li> <li>○ 공동퇴비제조장 운영농협 연수 : 1인당 2백만원</li> </ul>									
	급 식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원 급여관련규정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편성</li> </ul>									
	복 리 후 생 비	인건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활동보조비, 임직원 자녀장학금, 산재보험료, 임금채권부담금,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신원보증보험료 등은 직원급여 관련 규정, 관련 법령, 관련 부서 지도문서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실 소요액 기준으로 편성</li> <li>- 산재보험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업별(신용·공제·경제사업) 내지 사업장별(가공공장, 공판장, RPC, 기타 경제사업장) 종사 직원의 2011년도 보수총액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종류별로 고시한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편성 (※ 산재보험 보험료율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li> <li>- 임금채권부담금 : 산재보험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은 임금채권 보장법의 당연적용 사업장이 되므로 2011년도 보수총액에 일정 해당액(5인이상 0.8/1,000)을 임금채권부담금으로 편성 ※ 임금채권부담금 경감대상 :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경우, 퇴직보험·퇴직연금제도를 도입 운용하는 경우 등 ※ 임금채권부담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li> <li>-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산재보험료와 합산하여 통합징수 산정방법 : 보수총액*분담금율(0.05/1,000) 분담금율은 매년 환경부장관이 고시</li> <li>- 고용보험료 : 2011년도 전 직원의 보수총액에 아래 보험료율을 곱한 해당액을 편성</li> <li>- 국민연금보험료 : 연간 대상급여의 4.5% 해당액을 편성</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 대상 농·축협 및 보험료율 &gt;</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납부 대상</th> <th style="width: 70%;">보 험 료 율</th> </tr> </thead> <tbody> <tr> <td>실업급여</td> <td>0.55% (노·사 각각 0.55% 부담)</td> </tr> <tr> <td rowspan="3">고용안정·직업 능력개발사업</td> <td>150인 미만 : 0.25% (사용자 부담)</td> </tr> <tr> <td>150인 이상(우선대상기업) : 0.45% (사용자 부담)</td> </tr> <tr> <td>150인 이상~1,000인 미만 : 0.65% (사용자 부담)</td> </tr> <tr> <td></td> <td>1,000인이상 : 0.85% (사용자 부담)</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선지원대상기업 :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중소기업법 제2조 1항 및 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li> </ul>	납부 대상	보 험 료 율	실업급여	0.55% (노·사 각각 0.55% 부담)	고용안정·직업 능력개발사업	150인 미만 : 0.25% (사용자 부담)	150인 이상(우선대상기업) : 0.45% (사용자 부담)	150인 이상~1,000인 미만 : 0.65% (사용자 부담)	
납부 대상	보 험 료 율											
실업급여	0.55% (노·사 각각 0.55% 부담)											
고용안정·직업 능력개발사업	150인 미만 : 0.25% (사용자 부담)											
	150인 이상(우선대상기업) : 0.45% (사용자 부담)											
	150인 이상~1,000인 미만 : 0.65% (사용자 부담)											
	1,000인이상 : 0.85% (사용자 부담)											

항	목	세 목	편 성 기 준						
경 비	복 리 후 생 비	인건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2.82% × 12월 해당액을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수월액(월평균보수) : 연간 총보수액 ÷ 근무월수</li> <li>(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6.55%× 12월 해당액을 별도편성)</li> </ul> </li> <li>- 신원보증공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계약 → 가입금액의 0.17%, 특약 → 가입금액의 0.72%</li> <li>※ 가입금액은 농·축협이 복무규정 등에 의거 농·축협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li> </ul> </li> </ul>						
	복 리 후 생 비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편성</li> <li>- 상임 임원(비상임조합장 포함) 및 직원 건강진단비(산업안전보건법상 필수사항임)는 2011년도 추정 집행액을 감안하여 실소요액 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밀종합검진(만 35세 이상자), 혈액종합검진(만 35세 미만자)</li> </ul> </li> <li>- 농약담당자 정밀 건강진단비 계상</li> <li>- 경조금 및 재해부조금은 급여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와 2011년도 추정 집행액을 감안하여 계상</li> <li>- 춘·추계 체육행사비, 근로자의날 행사비, 창립기념품비, 피복비 등 기타 복리후생비는 2011년말 경영여건과 손익현황, 과거 지급액, 2012년 예상손익 등을 감안하여 실정에 맞게 예산 편성</li> </ul>						
	당 직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회회의 의결에 의한 금액을 일·숙직비로 편성</li> <li>○ 무인기계용역비는 당직비로 계상</li> </ul>						
	통 신 운 반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편료, 전화료, FAX제비, 제운반비 등 실소요액 기준 편성</li> <li>○ 외부기관제공 금융정보이용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외부운용 채권투자 농·축협 중 희망 사무소</li> <li>- 예상 가격 : 사무소별 연 240만원 내외 (가격 변동 가능)</li> <li>※ 2012년초 농·축협 수요조사 후 공동가입 여부 결정</li> </ul> </li> <li>○ 전용전화망(인터넷전화) 유지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지보수료는 전화요금에 포함됨</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년(年) 비용</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서비스비용</td> <td>200 ~ 400천원</td> <td>절감금액 1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기비용은 사용량에 따라 부과됨</li> </ul> </li> <li>○ 전용전화망(인터넷전화) 개별 전화번호 사용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비용은 [서비스요금(월,4천원)×사용수량]</li> <li>- 상가요금은 컬러링 서비스 및 유지보수료 포함임</li> </ul> </li> </ul>	구 분	년(年) 비용	비고	서비스비용	200 ~ 400천원	절감금액 10%
	구 분	년(年) 비용	비고						
서비스비용	200 ~ 400천원	절감금액 10%							
소모품비	대여피복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직원(비정규직포함) 체춘에 의한 피복비, 청경 하복 및 동복</li> <li>- 예산편성단가표에 의거 실소요액 편성</li> </ul>							
	차·연초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객접대용 연초 및 차재료비 구입</li> <li>- 2011년도 지급수준을 감안 실소요액 편성</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말기 사용자 인증장치 : 1대 20천원</li> <li>○ 단말기 사용자 인증장치 연장 USB 허브 : 4구기준 개당 20천원</li> </ul>							



항	목	세 목	편 성 기 준
경 비	광 고 선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 및 광고료, 각종 대회행사 프랑카드대 등을 편성</li> <li>○ 농민신문 등 광고비(희망 농·축협)</li> <li>- 자세한 사항은 부표의 예산편성단가표 참조</li> <li>※ 농·축협은 광고요금의 60% 적용</li> </ul>
	도 서 인 쇄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년도 수준을 감안한 실소요액</li> </ul>
	등 기 소 송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기제비용, 법원 등·초본료, 인감증명료, 소송비용 및 기타 법적 절차 비용 등을 편성</li> <li>- 2011년도 수준을 감안 편성</li> </ul>
	회 의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축협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외부 인사 및 자체 임직원들의 회의시의 식대 및 차대, 회의용 소모품비의 지출 금액을 책정</li> <li>○ 대의원회 및 운영평가자문회의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 책정</li> </ul>
	업 무 추 진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사업상 관계가 있는 자에게 접대행위(접대, 위안, 선물기증 등)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li> <li>※ 사무소별 접대비성 예산한도 내에서 편성</li> </ul>
	수 선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유지비, 부속시설유지비, 사무기계보수비, 도색비, 잡수리비 등 실소요액 편성(자본적지출 제외)</li> <li>○ 간판 화면교체 및 유지보수(신규설치는 고정투자 참조)</li> <li>- 수선 : 260천원/㎡당(시트지, 형광등, 안정기 등 교체)</li> <li>- 세척 : 25천원/㎡당</li> <li>○ 점외365코너, 점외자동화기기 설치비 (해당 사무소만 반영)</li> <li>- 통신회선 설비 200천원</li> </ul>
	수 도 광 열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료, 상하수도료, 연료비 등 실소요액 편성</li> <li>- 사무소 신설 및 증개축에 따른 전기예약용량 증가 등을 감안 편성</li> </ul>
	공 제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재공제료, 차량공제료, 현금도난공제료, 금융기관종합공제 등의 실소요액을 편성</li> <li>- 화재공제 부보시 풍수해 특약을 가입할 수 있도록 예산반영</li> </ul>
	임 차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건물 임차료, 임차건물 관리비, 차량 용차료 등의 실소요액</li> <li>○ 업무용차량을 렌트로 운용하는 경우 렌트비 실소요액 편성</li> </ul>
차 량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용차량에 대한 유류대, 잡유대, 수리비, 부속품대, 차량소모품대, 검사료, 세차료, 주차료 및 유료도로 통행료 등의 실소요액 편성</li> <li>○ 조합장 등 상임임원의 개인차량을 업무용으로 이용에 따른 자가 운전보조비 편성</li> <li>○ 방역차 보유 및 구매예정 축협(축산건설팀부)</li> <li>- 차량수선유지비(방역차) : 2,000 천원 편성 (수리비 300천원×4회, 부품비 200천원×4회)</li> </ul>	

항	목	세 목	편 성 기 준
경비	용역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용역비, 경비원용역비, 청소용역비, 운전기사 용역비, 전화교환원 용역비, 고문료 등의 실소요액을 편성</li> <li>○ 선거관리 위탁비용</li> <li>○ 지역본부, 시군지부에 위탁하여 신규직원 채용 시 고시비용 등</li> <li>○ 외부용역 경영컨설팅 실시비용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역범위 및 수행업체에 따라 예산이 변동되므로 희망 농·축협 자율반영</li> </ul> </li> <li>○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지비 : 2011년 수준 편성</li> </ul> </li> </ul>
	포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창비 및 시상금 등의 실소요액을 편성</li> <li>○ 공판장 운영 농·축협 중 직원 성과급제를 운영하는 농협은 적정 금액 반영</li> </ul>
	교육훈련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훈련비는 임직원의 교육훈련에 따른 직접 교육비만을 편성하고 기타 교육여비, 식비 등은 실소요액을 여비에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직원 교육과정 및 과정별 1인당 교육비 단가 : 부표의 예산 편성단가표 참조</li> <li>- 임직원 가족교육비 : 희망 농·축협에 한하여 편성</li> <li>- 기타 부서별 교육여비 반영</li> </ul> </li> </ul>
	연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기술적인 지식이나 이해를 얻기위한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조사활동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수 조사연구 업무에 한해 예산편성</li> </ul> </li> </ul>
	기타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략</li> </ul>
예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사업개발 등 소요자원과 인건비 관련자원을 구분하여 편성</li> <li>○ 예비비는 인건비 인상자원만 편성치 말고 신규 사업개발 등 농업인 실익사업 및 특색사업 중심으로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사업 개발 등 : 경영여건, 2011년도 사업계획 진도 등을 감안하여 자율 편성</li> <li>- 인건비 관련자원 : 인건비 인상 등 추가소요예산은 인건비, 인건비성 경비, 퇴직급여금에 대하여 경영 여건, 전년도 인상수준, 복리후생비 등을 감안하여 예비비로 편성</li> </ul> </li> </ul>

## ■ 교육과정 및 교육비

### □ 2011년 조합원 교육 과정

구분	과정명	대상	기간	계획		장소	주요내용	비고
				기수	인원			
경제사업활성화	경제사업활성화 핵심리더	임직원, 대의원	2	26	4,400	안성, 창녕	경제사업활성화	안성16 창녕10
	경제사업활성화 현장교육컨설팅	조합원	1	10	1,500	창녕	경제사업활성화	현지출장교육
	농·축협사업활성화과정	조합원	1	20	2,000	안성	농·축협사업활성화	
	농축협핵심리더 테마체험	임직원, 대의원	2	15	1,660	안성	핵심리더 리더십 향상	
	공선출하회 육성	조합원	2	5	500	안성	산지유통활성화	
	공선출하회 핵심리더	조합원	3	2	200	안성	공선출하회 육성	
	<b>소계</b>			<b>78</b>	<b>10,260</b>			
농축협경영활성화	농축협이사기본과정	조선이사	3	9	1,350	안성, 창녕	이사의 역할	안성5 창녕4
	농축협감사기본과정	조선감사	3	2	300	안성, 창녕	감사의역할	안성1 창녕1
	농축협임원리더십향상	이감사과정 이수자	3	2	300	안성, 창녕	리더십교육	안성1 창녕1
	농축협대의원교육	대의원	2	10	1,500	창녕	대의원 역할교육	
	농축협경영혁신과정	핵심 조합원	2	2	400	창녕	농축협 자립경영 기반	
	농축협역량강화	조합원	1	20	3,000	창녕	주인의식 고취	일일방문교육
	핵심조합원 리더십향상	조합원	2	1	80	창녕	농·축협 운영활성화	
	여성조직운영활성화	여성 조합원	3	1	200	창녕	농주모, 고주모 등	
	여성리더역량강화	여성임원	3	1	200	창녕	리더십교육	
	<b>소계</b>			<b>50</b>	<b>7,530</b>			
영농축산기술유통경영	최고기술아카데미	선도 농업인	3	2	30	안성	품종별 재배기술	
	최고기술아카데미향상	선도 농업인	2	2	60	안성	품종별(한우, 딸기)	
	전문농업기술	희망 농업인	2	3	300	안성	재배(블루베리, 사과, 딸기)	
	주산지현장영농기술	조합원	2	14	1,400	안성	영농기술향상	
	핵심축산기술	한우농가	2	2	100	안성	한우 인공수정	
	한우후계자육성	한우 후계자	3	2	140	안성	사양관리	
	성공농업인MBA	조합원	3	4	200	안성	핵심역량교육	

구분	과정명	대상	기간	계획		장소	주요내용	비고
				기수	인원			
영농 축산 기술 유통 경영	사과최고경영자	우수선도 농업인	10	1	30	안성	사과영농기술	4회합
	신소득작물	산채재배 농가	3	1	100	안성	재배기술	
	새농민경영자	새농민 회원	2	1	30	안성	농업경영전략	
	여성낙농최고경영자	여성 낙농인	1	1	50	안성	한우 경영컨설팅	10회합
	<b>소계</b>			<b>33</b>	<b>2,440</b>			
친환 경농 업및 소비 자교 육	친환경농업도입과정	농업인	2	15	900	경주	친환경도입교육	
	친환경농업인증농가	인증농가	3	3	180	경주	인증농가 심화교육	
	친환경농업아카데미	친환경인증 농업인	3	3	180	경주	친환경채소 등	
	친환경농업축산과정	축산농가	2	2	120	경주	친환경축산	
	친환경농업현장교육	작목반 등	1	20	3,000	경주	친환경현장교육	현지출장 교육
	마이스터대학	선도 농업인	2	1	20	경주	농민사관학교	19회합
	친환경농업임직원	임직원	2	2	120	경주	친환경 추진전략	
	친환경농업CEO	조합장, 지부장	2	2	120	경주	친환경 추진전략	
	친환경소비자초대	우수고객 소비자	1~2	20	1,200	경주	친환경농업 이해증진	
	친환경농업그린유통	농업인	2	1	30	경주	경북농민사관학교	6회합
	친환경농업이해	조합원, 소비자	1	20	1,600	경주	친환경농업 이해증진	
	친환경농업명품귀농	귀농귀촌 예정자	1	1	30	경주	친환경농업 핵심리더양성	6회합
<b>소 계</b>			<b>90</b>	<b>7,500</b>				
농업 농촌 이해 현장 인력 육성	전국새농민회	시군 회장단	2	1	250	안성	새농민조직 활성화	
	농협이념확산교육	퇴직동인	1	1	150	창녕	농협동인 자긍심 고취	
	우리농축산물 바로알기	영양사, 조리사	2	3	600	안성	우리농산물 소비촉진	
	우리농축산물 사랑소비자	소비자	2	3	550	안성 창녕	우리농산물 소비촉진	안성 2 창녕 1
	민관합동	유관기관	2	15	3,000	안성 창녕	지역농업발전	안성 5 창녕 10
	귀농귀촌	도시민	2	3	85	안성,창녕 경주	귀농대상자	6~8회합
	<b>소 계</b>			<b>26</b>	<b>4,635</b>			
<b>합 계</b>			<b>277</b>	<b>32,365</b>				

□ 2011년 통신연수 교육비 단가표

교육기관	과정명	교육비 단가	교육기관	과정명	교육비 단가
고려 아카데미 컨설팅	친환경유기농업실무	130,000	에프피에듀	금융전문가를 위한 상속설계	130,000
	재무 및 세무회계 실무	130,000	한국능률 협회	농산물품질관리실무	150,000
	채권 및 신용관리 실무	150,000		공경매전문가양성	150,000
농업경영컨설팅	150,000	채권관리실무		130,000	
유비온	사례로 알아보는 회계실무	130,000	한국생산 성본부	감정평가실무	150,000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실무 마스터	130,000		물류실무능력향상	160,000
	증권투자 및 금융상품 이해	130,000		실무자를 위한 영업채권관리	130,000
	고객을 사로잡는 자산관리 실무 에센스	130,000		유통실무능력향상	130,000
	경제지표를 활용한 금융투자전략	130,000		유통전문가 양성	130,000
	실무능력향상을 위한 회계, 재무, 세무 정복	130,000		축산업무능력 개발	130,000
	사례로 알아보는 생명보험 분쟁조정 실무	130,000		국제회계기준실무	130,000
한국표준 협회	유기농업실무능력향상	120,000	보험 연수원	부동산경매와 투자실무	130,000
	전자상거래실무능력향상	130,000		시장에서 통하는 마케팅 전략수립 및 실행	130,000
	CRM(고객관계관리)마케팅	120,000		부동산개발 법률과 세무	130,000
	전략적브랜드관리	130,000		기업여신업무 능력강화	130,000
	협상스킬능력향상	130,000		농협세무	130,000
	여신사후관리	130,000		농협회계실무	130,000
	은퇴설계상담능력향상	130,000		보험판매기법향상	120,000
	재무투자설계실무	130,000		생명보험중개사	120,000
	금융업채권관리	120,000		생명보험	120,000
대출심사역기초	120,000	종합자산관리사	120,000		
에프피에듀	한국자산관리사 (AFPK1)	110,000	보험 연수원	유형별 보험고객 상담실무	120,000
	한국자산관리사(AFPK2)	110,000		기업보험심사역(금융)	120,000
	금융전문가를 위한 TVM마스터하기	150,000		개인보험심사역(금융)	120,000
	금융전문가를 위한 재무설계	130,000			

※ 참고 : 각 부서별 교육계획

가. 하나로마트 분사(단위 : 명, 회, 천원)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일정		교육횟수	교육기간	장소	단가
	대상자	인원	시행시기	완료시기				
점장직무능력향상(기본)	점장	60	'12. 4	'12. 4	1	3박 4일	평택물류센터	170
점장직무능력향상(심화)	점장	60	'12. 5	'12. 5	1	3박 4일	평택물류센터	170
하나로마트사업MBA	점장	30	'12. 3~8	'12. 3~8	6	2박 3일	평택물류센터	700
고객접점CS실무	판매원	360	'12. 2~4	'12. 2~4	6	2박 3일	평택물류센터	120
마트책임자공산품	팀장	120	'12. 5~7	'12. 5~7	2	3박 4일	평택물류센터	170
마트책임자농축산	팀장	120	'12. 5~7	'12. 5~7	2	3박 4일	평택물류센터	170
마트실무자공산품	실무자	120	'12. 5~7	'12. 5~7	2	3박 4일	평택물류센터	170
마트실무자농축산	실무자	120	'12. 5~7	'12. 5~7	2	3박 4일	평택물류센터	170
매장정보화실무	전산담당	100	'12. 4 '12. 9	'12. 4 '12. 9	2	2박 3일	평택물류센터	120
매장대형화실무	실무담당	60	'12. 8	'12. 8	1	3박 4일	평택물류센터	170
상생팀빌딩	전직원	120	'12. 5 '12.10	'12. 5 '12.10	2	2박 3일	평택물류센터	120
전문컨설팅(기본)	전직원	50	'12. 6	'12. 6	1	4박 5일	평택물류센터	200
전문컨설팅(심화)	전직원	50	'12.10	'12.10	1	4박 5일	평택물류센터	200

나. 공판도매분사(단위 : 명, 천원)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일정		교육기간	장소	단가
	대상자	인원	시행시기	완료시기			
공판장 실무	일반직	60	1/4분기	1/4분기	2박3일	안성교육원	50
중도매인 마케팅	중도매인	100	3/4분기	3/4분기	1박2일	연수원	무료
현장방문교육	종사직원,중도매인	20	매월1회 (20회)	4/4분기	1일	해당 공판장	무료

다. 양곡부(단위 : 명, 천원)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일정		교육기간	장소	단가
	대상자	인원	시행시기	완료시기			
농산물 검사원 교육	검사원, 직원	300	2/4분기	2/4분기	2일	각 지역본부	5,000
RPC 경영교육	RPC장장	50	2/4분기	2/4분기	3일	안성교육원	교육원 별도책정
RPC 시설교육	직원	100	2/4분기	2/4분기	1일	안성교육원	교육원 별도책정
고품질쌀브랜드육성	선정RPC 직원	30	2/4분기	2/4분기	1일	외부 시설	1,000
산물벼 수매교육	검사원	350	3/4분기	3/4분기	1일	각 지역본부	1,500

라. 자재부(단위 : 명, 원)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일정		교육 횟수	교육 기간	장 소	단가
	대상자	인원	시행시기	완료시기				
시비진단기술자 교육	영 농 지도사	60	1/4분기	1/4분기	1기	5일	평택물류센터	무료
공동퇴비제조장 생산담당자교육	상 무 공장장	65	2/4분기	2/4분기	1기	5일	평택물류센터	무료
비료담당자 비료신청교육	비료 담당자	2,500	4/4분기	4/4분기	1기	1일	지역본부 (9개)	무료
비료 마켓리더교육	비료 마켓리더	50	1/4분기	4/4분기	1기	2일	미정	무료
농약세일즈 특별교육	전 문 판매원	120	1/4분기	1/4분기	2기	1주	교육원	무료
농약관매관리자 농약안전사용 교육	농약 담당자	4,500	2/4분기	2/4분기	1기	1일	지역본부 (9개)	무료
농약담당자 농약신청교육	농약 담당자	2,500	1/4분기	1/4분기	1기	1일	지역본부 (9개)	무료
농약담당자제조업체 위탁교육	농약 담당자	500	3/4분기	3/4분기	2기	2일	제조업체 연수원	무료
신규농약관매 관리자 자격교육	농약 담당자	500	매분기 말월	매분기 말월	4기	2일	농촌 진흥청	8천원 (식대별도)
주유소 경영능력 향상 교육	유류 담당자	500	2/4분기	2/4분기	3기	4일	교육원	무료
주유소 신설교육	전상무	100	1/4분기	1/4분기	1기	2일	미정	무료

마. 농기계은행분사(단위 : 명, 원)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일정		교육 기간	장소	단가
	대상자	인원	시행시기	완료시기			
농기계은행사업 실무교육	담당자	700	1/4분기	1/4분기	1일	지역본부(9개)	무료
농기계은행 선도농협 실무책임자	담당자	110	2/4분기	2/4분기	2일	교육원	무료
농기계생산업체 위탁교육	S/C 기사	1,000	반기별	반기별	3일	제조업체연수원	무료
면세유 실무교육	담당자	2,300	1/4분기	1/4분기	1일	지역본부(9개)	무료

바. 축산건설팅부(단위 : 명, 천원)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일정		교육 횟수	교육 기간	장 소	단가
	대상자	인원	시행시기	완료시기				
축산건설턴트전문가	직원	120	'12.5	'12.5	1	2주	안성교육원	1,500
축산건설턴트핵심	직원	70	'12.11	'12.11	1	3일	안성교육원	500
HACCP 전문가	실 무 담당자	120	3월말	4월중순	3회	4일	축산물위생 교육원	500

사. 상호금융부(단위 : 명, 천원)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일정		교육 횟수	교육 기간	장 소 (주관)	교육비 (예정) 단가
	대상자	인원	시행 시기	완료 시기				
상호금융MBA	3,4급 5급합격	60	1/4분기	4/4분기	2	11주	청주교육원	5,000
펀드투자상담사	전직원	2,000	1/4분기	3/4분기	2	1월	미정	90
펀드상담사보수	자격취득자	5,000	1/4분기	3/4분기	5	1월	금융연수원	20
농협금융기본	신규직원	300	1/4분기	1/4분기	3	5일	미정	200
농협금융향상	담당자	500	2/4분기	2/4분기	5	5일	미정	200
여신담당자기본	담당자	300	1/4분기	1/4분기	3	5일	미정	200
여신담당자향상	담당자	600	2/4분기	4/4분기	6	5일	미정	200
경영관리기본	담당자	100	1/4분기	1/4분기	2	5일	미정	200
경영관리향상	담당자	300	2/4분기	3/4분기	6	5일	미정	200
신용신규책임자	4급	300	1/4분기	1/4분기	3	5일	미정	250
신용경력책임자	3,4급	500	2/4분기	2/4분기	5	5일	미정	250
경영관리책임자	3,4급	200	2/4분기	3/4분기	2	5일	미정	250
리스크관리기초	전직원	1,000	2/4분기	2/4분기	1	1월	사이버교육	80
리스크관리실무	담당자	300	1/4분기	2/4분기	6	5일	안성교육원	200
리스크시스템	담당자	100	3/4분기	3/4분기	2	5일	안성교육원	300
리스크관리향상	담당자	100	2/4분기	3/4분기	2	5일	안성교육원	300
리스크경영자	전·상무	100	3/4분기	3/4분기	2	5일	안성교육원	400
수신실무	담당자	300	·2/4분기	·3/4분기	3	4일	구미교육원	200
맵시리더	담당자	500	·2/4분기	·2/4분기	4	4일	안성교육원	200
맵시팀장교육	담당자	100	·1/4분기	·2/4분기	2	4일	안성교육원	200
맵시스타	담당자	50	·3/4분기	·3/4분기	1	4일	안성교육원	200
금융자산관리	담당자	100	·3/4분기	·3/4분기	2	5일	안성교육원	100
PB심화교육	담당자	50	·3/4분기	·3/4분기	1	5일	안성교육원	500
CFP교육	담당자	100	·2/4분기	·4/4분기	2	2주	인재개발원	600
SM양성과정	담당자	100	·1/4분기	·4/4분기	3	6주	청주교육원	2,080
SL역량강화	담당자	200	·2/4분기	·3/4분기	3	3일	청주교육원	500
CRM실무	담당자	4,000	·1/4분기	·2/4분기	2	2주	사이버교육	-
e-금융 기초	전직원	1,000	·2/4분기	·2/4분기	2	4주	사이버교육	-
e-금융 심화	전직원	1,000	·3/4분기	·3/4분기	2	4주	사이버교육	-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일정		교육 횟수	교육 기간	장 소 (주관)	교육비 (예정) 단가
	대상자	인원	시행 시기	완료 시기				
TMSP영업역량강화	전직원	3,000	·2/4분기	·2/4분기	2	4주	사이버교육	-
CS 향상	전직원	4,000	·2/4분기	·2/4분기	4	4주	사이버교육	60
수신실무	전직원	2,000	·1/4분기	·2/4분기	3	2주	사이버교육	-
CFP사이버	AFP합격자	120	·1/4분기	·4/4분기	2	6월	(주)크레듀	1,000
여신실무	담당자	500	·1/4분기	2/4분기	6	4일	청주교육원	152
여신마케팅	담당자	300	·1/4분기	2/4분기	4	3일	구미교육원	150
감정평가전문가	담당자	500	2/4분기	2/4분기	4	4일	안성교육원	152
대출심사역향상	담당자	600	·2/4분기	·3/4분기	4	2주	청주교육원	330
대출심사역보수	대출심사역	500	·3/4분기	·4/4분기	8	4일	청주교육원	152
채권관리실무	4급,5급	400	·2/4분기	·3/4분기	4	5일	구미교육원	60
금융업채권관리(통신연수)	4급,5급	600	·1/4분기	·3/4분기	1	3월	표준협회	120
채권관리전문역	4급,5급	400	·1/4분기	·3/4분기	4	2주	표준협회	980
채권관리전문역심화	4급,5급	120	·2/4분기	·3/4분기	2	4일	표준협회	470
선임심사역 양성	4급,5급	100	·2/4분기	·2/4분기	1	2주	구미교육원	100
사업용 대출기초	4급,5급	300	·1/4분기	·3/4분기	3	3일	구미교육원	50
소호전문가	4급,5급 영업접장	400	·2/4분기	·4/4분기	4	5일	구미교육원	60
소기업전문가	4급,5급 영업접장	200	·2/4분기	·2/4분기	2	5일	구미교육원	60
외부운용 업무	담당자	500	1/4분기	·2/4분기	4	4일	구미교육원	260
외국환업무	전직원	200	1/4분기	·2/4분기	1회	3개월	통신연수	200
외국환 거래업무	전직원	2,000	·2/4분기	4/4분기	2회	3개월	사이버교육	260
외국환 거래업무보수	외국환본과정 이수자	500	·2/4분기	·4/4분기	5회	14일	사이버교육	20

아. 원예특작부(단위 : 명, 천원)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일정		교육 횟수	교육 기간	장 소 (주관)	교육비 (예정) 단가
	대상자	인원	시행 시기	완료 시기				
공선출하회육성	농업인 실무자	700	1/4	4/4	7회	2일	안성교육원	미정
공선출하회리더농업인	농업인	200	1/4	4/4	2회	3일	안성교육원	미정
연합마케팅 실무	실무자	800	2/4	2/4	8회	2일	안성교육원	미정
산지유통 실무	실무자	60	10월		1	4일	안성교육원	미정
산지유통전문가	실무자	30	10월		1	5주	안성교육원	미정
산지유통사업 추진	실무자	500	6월		1회	1일	권역별 지본	미정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일정		교육 횟수	교육 기간	장 소 (주관)	교육비 (예정) 단가
	대상자	인원	시행 시기	완료 시기				
산지유통조직평가 전산업무	실무자	750	1월		10회	1일	안성전산센터	미정
품질관리사 보수교육	품질 관리사	120	4월		1회	3일	안성교육원	미정
채소수급안정사업	실 무 담당자	300	1/4	1/4	1회	2일	교육원	120
시설채소약정출하사업	실무 담당자	300	1/4	3/4	1회	1일	교육원	120
과실계약출하사업	실무 담당자	200	1/4	1/4	1회	1일	교육원	50

### 자. 식품유통부(단위 : 명, 천원)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일정		교육 횟수	교육 기간	장 소	단가
	대상자	인원	시행시기	완료시기				
수출담당자 교육	담당자	40	4월	4월	1	4일	안성교육원	미정
단체급식 실무과정	담당자	60	7월	7월	1	3일	안성교육원	미정
농산물가공공장 실무자	담당자	100	6월	6월	1	3일	안성교육원	미정
식품안전 관리실무	담당자	60	11월	11월	1	3일	안성교육원	미정
GAP인증 담당자교육	담당자	180	4월	4월	1	3일	안성교육원	미정
군납교육	담당자	60	4월	4월	1	2일	안성교육원	미정

### 차. 농촌자원개발부(단위 : 명, 천원)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일정		교육 횟수	교육 기간	장 소
	대상자	인원	시행시기	완료시기			
주부대학동창회 임원	주부대학동창회임원	200	1/4-3/4	4/4	1	2박3일	교육원
농가주부모임 임원	농가주부모임임원	200	1/4-3/4	4/4		2박3일	교육원
여성대의원	여성대의원	400	1/4-3/4	4/4	2	2박3일	교육원
여성임원	여성임원	200	1/4-3/4	4/4	1	2박3일	교육원
여성조합원	여성조합원	200	1/4-3/4	4/4	1	2박3일	교육원
여성복지전문가(심화과정)	여성복지담당	200	1/4-2/4	4/4	2	4박5일	교육원
다문화사회 전문가	여성복지담당	200	3/4	4/4	2	4박5일	교육원
여성복지대상수상자 향상	여성복지대상수상자	150	4/4	4/4	1	1박2일	교육원
다문화 이해 사이버교육	임직원	500	1/4	4/4	1		사이버
장례지도사 사이버 교육	임직원	500	2/4	2/4	1	4주	사이버
지도사업 Leader 과정	지도사업 담당자	150	1/4	1/4	2	3박4일	교육원

### 카. NH보험분사(단위 : 명, 천원)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일정		교육 횟수	교육 기간	장 소	단가
	대상자	인원	시행시기	완료시기				
보험대리점 자격등록교육 및 시험응시(위탁)	미취득자	미정	1/4	4/4	12회	4주	보험 연수원	50(응시료) 78(교육비)
농협보험세일즈향상과정 사이버교육 (위탁)	희망직원	미정	2/4	4/4	7회	4주	보험 연수원	30

## 4. 교육지원사업비

### 가. 기본방향

#### 기 본 방 향

■ 교육지원사업비는 조합원 영농과 직접 관련된 부분에 중점 지원함으로써 조합원 실익증대 도모

- 조합원 소득증대 및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부문 지원 확대
- 1회성·행사성 및 비능률·비생산적인 사업은 과감히 축소 또는 폐지하고 영농자재 지원 등 실질 조합원 영농위주로 직접지원 강화

■ 농업·농촌 활력화 및 농업인 실익사업 지속적인 발굴 지원

- 농축산물 유통활성화, 친환경농업 육성 등 경제사업 활성화 위주에 집중
- 신규 추진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업성 검토
- 농촌사랑운동의 내실화를 통한 지속 추진

■ 교육지원사업비는 영업이익 증가율 범위 내에서 편성하되 전년대비 매출총이익 및 당기손익 감소 농·축협은 교육지원사업비 증액 자제

□ ZERO BASE 예산편성을 원칙으로 하되 조합원 실익증대를 최우선 고려

- 조합원 소득기여 효과가 크고 농축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 하되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건별 사업성 검토로 지원효과 제고
- 해당 농·축협의 영업이익 증가율 범위 내에서 적정수준으로 편성하되, 전년대비 매출총 이익 및 당기손익 감소 농·축협은 교육지원사업비 증액 자제
- 지역사회의 농촌개발·복지·문화·관광·도농교류 사업을 주도하는 지역종합센터로 발전 하기 위한 농·축협 본연의 사업과 연관된 예산위주로 편성
- 내부방침 및 사업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핵심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교육지원 사업별 명확한 예산집행 기준 제시

□ 기존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사업성 재검토로 비능률·비생산적인 사업은 과감히 축소·폐지하고 우수농축산물 생산 등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부문과 조합원 소득증대 효과가 큰 부문에 우선 지원

- 1회성, 행사성 등 소모성 예산은 최대한 자제하고 동 예산은 농업인 영농 직접지원 위주로 편성
- 단순 선진지 견학 목적의 외유성 해외연수 편성 금지
- 모든 사업을 골고루 늘리고 모든 비목을 조금씩 늘려오는 방식 지양
  - 단순·소액·나열식 사업 등은 통폐합 또는 폐지
- 토양검정·시비개선 등 친환경 보존형 농업육성 지원
- 지역특산품 발굴 육성을 통한 지역개발 및 농가소득원 개발 지원

□ **지역사회(Rural Community) 발전 및 녹색성장을 위한 지원 확대**

□ **교육지원사업비는 순수한 교육지원사업 수행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되, 각종 행사·회의는 시기 및 사안별로 가급적 통폐합하여 편성**

- 관련 협의회, 간담회, 평가회, 연찬회 등 각종 회의와 관련된 예산은 최소한의 수준에서 편성하되, 특히 간담회비는 통상적인 회의비 범위이내에서 실소요액을 계상

※ 통상적인 회의비의 범위

-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회의비로서 사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을 말함

□ 『환원사업비』는 조합원의 영농 및 생활에 공동이익과 편익을 제공하는 숙원시설 설치 지원, 특색사업 생산자금 지원, 재해지원에 국한하여 편성

- 조합원 생일 또는 명절 시 선물비 등 일회성, 선심성 예산편성은 지양하고, 과도한 환원사업비 편성 및 집행으로 농·축협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대외적으로 비난을 받지 않도록 유의
  - 특히, 대도시형 농·축협의 과도한 환원사업비 편성 자제
- 교육지원사업비는 조합원에 대한 실질적이고 농업생산 보조 차원의 농약, 사료 등 현물 지급을 통한 지원을 확대
  - 농약, 사료 등 현물 지급시 판매사업 미이용 조합원은 배제가능

□ **집중호우 및 태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해 유실된 조합원의 생활 및 영농·양축 기반의 복구 지원을 위하여 환원사업비(항)중 재해지원비(목)에 예산 편성하되 재해지원시 객관적인 피해 입증자료 반드시 징구**

-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자율책정. 단, 풍수해, 우박피해 등 재해상습지역은 과거 피해실적을 감안하여 편성
  - 농·축협 시설에 대하여는 화재공제 부보시 풍수해특약에 가입토록 해당사업비에 예산반영

□ 농업기술 향상 및 생산지원을 위한 시설·장비 등 지원비, 농업경영개선을 위한 영농자재 지원, 환경보전비, 방역진료비 등은 영농지도비(항)로 편성하되 가급적 전체 교육지원사업비의 **65%** 수준 이상으로 편성하고 영농자재지원비(목)는 **40%** 이상 편성 <단, 영농지도비(항)속의 행사비, 협찬비, 연찬회비는 감축계획 수립>

○ 최근 농업경영비의 지속상승에 따른 농가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바 이를 감안하여 교육지원사업비를 영농자재지원 등 조합원 영농 직접지원 부문에 최대한 편성

※ '10말 전체 교육지원사업비 중 영농지도비(항) 점유율 : 61.0%

※ '10말 전체 교육지원사업비 중 영농자재지원비(목) 점유율 : 30.3%

□ 협찬비는 지역문화 행사 또는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순수 협찬비 위주로 편성

○ 농업과 관련없는 행정기관 및 단체 및 계통기관 등의 체육행사, 야유회 등의 행사에 소요되는 협찬비는 편성 금지

□ 생활지도비, 교육비, 보급선전비, 조사연구비 등은 조합원의 생활개선과 농촌문화 및 농촌 발전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대상으로 실소요액 범위 내에서 책정

○ 농업인 교육 등 교육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업에 한하여 교육비 편성

○ 다양한 정보 전달 채널의 발달과 농업인 수 감소를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보급선전비 편성

○ 조사연구비는 수익과 관계없는 농가소득증대 등 농촌발전을 위한 조사비, 연구비만 편성

□ 적기시정조치 대상 농·축협은 『조합구조개선및경영관리준칙』 에서 정한 집행기준을 반영

□ 회계계정에 적합한 항목의 교육지원사업비 편성으로 투명성 제고

○ 아래 "나. 항목별 세부편성 기준" 참고

※ 계정과목 적용 주요 오류 사례

구 분	오류 편성	정당 계정
조합원 영농교육 여성단체 관련 교육	생산지도비 생활지도비	교육비 중 실무교육비
공동이용농기계 구입비	영농자재 지원비	환원사업비 중 숙원시설 설치비
농업관련 원예지 발간비용 농업관련 도서구입	실무교육비 조사연구비	보급선전비 중 간행비
조화대 및 조향세트 구입비	경조비	복지지원비 중 복지사업비
총회운영 비용(수당포함)	연찬회비	일반경비의 회의비
농업인안전공제 지원금액	영농지도비	복지지원비 중 복지사업비

구 분	오류 편성	정당 계정
계통출하 인센티브, 우수출하 장려금	영농자재지원비	경제사업의 직접사업경비
대의원선거 비용	실무교육비	회의비, 광고비 등
영농회, 작목반 회의관련 비용	실무교육비	영농지도비 중 생산지도비
원로조합원 경로잔치	실무교육비	복지지원비 중 복지사업비
행사관련 비용	생산지도비	영농지도비 중 행사비
농·축협 소식지 발행 비용	협찬비	보급선전비 중 간행비
조합원, 임원 세미나 관련비용	특색사업지원비	연찬회비 또는 실무교육비
조합원 신년인사회 관련 비용	교육비	연찬회비
영농자재지원비에 생활용품 포함		생활용품 지원 불가

□ 다음의 교육지원사업비 편성과 관련하여 다음의 유의사항 참조

### 【 교육지원사업비 편성(집행) 시 유의사항 】

#### 가. 적정수준의 교육지원사업비 편성

-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과도한 교육지원사업비 책정 금지
- 교육지원사업비는 영업이익률 증가율 범위내에서 증(감)액하여 편성하되, 조합원에 대한 복지지원비 등이 과도하게 편성되어 인근 농축협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되지 않도록 유의
- 특히, 조합원이 아닌 일반 고객 등에 대한 사업비용을 교육지원비로 편성하지 않도록 유의

#### 나. 현금 또는 상품권 형태의 교육지원사업비(환원사업 목적) 지급 금지

- 농·축협이 농협법과 정관에 규정한 설립목적은 직접 수행하는 사업(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제외)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보지 않음(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 즉, 농협법과 정관에서 명시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데에 지출한 비용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를 줄여 주지만, 그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런 특혜를 적용할 수 없음
- 따라서,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환원사업비를 지급하는 경우 사용용도 불분명 등으로 과세청에서 「설립목적은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품」인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게 되며 증여를 받은 조합원은 배당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됨
- 또한, 조합원의 경우 건당 50만원을 초과하는 증여를 받고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바, 교육지원사업비를 현금 및 상품권 형태로 지급은 불가

#### 다. 교육지원사업비 세부 산출근기 명시

- 일반 판매관리비와 동일하게 세부 편성근기를 반드시 명시

#### 라. 판매관리비성 또는 고정투자성 예산 편성 금지

- 교육지원사업비는 농업(축산업) 생산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생활환경개선 또는 농업관련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해 수반되는 비용으로 일반 판매비와 관리비 성격 및 고정투자성 목적의 예산편성 금지
  - 특히, 홍보활동비 사용에 유의(조합장, 전·상무당 일률적 금액책정 금지, 설명절 선물 구입 대금 사용 금지 등)

#### 마. 교육지원사업비 지원 후 이를 조합원 재출자로 전환 금지

- 농·축협외 비용으로 조합원의 출자금을 늘려 주는 것은 농협법 또는 정관상 출자금 납입취지(조합원의 자발적 납입, 배당금을 출자금으로 전환)에 맞지 않음
- 또한, 이러한 행위는 세법상으로도 비용의 위법한 지출에 따른 이익감소 등 조세 회피 행위로 간주 될 소지가 있고 조합원에 대한 증여로 볼 수도 있으며, 농협법상 교육지원사업의 범위에도 해당되지 않는 바, 교육지원사업비를 재원으로 조합원의 출자금을 늘려 주는 것은 불가함

#### 바. 영농과 무관한 고가의 일반생활용품 지급 금지

- 각종 행사 개최에 따른 기념품 등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품목으로 정하고 TV, 냉장고, 세탁기 등 영농과 무관한 고가의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은 지급 금지

#### 사. 복지지원비중 경조비는 조합원 경조사에 동참함으로써 조합원에게 소속감을 고취하기 위한 차원에서 농·축협에서 지급하는 경조금 지급 예산에 한하여 편성

- 경조금은 사회통념상 인정되고, 관내 행정기관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되 전년도 집행 실적 등을 감안하여 책정하고 지급대상 및 금액은 이사회에서 공개적으로 결정
- 동일 경조사에는 동일 금액을 지급하되, 조합장 당 또는 상임이사(전무) 당 일률적 금액 책정 금지
- 경조금 전달 시에는 농·축협 명의를 사용해야 하며, 농·축협 비용임을 명기하여야 함 (농협법 제50조의 3)
- 특히, 비조합원(여수신 고객, 계통기관 임직원, 행정기관 단체장 등)에 대한 경조사비 지원금지(업무추진비로 반영)
- 부모 사망을 사유로 경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혼 남성·여성 조합원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 조합원의 친부모 사망에 따른 경조금 편성·집행(국가인권위 권고)

## 아. 비조합원에 대한 영농자재 지원 등 직접적인 교육지원사업비 지원 자제

- 지역농협정관(례)제141조(비조합원의 사업이용)제2항에 의하면 1회계연도에 있어서 비조합원의 사업이용량은 각 사업별로 당해 회계연도 사업량의 1/2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사업은 그 이용량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그 중 교육지원사업은 비조합원도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이는 생활환경 개선사업, 각종 소양교육, 장수·노인·여성 대학 운영 및 복지·문화 센터를 운영함에 따라 비조합원이 이용하면서 얻는 간접적 이용에 따른 수혜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각종 영농자재 지원, 정액 및 시술료 보조 등 사업수행에 따른 수혜가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급적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비조합원에 대한 지원 자제)
  - 특히, 조합원에 대해 해외연수 등에 우수고객을 포함시키는 것은 교육지원사업비의 법인세법상 특례("나"항목 참조)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각별히 유의

※ 우수고객에 대한 지원은 사업비용 계정의 업무추진비 등을 활용

## 자. 조합원과 각종 단체에 대한 교육지원사업비 지원 시 조합장 선거관련 기부행위 제한에 위배 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지급근거를 명시

- 조합원에 대한 각종 지원근거 명시
  - 각종 생활물자 및 장례비용 지원, 경조금 지원, 행사관련 기념품, 조합원 및 지역주민(고객)에게 실시하는 각종 소양교육 지원 등
- 각종 관내 행사에 대한 찬조·협찬금 지원근거 명시
  - 마을(시,군 등) 체육·문화 행사관련 찬조·협찬금, 농민·농업(축산)단체 행사 찬조·협찬금, 내부조직(영농회, 축산계 등) 활동·행사 지원금, 유관기관·단체에 대한 지원 등

## 차. 전체 조합원을 위한 교육지원사업비 편성으로 조합원간 형평성 제고 및 조합원의 사업 참여도 고취

- 내부조직장 등 소위 "여론주도층" 위주의 교육지원사업비 편성 자제



나. 항목별 세부 편성기준

관	항	목(세목)	편성기준
교육지원사업수입	부과금		○ 조합원에 대한 부과금 수입을 처리
	교육지원보조금		○ 중앙회, 행정기관 등으로부터의 지도사업 수입을 처리
	실비수입		○ 수익자부담의 실비수입을 처리
	간행수입		○ 간행물 보급에 따른 수수료 수입
	인삼회비수입		○ 생략
교육지원사업비	환원사업비	숙원시설설치비	○ 영농회, 작목반, 축산계 등에 공동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숙원시설(집기류 포함)의 설치 지원
		유통지원비	○ 농축산물 유통환경개선 등을 위한 각종 지원
		특색사업지원비	○ 조합원 특색사업 생산자금 지원 시 금리보전
		재해지원비	○ 재해극복을 위한 기자재 지원비, 재해시설 운영 보조비 및 재해복구지원비
	영농지도비	생산지도비	○ 영농회, 작목반, 축산계 등에 조합원의 영농 및 양축에 필요한 농기계 등 지원 ○ 농업기술 및 농업경영 개선을 위한 사업추진 및 경작지도와 협동조직 육성, 지역특산품 개발, 우수농축산물 생산지도를 위한 협의회·간담회·평가회비
		환경보전비	○ 환경보전형 농축산업과 농촌환경 보호를 위한 사업 지원
		행사비	○ 농축산업, 농촌 및 농협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비, 모범농가 등 시상에 따른 예산
		협찬비	○ 협동조직 및 지방자치단체, 농축산업관련 단체에 대한 협찬비 ○ 기타 농업 및 농촌발전을 위한 협찬에 따른 예산
		연찬회비	○ 영농·양축 및 생활개선 지도를 위한 연찬회비 ※ 직접사업별 연찬회 및 임직원 회의는 제외
		방역진료비	○ 조합원의 양축 시 가축의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비용
		영농자재지원비	○ 비료, 농약 등 농업인에 대한 영농자재(축산기자재 포함) 지원
		생활지도비	○ 생활개선 및 문화 향상을 위한 취미교실, 주부대학, 노인대학 운영지원과 부녀회 활동 등 지원
		교육비	실무교육비
	위탁교육비		○ 조합원의 대외 교육기관에 대한 위탁교육비 - 중앙회 이외 교육기관
	외곽교육비		○ 외부인사의 농축산업·농촌·농협에 대한 이해 증진 교육비

관	항	목(세목)	편성기준
교육지원 사업비	보선전 급비	시청각 자재비	○ 조합원을 위한 시청각자재 구입, 제작 및 수리에 따른 예산
		간행비	○ 조합원을 위한 각종 간행물(홍보용·업무용·교육용·보고서 등) 발간에 따른 예산
		홍보 활동비	○ 조합원의 권익증진과 농축산업·농촌·농협(축협)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농·축협 발전을 위한 홍보활동비 (사업추진성 예산 제외)
		문화활동비	○ 농축산업·농촌문화를 위한 비용
		간행물 보급비	○ 조합원에 대한 농민신문, 전원생활 등 간행물 보급비
		광고비	○ 농축산업·농협 종합이미지 광고비
	조사 연구비	연구비	○ 농축산업·농촌 및 농협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에 따른 예산
		사례비	○ 조사대상처 사례비
	복지 지원비	경조비	○ 조합원 경조사에 동참함으로써 조합원에게 소속감을 고취하기 위한 경조금  - 경조비는 전년도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책정하되 동일 경조사에는 동일금액 편성 및 지급  ※ 경조금은 사회통념상 인정되고, 관내 행정기관 등과의 형평에 맞게 책정하되 지급대상 및 금액 등은 이사회에서 공개적으로 결정
		복지 사업비	○ 조합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장제비, 건강진단비,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업인 안전공제, 농기계종합공제, 가축공제 공제료, 조합원자녀장학금, 장제용품, 법률구조상담 지원, 무의탁 농업인의 농어민연금대납, 경로당 등 연료대 지원, 원로조합원 초상화 제작 등 복지지원비  ※ 조합원에 대한 장제용품을 경조비와 혼용편성 금지

## 다. 항목별 반영사항(부서요청)

### □ 교육지원사업 수입

항(목)	사 업 내 용	반 영 기 준			비 고
		구분	연납	월납	
교육지원 사업수익 (간행수입)	농민신문 등 간행물 보급 수수료	농민신문	(1~12월 구독료 납입금 /4,500)*150	(1~12월 구독료 납입금 /4,700)*150	농·축협
		전원생활	(1~12월 구독료 납입금 /3,900)*150	(1~12월 구독료 납입금 /4,100)*150	
		어린이동산	(1~12월 구독료 납입금 /3,400)*150	(1~12월 구독료 납입금 /3,600)*150	
		디지털농업	(1~12월 구독료 납입금 /3,400)*150	(1~12월 구독료 납입금 /3,600)*150	
		월간축산	(1~12월 구독료 납입금 /3,400)*150	(1~12월 구독료 납입금 /3,600)*150	

### □ 교육지원사업비

항(목)	사 업 내 용	반 영 기 준	대상	비고
환원 사업비 (재해 지원비)	농약 위해방지 자재 구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독제 : 1갑(50정) 10,000원</li> <li>마스크(개당) : 일반형 500~600원, 탄소형 1,000~1,600원</li> <li>방제복(벌당) : 일반형 20천원~25천원 고급형 25천원~30천원</li> </ul>	해당 농협	자재부
환원 사업비	이차보전액 (특색사업지원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종 저리자금 이차보전액 중 농축협 부담분</li> <li>- 협력사업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액 중 농축협 부담분</li> <li>○ 지자체 등과 협력한 이차보전액 중 농축협 부담분</li> </ul>	해당 농축협	해당 부서
영농 지도비 (영농자재 지원비)	영농자재 무상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농자재 무상공급 등 환원사업비</li> <li>- 농협 및 관내 사업여건에 따라 자율책정</li> <li>- 농약 집중환원 실시로 시장경쟁력 확보</li> </ul>	해당 농협	자재부
영농 지도비 (생산 지도비)	농기계은행사업 활성화 지원	○ 농기계은행 책임운영자에 유류대, 수리비, 공제료 등 지원, 농작업 위탁농가에 임작업료 지원 등	해당 농협	농기계 은행분사
	토양검정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협형 토양검정기(APEN) PH 센서교체비 : 기대당 70천원</li> <li>○ 토양검정기 기술교육 : 공급대수 × 50천원</li> <li>○ 토양분석 시약 및 실험기자재 : 분석점수×12천원</li> </ul>	해당 농협	자재부
	대농업인 농약방제 기술교육	○ 영농회당 2백만원	해당 농협	자재부
	공동퇴비제조장 생산 기술용역비	○ 분석비 : 회당 70천원/점	해당 농협	자재부
	영농자재 종합서비스 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문배달 및 농기계 순회수리 서비스 실시 등</li> <li>○ 예산 : '11년 실적 및 농협여건에 따라 자율책정</li> </ul>	해당 농협	자재부
	동계시비 기술강좌	○ 농협당 500천원	해당 농협	자재부

항(목)	사 업 내 용	반 영 기 준	대 상	비 고
영농 지도비 (생산 지도비)	지자체 협력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농·축협은 발굴된 사업의 규모에 따라 사업비 임의 책정</li> <li>- 고정투자는 고정투자 계획으로 수립</li> <li>○ 내용 : 지자체+중앙회+농업인+농축협 공동예산 부담 (협력사업 전개)</li> <li>- 중앙회 지원분은 시군지부와 협의</li> </ul>	해당 농·축협	농촌자원 개발부
	지자체협력사업 발굴·추진을 위한 농정협의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농업관련기관, 농업인 대표 등 20명</li> <li>○ 예산 : 300천원 x 4회 = 1,200천원</li> <li>○ 내용 : 자료 조제비, 음료 및 식대, 기타 진행비 등</li> </ul>	전 농·축협	농촌자원 개발부
	농업경영컨설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컨설턴트 보수 : 300천원×3명×4회 = 3,600천원</li> <li>○ 지원단 운영비 : 50천원×5명×4회 = 1,000천원</li> </ul>	전 농협	농촌자원 개발부
	지역농업 현황판 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협당 1,500천원(기 교체한 농협은 제외)</li> <li>○ 내용 : 우리지역 농업의 현황과 발전상</li> </ul>	전 농협	농촌자원 개발부
	농업·농촌 투융자 사업 신청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내책자(농림사업시행지침서) 구입, 사업설명회 개최 및 발전기획단 운영 등</li> <li>○ 책자 구입 : 40천원/1질×필요부수</li> </ul>	전 농·축협	농촌자원 개발부
	농촌관광 및 농의 소득 증대를 위한 팜스테이마을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 팜스테이 마을 견학</li> <li>- 기념품 : 10천원×인원</li> <li>- 기타제비(용차 등) : 500천원×횟수</li> <li>○ 팜스테이 육성 협의회 운영</li> <li>- 200천원×6회 = 1,200천원</li> <li>○ 테마 팜스테이마을 조성</li> <li>- 5,000천원×1개마을 = 5,000천원</li> <li>○ 팜스테이 마을 입간판 설치</li> <li>- 3,000천원×개소×50%</li> <li>○ 농촌체험관광(농촌체험여행)책자 구입</li> <li>- 8천원(추정단가)×소요부수</li> </ul>	해당 농협	농촌자원 개발부
	여성농업인 CEO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분야 성공한 여성농업인 발굴 및 홍보, 우수사례 전파</li> <li>○ 예산 : 자율 책정</li> </ul>	해당 농·축협	농촌자원 개발부
	1사1촌 자매결연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매결연패 제작</li> <li>- 150천원×1개 = 150천원</li> <li>○ 프랭카드 제작</li> <li>- 100천원×2개 = 200천원</li> <li>○ 1사1촌 자매결연 체결식 제반비용</li> <li>- 음향설치 등: 500천원</li> </ul>	해당 농·축협	농촌자원 개발부
	여성농업인 농장 입간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농업인 직업적, 경제적 지위확보를 위한 농장 입간판 지원</li> <li>- 부부 또는 여성농업인 명의</li> <li>○ 대상 : 농가주부모임 회원 등</li> <li>○ 예산 : 자율 책정</li> </ul>	해당 농·축협	농촌자원 개발부
	우리종자(콩)지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가주부모임 회원을 활용한 우리종자 지키기 사업 전개</li> </ul>	전 농협	농촌자원 개발부

항(목)	사 업 내 용	반 영 기 준	대상	비고
영농 지도비 (생산 지도비)	이민여성농업인 전문농업 시범농장 취업 지원	○ 이민여성농업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이민 여성의 자존감 고취 및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 - 예산 : 자율 책정	해당 농협	농촌자원 개발부
	귀농·귀촌자 정착 지원	○ 농협이용, 지역농업 등 교육 및 인적네트워크 구축 - 예산 : 인원 × 20천원 × 4분기	해당 농협	농촌자원 개발부
	외국인근로자 활용 및 관리 지원	○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안내, 고용 실태 조사, 관리지원 등 - 예산 : 자율 책정	해당 농협	농촌자원 개발부
	재해복구 및 농촌 일손돕기 추진	○ 식사비, 장비 등 : 100명×20천원=2,000천원 ○ 농·축협 소속 차량 유류비 : 500천원	전 농·축협	농촌자원 개발부
	사회봉사대상자 농촌지원사업	○ 농촌 노동력부족으로 인한 농가인건비 상승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봉사 대상자를 농촌 일손돕기, 재해복구사업에 투입 ○ 지원대상 : 고령농, 경제적 취약농가 등 ○ 예산 : 자율 책정	해당 농·축협	농촌자원 개발부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자 농장간판 설치지원	○ 농축협에서 추천하여 선정된 새농민 농장 간판 설치지원 - 예산 : 500천원×추천인원	해당 농협	농촌자원 개발부
	"이달의 새농민" 발굴 추천	○ 추천위원회 운영제비(식대, 문구 등) - 300천원×2회 = 600천원	해당 농협	농촌자원 개발부
	어린이대상 체험농장 운영(어린이체험농장, 어린이농업학교)	○ 대도시지역 농협중심으로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 대상 체험농장 운영 ○ 예산 : 설치농장, 재배작목, 운영규모 등을 감안 자율 책정	해당 농협	농촌자원 개발부
	어린이 대상 생태체험교육·캠프 운영	○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 대상 환경, 문화, 소비자 운동 등 체험캠프 운영(자율책정) - 물사랑, 숲사랑, 환경사랑, 갯벌체험 등 - 예산 자율책정	해당 농협	농촌자원 개발부
	食사랑農사랑운동(국민식생활 개선 캠페인)	○ 사업내용 : 바람직한 식생활 교육 전개 - 어린이, 청소년, 주부, 노인을 대상으로 바른 식생활을 주제로 한 교육전개하고 건강 식생활 강연회,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요리교실, 학생 대상으로 농사·식문화 체험교실 등 운영 ○ 예산 : 8,000천원 - 건강 식생활 강연회 1,000천원 - 우리농산물 활용한 요리교실 5,000천원 (재료비 등 75천원×20명×2개월 강사비 1,000천원×2개월) - 농사·식문화 체험교실 2,000천원 (차량지원 등 1,000천원×2회)	해당 농·축협	농촌자원 개발부
食사랑農사랑운동(우리고장 먹을거리 소비촉진 캠페인)	○ 사업내용 : 우리고장 먹을거리 소비촉진 캠페인 전개 - 지자체·농협·관내업체 공동으로 우리고장 먹을거리 소비촉진 협약체결 ○ 예산 : 1,000천원 - 협약식 비용 1,000천원(500천원×2회)	전 농·축협	농촌자원 개발부	
HACCP건설팅전문가 교육	○ 총 교육비 500천원, 50%보조	해당 축협	축산 건설팅부	

항(목)	사 업 내 용	반 영 기 준	대상	비고
영농 지도비 (환경 보전비)	농촌 환경보호 캠페인 실시	○ 식사비, 장비 등 : 50명 × 7천원 = 350천원 ○ 농축협 소속 차량 유지비 : 100천원	전 농·축협	농촌자원 개발부
	아름다운농촌만들기 환경지킴이 활동	○ 꽃길, 우리마을 정원가꾸기, 페비닐 수거 활동 등 ○ 대상 : 농가주부모임, 마을단위 여성조직 등 ○ 예산 : 50명 × 10천원 = 500천원(식사비, 장비 등)	해당 농협	농촌자원 개발부
영농 지도비 (협찬비)	유관기관·단체활동 지원	○ 여성·소비자단체 등 조직활동 지원 - 예산 : 자율책정(사업내용, 지원횟수, 지원금액 등을 감안) 예)지원금액(100~1,000천원)×지원단체 수	전 농·축협	농촌자원 개발부
	(사)전국새농민회 시·군회 활동지원	○ 관내 조합원대상 농업경영컨설팅, 현장교육 사업과 연계 - 광역 합병 농축협 : 2회/연 × 1,000천원 = 2,000천원 - 기타 지역 농축협 : 1회/연 × 500천원 = 500천원	해당 농협	농촌자원 개발부
영농 지도비 (행사비)	이달의 새농민상 선발을 위한 모범농 가상 선정,표창	○ 이달의 새농민상 선발을 위한 모범농가상 선정, 표창 - 상패 및 기념품 : 4부부(분기1회)×200천원=800천원 - 기타제비(화환대, 진행제비 등) : 200천원×4회= 800천원	해당 농협	농촌자원 개발부
영농 지도비 (방역진료비)	취약·재해농가 가축진료비	- 축협 당 최소 5,000천원	지역· 품목축협	축산 컨설팅부
영농 지도비 (농업인실 익지원비)	산지유통 1520 프로젝트 지원	○ '11년 '산지유통 1520 프로젝트' 추진 지원자금 (공선출하회/연합마케팅) 자금운용수익 해당분 - (지원금액×상호금융 정기예치금리)	자금지원 농협	원예 특작부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자금 수혜익에 해당 하는 금액 - 지원액 × 상호금융정기예금 이율	해당 농협	식품 유통부
	학교급식 지원	○ 학교급식 지원자금 운용수익에 해당하는 금액 - 지원액 × 상호금융정기예금 이율	해당 농협	식품 유통부
생활 지도비	여성조직 활동지원	○ 농가주부, 주부대학, 부녀회 등 활동 지원 - 사회교육, 농업 관련교육, 양성평등교육, 봉사활동, 선진지견학, 각종행사 참석 등 - 예산 : 사업내용, 참여인원, 실시횟수, 단가 등을 감안하여 자율책정 (예) 교육진행비, 참가자여비, 현장교육비 등	해당 농협	농촌자원 개발부
	여성조합원의 농협 사업 참여 활성화	○ 여성조합원 대회, 여성분과위원회 운영, 취미·건강교실 운영 등 ○ 예산 : 자율책정(인원, 횟수, 단가 등을 감안)	전 농협	농촌자원 개발부
	여성단체 및 유관 기관 협력증진	○ 지자체 등과의 활발한 사업연계 및 생산자·소비자간 자매결연, 직거래사업을 통한 협력증진 등 - 고향주부모임, 농가주부모임, 생활개선회, 한여농, 전여농 등 ○ 예산 : 자율책정(인원, 횟수, 단가 등 감안)	전 농협	농촌자원 개발부
	지역문화복지센터 운영	○ 조합원을 위한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비 - 예산 : 농협별 운영 프로그램 소요액을 감안하여 자율 책정	전 농협	농촌자원 개발부

항(목)	사 업 내 용	반 영 기 준	대상	비고
생활 지도비	여성복지담당자 활동비 지원	○ 예산 : 자율책정	해당 농협	농촌자원 개발부
	사회복지인증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단 활동지원	○ 대상 : 여성조직 자원봉사단 -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연계(국고보조) ○ 예산 : 자율책정(봉사자인원, 실시횟수, 인증센터 운영 등)	해당 농협	농촌자원 개발부
	농산어촌 찾아가는 문화순회공연 사업	○ 공연 부대비용 ○ 예산 : 자율책정	해당 농협	농촌자원 개발부
	원로청년부 조직 활동지원	○ 공동소득활동 : 1,000~5,000천원 ○ 게이트볼 대회 개최 : 3,000천원/1회 ○ 노인대학, 원로대학 개강 : 자율책정	해당 농협	농촌자원 개발부
	농촌희망가꾸기 사업	○ 기업 등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한 의료·문화·교육 등 지원 ○ 예산 : 자율책정	해당 농협	농촌자원 개발부
	청년부 조직활동 지원	○ 공동소득활동 지원 : 1,000~ 3,000천원 ○ 운영비 지원 : 300천원	해당 농협	농촌자원 개발부
	다문화 여성대학 (단계별 맞춤 교육) 운영	○ 여성결혼이민자 조합원 가정의 안정적 정착 지원 ○ 기간 : 1주 1회 3시간 이상 / 15회차 이상 - 농협별 운영 프로그램 소요액을 감안하여 자율책정	해당 농협	농촌자원 개발부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 기간 : 1학기 이상 운영 ○ 예산 : 자율책정	해당 농협	농촌자원 개발부
	여성결혼이민자 2세 어린이 교실 운영	○ 여성결혼 이민자 2세 어린이의 정서적 지원 ○ 도시 어린이와 친구하기 교류 등 - 한글교실, 외국어교실, 어린이문화교실 등	해당 농협	농촌자원 개발부
	농업인 국제결혼 중개사업	○ 농촌 지역사회의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 정착에 기여 와 조합원의 편익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예산 : 자율책정	해당 농협	농촌자원 개발부
교육비 (실무 교육비)	조합원에 대한 농업 경영 교육	○ 외부강사 초빙 영농교육, 정보화교육, 교육원(농업 관련기관)교육 ○ 예산 : 교육원 교육과정 참조 자율책정	해당 농협	농촌자원 개발부
	공선출하회 회원농가 교육	○ 공선출하회 회원농가 교육비 : 1인당 100천원	희망 농협	원예 특작부
	여성조합원(임원, 대의원)에 대한 교육원 입교교육 지원	○ 예산 : 교육원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자율책정	전 농·축협	농촌자원 개발부
	여성농업인 환경 농업·영농기술 교육	○ 대상 : 여성농업인 ○ 예산 : 자율책정	해당 농협	농촌자원 개발부
	이민여성농업인 1:1 맞춤형 농업교육	○ 1:1 맞춤형 농업교육을 통한 후계 농업 인력 육성 ○ 예산 : 자율책정	해당 농협	농촌자원 개발부
	여성결혼이민자 기초 농업 교육	○ 기초 농업교육을 통한 농촌여성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지원 ○ 예산 : 자율책정	해당 농협	농촌자원 개발부

항(목)	사 업 내 용	반 영 기 준	대상	비고																			
교육비 (실무 교육비)	팜스테이 마을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정 : 팜스테이 참여농가 교육</li> <li>○ 일정 : 1박2일×2회(상하반기 각 1회)</li> <li>○ 인원 : 팜스테이 참여농가의 50%(1회당)</li> <li>○ 예산 : 자율책정</li> </ul>	해당 농협	농촌자원 개발부																			
	농업인 교육원(안성, 창녕,경주)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정별 교육내용 및 예산 : 관내여건 감안 편성</li> <li>○ 교육비 교육예산 단가표 참조 자율책정</li> </ul>	해당 농협	인재 개발부																			
교육비 (위탁 교육비)	여성농업인 1인 1기술 갖기 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과정(농외소득을 위한 교육)</li> <li>- 요양보호사, 원예치료사, 조리사, 이미용 등</li> <li>- 예산 : 자율책정(교육과정, 참여인원, 실시횟수, 단가 등 고려)</li> </ul>	해당 농협	농촌자원 개발부																			
	자원봉사자 양성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지역 고령인구, 취약농가 인력지원(가사도우미) 을 위한 자원봉사기술 습득</li> <li>○ 대상 : 농가주부모임, 고향주부모임, 여성농업인 등</li> <li>○ 예산: 자율책정(강사료, 교재대, 실습비 등)</li> </ul>	해당 농협	농촌자원 개발부																			
보급 선전비 (간행물 보급비)	농약 관련 팜프렛 제작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목별 농약혼용 가부표 팜프렛 제작 보급</li> <li>- 농협관내 주작목 감안 책정 (농협 별도 작성시 1천원/부)</li> <li>○ 농약사용지침서 공급 : 조합원당 1권(권당 4천원)</li> <li>○ 농약혼용정보 공급 : 조합원당 1권(권당 3천원)</li> </ul>	해당 농협	자재부																			
	농민신문 등 간행물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원 및 유관인사에 대한 농민신문 등 보급</li> <li>○ 예산 : 간행물 단가×12개월×보급 부수</li> </ul>	전 농·축협	홍보실																			
	농가영농일지 및 협동조직 운영기록부 보급	<table border="1"> <thead> <tr> <th>구</th> <th>분</th> <th>단가(원)</th> <th>구분</th> <th>단가(원)</th> </tr> </thead> <tbody> <tr> <td>농가영농일지 (비망식)</td> <td></td> <td>2,080</td> <td>작목반(회) 운영기록부</td> <td>1,800</td> </tr> <tr> <td>영농회장수첩</td> <td></td> <td>2,820</td> <td>친환경농업 영농일지</td> <td>2,080</td> </tr> <tr> <td>부녀회 운영기록부</td> <td></td> <td>1,650</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공급가격은 변동될 수 있음</p>	구	분	단가(원)	구분	단가(원)	농가영농일지 (비망식)		2,080	작목반(회) 운영기록부	1,800	영농회장수첩		2,820	친환경농업 영농일지	2,080	부녀회 운영기록부		1,650			전 농협
구	분	단가(원)	구분	단가(원)																			
농가영농일지 (비망식)		2,080	작목반(회) 운영기록부	1,800																			
영농회장수첩		2,820	친환경농업 영농일지	2,080																			
부녀회 운영기록부		1,650																					
보급 선전비 (간행비)	홍보용 간행물(책자, CD)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축협 고유사업 홍보, 지역사회 역할 홍보</li> <li>○ 예산 : 간행물 기획·편집료, 부수 고려 자율 책정</li> </ul>	해당 농협	홍보실																			
보급 선전비 (홍보 활동비)	농협사업 언론홍보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인을 위한 농협사업 이해증진, 우수농축산물 홍보</li> <li>○ 예산 : 농·축협 여건에 따라 자율책정</li> </ul>	해당 농협	홍보실																			
	팜스테이 마을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물 : 마을 홍보용 리플릿</li> <li>-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한 홍보물 제작</li> <li>- 예산 : 5,000천원</li> </ul>	해당 농협	농촌자원 개발부																			
	팜스테이 사업 평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팜스테이 마을 협의회 임원, 담당직원 사업 평가회 (1박2일)</li> <li>- 예산 : 자율책정</li> </ul>	해당 농협	농촌자원 개발부																			



항(목)	사 업 내 용	반 영 기 준	대상	비고
보급 선전비 (시청각 자재비)	영상홍보물 제작	○ 용도 : 농협 고유사업 대외홍보, 농업인 교육용 시청각 자료 ○ 예산 : 기획, 편집, CG, 편성 등 기술적 요소 고려 자율채정	해당 농협	홍보실
보급 선전비 (광고비)	농협 이미지 및 상품 광고	○ 지역단위 연합 또는 자체 광고 ○ 예산 : 지역신문 단가 × 광고횟수	해당 농협	홍보실
복지 지원비	조합원 복지증진 지원	○ 조합원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사업 - 건강검진, 장제비지원,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인 안전공제, 농기계종합공제, 가축공제의 조합원 (계약자) 납입보험료(공제료), 방역소독, 경로행사, 장수대학, 장학금지급 등 - 예산 : 사업규모, 인원, 횟수, 단가 등을 감안 자율채정 <예> 건강진단료, 장제용품비, 소독용품비 등 실비 반영	해당 농협	-

## 5. 예비비 편성

### 가. 신규사업개발 및 조합원 지원을 위한 소요 예비비

- 신규사업 개발 및 조합원 지원을 위한 예비비는 농·축협의 경영여건, 2011년도 사업계획을 감안하여 자율 편성

### 나. 인건비 관련 예비비

- 인건비 인상 등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으로 인건비, 인건비성 경비, 퇴직급여금에 대하여 경영 여건, 전년도 인상수준, 복리후생비 등 직원 처우개선 소요예산을 감안하여 편성

## 6. 영업외비용 및 수익

- 이자비용(차입금이자, 지급이자 등), 유형자산처분손실, 충당금 적립비용(가지급금, 보증금, 미수금 등) 등 기타 사업계획에 반영한 사항에 대하여 전년도 실적, 2011년 계획 등을 감안하여 책정
- 법인,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협회에 지급한 경사회비 이외의 특별회비와, 임의로 조직된 조합·협회에 지급한 비용 등은 기부금(지정기부금)으로 편성

부문별	항	목(세목)	반 영 기 준	대 상
일반	이자비용	차입금 이자 <농안기금>	○ 농안기금(공판장출하촉진자금) 이자지급 - 편성기준 : 차입금액 × 3.0%/연	공판장 농안기금 차입농협
	재고조사 감모손실		○ 마트상품 취급에 따른 인정감모손은 해당규정에서 정하는 한도(비율) 적용	전 농협
	기부금		○ 공판장운영협의회 연회비 : 1,000천원/농협당	해당농협
			○ 무인헬기 조종자 협의회 연회비 : 600천원/농협당	해당농협
			○ 미곡종합처리장 전국협의회 연회비 : 1,500천원/농협당	해당농협
			○ 비법인 품목별협의회 연회비 및 가입비 - 협의회별 규약 참조	해당농협
	기타 영업외 비용	기타 잡손실	○ 채소수급안정사업자금 운용수익 적립 - 기준 : 총사업자금 평잔의 4% 수준	사업참여 농협
			○ 시설채소약정출하사업자금 운용수익 적립 - 기준 : 총사업자금 평잔의 4% 수준	사업참여 농협
			○ 과실계약출하조정자금 운용수익 적립 - 기준 : 총사업자금 평잔의 4% 수준	사업참여 농협
			○ 조합장선거 관련 신고포상금 지급예산(영업외비용) - 조합장선거 관련 신고포상금제도 실시 농·축협 (총액 10백만원 이내에서 자체 실정을 감안하여 책정)	해당농협
일반 (협동카드)	영업외 수익	카드사업수익	○ 장기/할부판매 수익 - '11년 장기/할부판매금액(추정) × 이자(경제사업미수금 이자율)	해당 농·축협